



제2944호 2024. 4. 19.(금)

www.jeonbuk.go.kr.

## 고 시

- 고시 제2024-103호 예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안) ..... 1
- 고시 제2024-104호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 정정고시 ..... 2
- 고시 제2024-105호 매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저수지준설)시행계획 승인 고시(안) ..... 3
- 고시 제2024-107호 익산 송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변경(4차) 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 ..... 4
- 고시 제2024-108호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고시 ..... 42
- 고시 제2024-10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45
- 고시 제2024-11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48
- 고시 제2024-11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51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제2024-32호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4
- 입법예고 제2024-33호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9

## 공 고

- 공고 제2024-746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66
- 공고 제2024-750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67
- 공고 제2024-754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68
- 공고 제2024-75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69
- 공고 제2024-757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70
- 공고 제2024-775호 도로공사 시행(변경) 허가 내용 공고 ..... 71
- 공고 제2024-786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 공고 ..... 72
- 공고 제2024-787호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시정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73
- 공고 제2024-80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9회 임시회에 제출할 조례안 공고 ..... 76

발행 전북특별자치도 (편집 대변인실 ☎(063)280-2186)  
(54968)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시 군

- 전주시 공고 제2024-68호 전주 도시관리계획(공원8호 조성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88
- 전주시 공고 제2024-1102호 전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문화관)사업 실시계획 작성에 따른 열람(정정) 공고 ..... 193
- 익산시 고시 제2024-79호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정정) ..... 198
- 익산시 공고 제2024-1357호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모인공원) 결정(경미한 변경)(안) 주민열람공고 ..... 199
- 정읍시 공고 제2024-696호 정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공사완료 공고 ..... 200
- 김제시 고시 제2024-52호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성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201
- 완주군 고시 제2024-46호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방재시설)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212
- 완주군 고시 제2024-49호 완주 군계획시설(도로.삼례 소로2-11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경미한 변경) 고시 ..... 213

## 기 타

- 순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43호 공인 등록 공고 ..... 215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 - 103호

## 예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안)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추진 중인 예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시행계획 승인한 내용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사 업 명 : 예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건동리 용수리,  
대산면 산정리 일원
3. 사 업 목 적 : 저수지 내 퇴적 토사로 인해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퇴적토  
준설로 담수기능회복 등 영농편의기반 구축을 통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의 소득증대를 이룩하고 안전영농을 도모하고자 함
4. 수 혜 면 적 : 146ha
5. 사 업 개 요  
가. 저수지 준설 : 36,000m<sup>3</sup>
6. 사업 기간 : 2023. 12. ~ 2024. 12. 20
7. 총 사업비 : 670백만원(국비)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전화063-560-1546)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104호

###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 정정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77호('24.04.12.)로 고시된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4월 19일

#### □ 정정사항

##### 1. 고시번호(변경있음)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고시번호 (고시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77호 (2024.04.12.)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104호 (2024.04.19.)	오탈자 정정

##### 2.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황등공원	근린공원	황등면 동연리 235 일원	39,940	증)2,239	42,179	전북4 (’77.01.17.)	
변경			체육공원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황등 공원	공원시설의 종류 변경 종류 : 근린공원 → 체육공원 면적 : 39,940㎡ → 42,179㎡ 증) 2,239㎡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수요 충족을 위해 근린 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여 도시민의 여가·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함

##### 3. 익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계도서 : 실음생략(열람장소 비치)(변경없음)

##### 4. 기타사항(변경없음)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정책과(063-280-4498) 및 익산시  
도시개발과(063-859-55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 - 105호

**매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저수지준설)시행계획 승인 고시(안)**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에서 추진 중인 매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시행계획 승인한 내용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4월 19일

- 1. 사 업 명 : 매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저수지 준설)
- 2.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산서면 백운리,학선리 마하리 일원
- 3. 사 업 목 적 : 저수지 내 퇴적 토사로 인해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퇴적토 준설로 담수기능회복 등 영농편의기반 구축을 통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의 소득증대를 이룩하고 안전영농을 도모하고자 함
- 4. 수 혜 면 적 : 32ha
- 5. 사 업 개 요
  - 가. 저수지 준설 : 18,051m<sup>3</sup>
- 6. 사업 기간 : 2024. 4. ~ 2024. 12. 20
- 7. 총 사업비 : 252백만원(국비)
-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전화063-350-7056)
-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 - 107호

## 익산 송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변경(4차) 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23-112호(2023. 4. 21.)로 변경승인 고시된 익산 송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및 지구계획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8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변경(4차) 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 4. 19.

### I.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 개요(변경)
  - 명 칭 : 익산 송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송학동 326-1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 48,077.0㎡
    - 변경 : 48,054.0㎡ (감23.0㎡)
2. 촉진지구 지정일(변경없음)
  - 지정일 : 2021년 4월 16일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종 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와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 명 칭 : 라송산업(주)
  - 대표자 성명 : 송성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변경)

1) 토지세목조서(변경)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권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계			192필지	195필지		48,077	감)23	48,054	48,077	감)23	48,054	-	-	-	-	-	-
1	기정	송학리	318-2	318-2	전	21	-	21	21	-	21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2	기정	송학리	318-7	318-7	전	14	-	14	14	-	14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3	기정	송학리	319-15	319-15	잡	416	-	416	416	-	41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4	기정	송학리	319-16	319-16	잡	28	-	28	28	-	28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	-	-
5	기정	송학리	319-17	319-17	잡	13	-	13	13	-	1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6	기정	송학리	319-22	319-22	도	5	-	5	5	-	5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	-	-
7	기정	송학리	319-23	319-23	잡	20	-	20	20	-	20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8	기정	송학리	319-7	319-7	도	208	-	208	208	-	208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	-	-
9	기정	송학리	320-2	320-2	중	14	-	14	14	-	14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10	기정	송학리	320-3	320-3	전	205	-	205	205	-	20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11	기정	송학리	320-4	320-4	전	189	-	189	189	-	189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12	기정	송학리	320	320	중	665	-	665	665	-	66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13	기정	송학리	612-13	612-13	대	1	-	1	1	-	1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14	기정	송학리	612-14	612-14	도	1	-	1	1	-	1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	-	-
15	기정	송학리	613-1	613-1	잡	168	-	168	168	-	168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	-	-
16	기정	송학리	613-2	613-2	잡	144	-	144	144	-	144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17	기정	송학리	613-30	613-30	잡	496	-	496	496	-	496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	-	-
18	기정	송학리	613-31	613-31	잡	79	-	79	79	-	79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	-	-
19	기정	송학리	613-35	613-35	잡	22	-	22	22	-	22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	-	-
20	기정	송학리	613-36	613-36	잡	18	-	18	18	-	18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21	기정	송학리	613-37	613-37	잡	61	-	61	61	-	61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22	기정	송학리	613-38	613-38	잡	162	-	162	162	-	162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23	기정	송학리	613-39	613-39	잡	3	-	3	3	-	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24	기정	송학리	613-3	613-3	잡	316	-	316	316	-	31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25	기정	송학리	613-4	613-4	잡	1,517	-	1,517	1,517	-	1,517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m <sup>2</sup> )			권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명세
26	변경	송학리		885-24	도	169	감)58	111	169	감)58	111	국(건설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음6로11 국도교통부	-	-	-	-	분할 측량 반영, 일부 소유권변동
27	변경	송학리	885-24	885-29	도	-	증)38	38	-	증)38	38	라송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	-	-	-	
28	변경	송학리		885-30	도	-	증)20	20	-	증)20	20	라송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	-	-	-	
29	기정	송학리	885-26	885-26	도	5	-	5	5	-	5	라송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	-	-	-	소유권변동
30	기정	송학리	886-1	886-1	도	9	-	9	9	-	9	라송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	-	-	-	소유권변동
31	기정	송학동	321	321	전	18	-	18	18	-	18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32	기정	송학동	322-100	322-100	대	35	-	35	35	-	3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33	기정	송학동	322-120	322-120	대	334	-	334	334	-	334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34	기정	송학동	322-121	322-121	전	695	-	695	695	-	69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35	기정	송학동	322-122	322-122	대	217	-	217	217	-	217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36	기정	송학동	322-123	322-123	전	225	-	225	225	-	22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37	기정	송학동	322-124	322-124	대	282	-	282	282	-	282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38	기정	송학동	322-125	322-125	전	276	-	276	276	-	27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39	기정	송학동	322-126	322-126	대	187	-	187	187	-	187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40	기정	송학동	322-127	322-127	전	188	-	188	188	-	188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41	기정	송학동	322-128	322-128	전	199	-	199	199	-	199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42	기정	송학동	322-129	322-129	전	330	-	330	330	-	330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43	기정	송학동	322-134	322-134	대	13	-	13	13	-	1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44	기정	송학동	322-135	322-135	대	3	-	3	3	-	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45	기정	송학동	322-137	322-137	도	9	-	9	9	-	9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46	기정	송학동	322-138	322-138	전	166	-	166	166	-	16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47	기정	송학동	322-139	322-139	전	106	-	106	106	-	10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48	기정	송학동	322-14	322-14	대	121	-	121	121	-	121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49	기정	송학동	322-15	322-15	전	1,660	-	1,660	1,660	-	1,660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50	기정	송학동	322-163	322-163	도	10	-	10	10	-	10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51	기정	송학동	322-164	322-164	도	6	-	6	6	-	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52	기정	송학동	322-165	322-165	대	33	-	33	33	-	3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53	기정	송학동	322-16	322-16	전	1,370	-	1,370	1,370	-	1,370	주택도시보	부산광역시 남구	-	-	-	-	-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m <sup>2</sup> )			편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명세
												증공사	문현금융로40					
54	기정	송학동	322-17	322-17	전	847	-	847	847	-	847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55	기정	송학동	322-180	322-180	전	324	-	324	324	-	324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56	기정	송학동	322-181	322-181	전	16	-	16	16	-	1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57	기정	송학동	322-182	322-182	대	44	-	44	44	-	44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58	기정	송학동	322-183	322-183	대	186	-	186	186	-	18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59	기정	송학동	322-184	322-184	전	242	-	242	242	-	242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60	기정	송학동	322-185	322-185	전	117	-	117	117	-	117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61	변경	송학동		322-186	전	300	감51	339	300	감51	339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	-	-	분할 측량 반영
62	변경	송학동		322-186	전		증51	51		증51	51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	-	-	
63	기정	송학동	322-187	322-187	전	19	-	19	19	-	19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	-	-	-
64	기정	송학동	322-188	322-188	전	19	-	19	19	-	19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	-	-	-
65	기정	송학동	322-189	322-189	전	22	-	22	22	-	22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	-	-	-
66	기정	송학동	322-190	322-190	대	2	-	2	2	-	2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67	기정	송학동	322-191	322-191	대	67	-	67	67	-	67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68	기정	송학동	322-192	322-192	전	63	-	63	63	-	6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69	기정	송학동	322-193	322-193	대	25	-	25	25	-	2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70	기정	송학동	322-194	322-194	대	83	-	83	83	-	8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71	기정	송학동	322-195	322-195	대	55	-	55	55	-	5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72	기정	송학동	322-196	322-196	대	62	-	62	62	-	62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73	기정	송학동	322-197	322-197	대	2	-	2	2	-	2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74	기정	송학동	322-198	322-198	대	137	-	137	137	-	137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75	기정	송학동	322-199	322-199	대	83	-	83	83	-	8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76	기정	송학동	322-200	322-200	대	74	-	74	74	-	74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77	기정	송학동	322-201	322-201	대	6	-	6	6	-	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78	기정	송학동	322-202	322-202	대	98	-	98	98	-	98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79	기정	송학동	322-203	322-203	대	85	-	85	85	-	8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80	기정	송학동	322-204	322-204	전	5	-	5	5	-	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m <sup>2</sup> )			권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명세
81	기정	송학동	322-205	322-205	대	36	-	36	36	-	3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82	기정	송학동	322-206	322-206	대	1	-	1	1	-	1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83	기정	송학동	322-207	322-207	대	6	-	6	6	-	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84	기정	송학동	322-208	322-208	대	5	-	5	5	-	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85	기정	송학동	322-209	322-209	대	5	-	5	5	-	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86	기정	송학동	322-210	322-210	대	160	-	160	160	-	160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87	기정	송학동	322-211	322-211	전	150	-	150	150	-	150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	-	-	-
88	기정	송학동	322-212	322-212	전	67	-	67	67	-	67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	-	-	-
89	기정	송학동	322-213	322-213	전	18	-	18	18	-	18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	-	-	-
90	기정	송학동	322-2	322-2	전	1,246	-	1,246	1,246	-	1,24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91	기정	송학동	322-36	322-36	전	1,309	-	1,309	1,309	-	1,309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92	기정	송학동	322-37	322-37	전	119	-	119	119	-	119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93	기정	송학동	322-38	322-38	전	142	-	142	142	-	142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94	기정	송학동	322-3	322-3	전	296	-	296	296	-	29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95	기정	송학동	322-41	322-41	대	118	-	118	118	-	118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96	기정	송학동	322-42	322-42	대	678	-	678	678	-	678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97	기정	송학동	322-43	322-43	전	72	-	72	72	-	72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98	기정	송학동	322-56	322-56	대	10	-	10	10	-	10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99	기정	송학동	322-74	322-74	대	120	-	120	120	-	120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00	기정	송학동	322-76	322-76	대	109	-	109	109	-	109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01	기정	송학동	322-77	322-77	대	105	-	105	105	-	10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02	기정	송학동	322-78	322-78	대	16	-	16	16	-	1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03	기정	송학동	322-79	322-79	대	106	-	106	106	-	10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04	기정	송학동	322-81	322-81	대	26	-	26	26	-	2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05	기정	송학동	322-82	322-82	대	90	-	90	90	-	90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06	기정	송학동	322-86	322-86	대	11	-	11	11	-	11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07	기정	송학동	322-88	322-88	대	11	-	11	11	-	11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08	기정	송학동	322-89	322-89	전	35	-	35	35	-	3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m <sup>2</sup> )			편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명세
109	기정	송학동	322-92	322-92	대	45	-	45	45	-	4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10	기정	송학동	322-93	322-93	대	25	-	25	25	-	2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11	기정	송학동	322-94	322-94	전	23	-	23	23	-	23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	-	-	-
112	기정	송학동	322-95	322-95	대	35	-	35	35	-	3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13	기정	송학동	323-1	323-1	전	132	-	132	132	-	132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14	기정	송학동	323-2	323-2	전	79	-	79	79	-	79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15	기정	송학동	323-3	323-3	전	1,127	-	1,127	1,127	-	1,127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16	기정	송학동	324-1	324-1	전	813	-	813	813	-	81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17	기정	송학동	324-2	324-2	전	33	-	33	33	-	3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18	기정	송학동	326-10	326-10	대	31	-	31	31	-	31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19	기정	송학동	326-16	326-16	대	11	-	11	11	-	11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20	기정	송학동	326-17	326-17	대	183	-	183	183	-	18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21	기정	송학동	326-18	326-18	대	1,053	-	1,053	1,053	-	1,05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22	기정	송학동	326-20	326-20	대	171	-	171	171	-	171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23	기정	송학동	326-21	326-21	대	40	-	40	40	-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24	기정	송학동	326-22	326-22	대	223	-	223	223	-	22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25	기정	송학동	326-23	326-23	대	53	-	53	53	-	5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26	변경	송학동	326-35	326-35	대	129	-	129	129	-	129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27	변경	송학동	326-33	326-33	대	19	-	19	19	-	19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28	변경	송학동	326-34	326-34	도	31	-	31	31	-	31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29	기정	송학동	326-27	326-27	대	1	-	1	1	-	1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30	기정	송학동	326-28	326-28	대	2,363	-	2,363	2,363	-	2,36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31	기정	송학동	326-29	326-29	대	191	-	191	191	-	191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32	기정	송학동	326-30	326-30	대	6,693	-	6,693	6,693	-	6,69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33	기정	송학동	326-3	326-3	대	613	-	613	613	-	61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34	변경	송학동	326-31	326-31	도	4	-	4	4	-	4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35	변경	송학동	326-32	326-32	대	2	-	2	2	-	2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36	기정	송학동	326-8	326-8	대	152	-	152	152	-	152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m <sup>2</sup> )			권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명세
137	기정	송학동	326-9	326-9	대	663	-	663	663	-	66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38	기정	송학동	327-3	327-3	전	13	-	13	13	-	1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39	기정	송학동	327	327	전	110	-	110	110	-	110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40	기정	송학동	328-4	328-4	답	39	-	39	39	-	39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41	기정	송학동	328	328	답	106	-	106	106	-	10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42	기정	송학동	329-4	329-4	답	1	-	1	1	-	1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43	기정	송학동	329-7	329-7	답	2	-	2	2	-	2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44	기정	송학동	331-10	331-10	전	60	-	60	60	-	60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45	기정	송학동	331-11	331-11	전	246	-	246	246	-	24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46	기정	송학동	331-12	331-12	전	506	-	506	506	-	50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47	기정	송학동	331-13	331-13	전	602	-	602	602	-	602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48	기정	송학동	331-14	331-14	전	625	-	625	625	-	62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49	기정	송학동	331-15	331-15	전	337	-	337	337	-	337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50	기정	송학동	331-16	331-16	전	235	-	235	235	-	23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51	기정	송학동	331-17	331-17	묘	36	-	36	36	-	3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52	기정	송학동	331-18	331-18	전	155	-	155	155	-	15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53	기정	송학동	331-19	331-19	전	691	-	691	691	-	691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54	기정	송학동	331-20	331-20	전	475	-	475	475	-	47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55	기정	송학동	331-21	331-21	묘	137	-	137	137	-	137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56	기정	송학동	331-22	331-22	묘	46	-	46	46	-	4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57	기정	송학동	331-23	331-23	전	496	-	496	496	-	49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58	기정	송학동	331-24	331-24	전	258	-	258	258	-	258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59	기정	송학동	331-25	331-25	전	46	-	46	46	-	4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60	기정	송학동	331-26	331-26	전	350	-	350	350	-	350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61	기정	송학동	331-37	331-37	전	20	-	20	20	-	20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62	기정	송학동	331-38	331-38	전	42	-	42	42	-	42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63	기정	송학동	331-39	331-39	묘	28	-	28	28	-	28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64	기정	송학동	331-40	331-40	전	35	-	35	35	-	3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m <sup>2</sup> )			권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명세
165	기정	송학동	331-41	331-41	전	16	-	16	16	-	1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66	기정	송학동	331-42	331-42	전	58	-	58	58	-	58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67	기정	송학동	331-43	331-43	묘	2	-	2	2	-	2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68	기정	송학동	331-7	331-7	전	101	-	101	101	-	101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69	기정	송학동	331-8	331-8	전	716	-	716	716	-	71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70	기정	송학동	331-9	331-9	묘	95	-	95	95	-	9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71	변경	송학동		335-123	답		-	264		-	264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	-	-	분할 측량 반영
	제척	송학동	335-123	335-138	답	287	감)23	-	287	감)23	-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	-	-	
172	기정	송학동	335-125	335-125	답	267	-	267	267	-	267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73	기정	송학동	335-126	335-126	답	63	-	63	63	-	6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74	기정	송학동	335-67	335-67	답	43	-	43	43	-	4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75	기정	송학동	335-136	335-136	답	37	-	37	37	-	37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76	기정	송학동	338-24	338-24	도	195	-	195	195	-	19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77	기정	송학동	375-1	375-1	전	1	-	1	1	-	1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78	기정	송학동	375-21	375-21	전	44	-	44	44	-	44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79	기정	송학동	376	376	전	59	-	59	59	-	59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80	기정	송학동	609-4	609-4	답	452	-	452	452	-	452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81	기정	송학동	609-5	609-5	답	1,133	-	1,133	1,133	-	1,13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82	기정	송학동	610-10	610-10	전	178	-	178	178	-	178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83	기정	송학동	610-11	610-11	전	1,993	-	1,993	1,993	-	1,99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84	기정	송학동	610-12	610-12	전	26	-	26	26	-	2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85	기정	송학동	610-13	610-13	전	248	-	248	248	-	248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86	기정	송학동	610-14	610-14	전	160	-	160	160	-	160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87	기정	송학동	610-15	610-15	전	173	-	173	173	-	17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88	기정	송학동	610-16	610-16	전	52	-	52	52	-	52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89	기정	송학동	610-8	610-8	전	78	-	78	78	-	78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90	기정	송학동	610-9	610-9	전	706	-	706	706	-	70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91	기정	송학동	878-51	878-51	도	593	-	593	593	-	593	라송산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	-	소유권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m <sup>2</sup> )			권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명세
												주식회사	국제금융로8길 11					변동
192	기정	송학동	878-92	878-92	도	27	-	27	27	-	27	국(건설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	-	-	-	-
193	기정	송학동	878-93	878-93	도	31	-	31	31	-	31	국(건설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	-	-	-	-
194	기정	송학동	878-94	878-94	도	4	-	4	4	-	4	라송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	-	-	-	소유권 변동
195	기정	송학동	878-95	878-95	도	12	-	12	12	-	12	라송산업주 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	-	-	-	소유권 변동

2) 물건조서(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편입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익산시 송학동	322-24	창고	세멘부력	142	m <sup>2</sup>	백복순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7 오성유평아파트 A아동 107호	-	-	-	-
			둔사	세멘부력	493	m <sup>2</sup>	강정욱	전북 익산시 부송동 1084-1 제갈까지샘801동 602호	-	-	-	-
2	익산시 송학동	322-38	침엽수	-	36	그루	주성규	서산시 읍업면 도당리 가금말길2 한아름아파트 602호	-	-	-	-
3	익산시 송학동	322-75	건물(창고)	블록조	12	m <sup>2</sup>	김승금	익산시 송학동 322-110번지	-	-	-	-
			담장	헨스	2	m						
			대문	18*20	1	EA						
			문주	03*03	2	EA						
			수도시설	1*2	2	m <sup>2</sup>	김효경	이리시 모현동가 281	-	-	-	-
			건물(창고)	블럭	15	m <sup>2</sup>						
			담장	-	45	m						
			대문	18*20	1	EA						
			문주	-	2	EA						
			차양	스레트	50	m <sup>2</sup>						
감나무	-	2	그루	이승현	전북 익산시 무왕로6길 26 103동 108영등동, 우아아파트)	-	-	-	-			
대문	-	1	EA									
4	익산시 송학동	322-81	건물(주거)	연와조	51.83	m <sup>2</sup>	이승현	전북 익산시 무왕로6길 26 103동 108영등동, 우아아파트)	-	-	-	-
			담장	블록	11.4	m						
			조성자	-	-	-						
5	익산시 송학동	323-3	건물(창고)	-	24	m <sup>2</sup>	조성자	전라북도 익산시 배산로33 송학동 송학리센시빌 102동 206호	-	-	-	-
			감나무	-	3	그루						
			복숭아나무	-	1	그루						
			자두나무	-	1	그루						
			사과나무	-	1	그루						
			아로니아	-	5	그루						
			대추나무	-	1	그루						
			매실나무	-	1	그루						
			가시오가피	-	4	그루						
			무화과	-	2	그루						
			울타리	-	30	m						
소나무	-	35	그루	소유자이상	-	-	-	-				
6	익산시 송학동	324-1	침엽수	-	97	그루	주성규	서산시 읍업면 도당리 가금말길2 한아름아파트 602호	-	-	-	-
7	익산시 송학동	336-13	건물(창고)	35*28	98	m <sup>2</sup>	김주병	광주광역시 동구 팔문대로 12-7, 108동 1101호(계림동, 금화타운)	-	-	-	-
							장일윤	전북 익산시 영등동 147 골든게슬아파트 102-1102	-	-	-	-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편입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8	익산시 오산면 송학리	319-16	활엽수	-	5	그루	익산시	-	-	-	-	-
9	익산시 송학동	331-13	간물(창고)	40*30	12	m <sup>2</sup>	국가확재장부	-	-	-	-	-
			활엽수	-	10	그루						
10	익산시 송학동	331-19	과실수	-	7	그루	국가확재장부	-	-	-	-	-
			비닐하우스	1중비닐 10mm 파이프	12	m <sup>2</sup>						
11	익산시 송학동	331-25	조경수	-	12	그루	국가확재장부	-	-	-	-	-
			과실수	-	29	그루						
			조경수	-	40	그루						
12	익산시 송학동	335-66	빗물받이	스틸 그레이팅	1	EA	익산시	-	-	-	-	-
			빗물받이	스틸 그레이팅	1	EA						
13	익산시 오산면 송학리	613-30	과실수	-	4	그루	익산시	-	-	-	-	-
			빗물받이	-	10	EA						
14	익산시 오산면 송학리	613-31	저온저장고	30*20	6	m <sup>2</sup>	익산시	-	-	-	-	-
			간물(창고)	85*58	43	m <sup>2</sup>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43	익산 송학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라북도 익산시 송학동, 송학리 일원	48,077.0	감)23.0	48,054.0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43	전라북도 익산시 송학동, 송학리 일원	48,077.0㎡→ 48,054.0㎡ [감) 23.0㎡]	• 예정 지적 확정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건축물이 도로 노선에 조성된 현황을 고려한 도로 폭원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열람방법 : 전북특별자치도청 주택건축과(063-280-2368)와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92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 II.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 명 칭 : 익산 송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송학동 326-1번지 일원
- 면 적
  - 기 정 : 48,077.0m<sup>2</sup>
  - 변 경 : 48,054.0m<sup>2</sup> (감 23.0m<sup>2</sup>)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익산 송학동 일원 미개발 주거지역에 주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 생활 환경 조성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라송산업(주)
- 대표자 성명 : 송성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 3.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기간 : 지구지정일 ~ 2024년
- 재원조달계획 : 자기자본 등

### 4.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8,077.0	감)23.0	48,054.0	100.0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	40,176.0	-	40,176.0	83.6	
기반시설용지	도로	7,901.0	감)23.0	7,878.0	16.4	

### 5. 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

### 6.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 수용인구 : 2,339인

○ 주택건설계획 : 866세대

구분	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인구(인)	비고
계	40,338.1	-	866	2,339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공동주택	40,338.1	-	866	2,339	
59㎡	-	80.65	221	597	
84㎡	소계	-	645	1,742	
	A형	-	551	1,488	
	B형	-	94	254	

\*가구당인구수는 2.7인 적용(익산도시기본계획)

7.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67	16	집산도 로	212	소로1-813 (송학동 335-66답)	중로2-68 (송학동 332-94전)	일반 도로		전북109 (21.04.16)	
변경	중로	2	67	15.5~ 16	집산도 로	212	소로1-813 (송학동 335-66답)	중로2-68 (송학동 332-94전)	일반 도로		전북109 (21.04.16)	분할측량 반영
기정	중로	2	68	15 ~18	집산도 로	219	소로3-66 (송학동 322-156전)	소로2-47 (송학동 609-2답)	일반 도로		전북109 (21.04.16)	
기정	소로	1	813	9 ~11	국지도 로	207	소로3-62 (송학동 335-66답)	소로2-816 (오산면 송학리 613-1묘)	일반 도로		전북109 (21.04.16)	
기정	소로	2	834	8	국지도 로	211	소로2-816 (오산면 송학리 613-30잡)	중로2-68 (송학동 610-3전)	일반 도로		전북109 (21.04.16)	
기정	소로	2	835	9	국지도 로	50	소로2-31 (송학동 338-21도)	중로2-67 (송학동 326-24대)	일반 도로		전북315 (21.10.08)	

8.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환경보전계획

- 공동주택개발 부지 지상에 조경식재로 녹화환경 조성
- 관련법에 따른 인동간격을 고려한 건축배치로 바람길 확보

○ 탄소저감계획

- 사업지의 동서방향의 바람길 확보를 통한 열섬 현상 완화
- 도로, 보도, 주차장 등의 표면 투수성 포장
- 가로별 녹화 등을 통한 탄소 흡수 및 탄소흡착 효과가 높은 수종 식재
- 지구외 버스 정류장과 연계한 보행동선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탄소발생 저감
- 단지내 지하층에 빗물재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하여 조경용수 및 청소용수로 활용하며 설계시 다양한 LID 공법 적용

9.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

○ 붙임(도면계재 생략)

**【붙임1】**

1. 도시·군관리계획(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43	익산 송학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라북도 익산시 송학동, 송학리 일원	48,077.0	감)23.0	48,054.0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43	전라북도 익산시 송학동, 송학리 일원	48,077.0㎡→48,054.0㎡ [감) 23.0㎡]	• 예정 지적 확정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건축물이 도로 노선에 조성된 현황을 고려한 도로 폭원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로
- 도로총괄표

구분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합계	기정	5	899	11,493.9 (7,901.0)	1	207	2,334.4 (388.0)	4	692	9,159.5 (7,513.0)	-	-	-
	변경	5	899	11,470.9 (7,878.0)	1	207	2,334.4 (388.0)	4	692	9,136.5 (7,490.0)	-	-	-
중로	기정	2	431	7,003.5 (5,357.0)	-	-	-	2	431	7,003.5 (5,357.0)	-	-	-
	변경	2	431	6,980.5 (5,334.0)	-	-	-	2	431	6,980.5 (5,334.0)	-	-	-
소로	기정	3	468	4,490.4 (2,544.0)	1	207	2,334.4 (388.0)	2	261	2,156.0 (2,156.0)	-	-	-
	변경	3	468	4,490.4 (2,544.0)	1	207	2,334.4 (388.0)	2	261	2,156.0 (2,156.0)	-	-	-

주) ( )는 도로의 지구 내 면적임

※ 금회 변경 사항은 지적분할 측량으로 인한 도로 면적 변경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67	16	집산도로	212	소로1-813 (송학동 335-66답)	중로2-68 (송학동 332-94전)	일반도로		전북109 (21.04.16)	
변경	중로	2	67	15.5~16	집산도로	212	소로1-813 (송학동 335-66답)	중로2-68 (송학동 332-94전)	일반도로		전북109 (21.04.16)	분할측량 반영
기정	중로	2	68	15~18	집산도로	219	소로3-66 (송학동 322-156전)	소로2-47 (송학동 609-2답)	일반도로		전북109 (21.04.16)	
기정	소로	1	813	9~11	국지도로	207	소로3-62 (송학동 335-66답)	소로2-816 (오산면 송학리 613-1묘)	일반도로		전북109 (21.04.16)	
기정	소로	2	834	8	국지도로	211	소로2-816 (오산면 송학리 613-30잡)	중로2-68 (송학동 610-3전)	일반도로		전북109 (21.04.16)	
기정	소로	2	835	9	국지도로	50	소로2-31 (송학동 338-21도)	중로2-67 (송학동 326-24대)	일반도로		전북315 (21.10.08)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67	중로2-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면적변경</li> <li>- 폭원 : 16m → 15.5~16m</li> <li>- 면적 : 3,419㎡ → 3,396㎡ (감2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정지적확정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건축물이 도로 노선에 조성된 현황을 고려한 도로 폭원변경</li> </ul>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공동주택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공동1	공동1	40,176.0	1	송학동 322-2 전 일원	40,176.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공동주택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동1	공동1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이	• 28층 이하 [단, 경관법 제28조(건축물의 경관심의)로 결정된 사항에 따른다.]	
		배치·형태	• 경관법 제28조(건축물의 경관심의)로 결정된 사항에 따른다.	
		색채	• 경관법 제28조(건축물의 경관심의)로 결정된 사항에 따른다.	
건축선	•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단,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외)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3. 방재(防災)계획(변경없음)

- 호우재해 : 공사중 가배수로 설치, 우수관거 침투통 등 설치
- 토사재해 :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내 퇴적토 준설 주기적 실시
- 지진재해 : 사업지구내 공동주택 및 주요 시설물 내진설계 검토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변경)

1) 토지세목조서(변경)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명 세
소계			192필지	195필지		48,077	감)23	48,054	48,077	감)23	48,054	-	-	-	-	-	-	-
1	기정	송학리	318-2	318-2	전	21	-	21	21	-	21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2	기정	송학리	318-7	318-7	전	14	-	14	14	-	14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3	기정	송학리	319-15	319-15	잡	416	-	416	416	-	41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4	기정	송학리	319-16	319-16	잡	28	-	28	28	-	28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	-	-	-
5	기정	송학리	319-17	319-17	잡	13	-	13	13	-	1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m <sup>2</sup> )			편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명세
6	기정	송학리	319-22	319-22	도	5	-	5	5	-	5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	-	-	-
7	기정	송학리	319-23	319-23	잡	20	-	20	20	-	2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8	기정	송학리	319-7	319-7	도	208	-	208	208	-	208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	-	-	-
9	기정	송학리	320-2	320-2	중	14	-	14	14	-	14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0	기정	송학리	320-3	320-3	전	205	-	205	205	-	205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1	기정	송학리	320-4	320-4	전	189	-	189	189	-	189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2	기정	송학리	320	320	중	665	-	665	665	-	665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3	기정	송학리	612-13	612-13	대	1	-	1	1	-	1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4	기정	송학리	612-14	612-14	도	1	-	1	1	-	1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	-	-	-
15	기정	송학리	613-1	613-1	잡	168	-	168	168	-	168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	-	-	-
16	기정	송학리	613-2	613-2	잡	144	-	144	144	-	144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7	기정	송학리	613-30	613-30	잡	496	-	496	496	-	496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	-	-	-
18	기정	송학리	613-31	613-31	잡	79	-	79	79	-	79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	-	-	-
19	기정	송학리	613-35	613-35	잡	22	-	22	22	-	22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	-	-	-
20	기정	송학리	613-36	613-36	잡	18	-	18	18	-	18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21	기정	송학리	613-37	613-37	잡	61	-	61	61	-	61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22	기정	송학리	613-38	613-38	잡	162	-	162	162	-	162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23	기정	송학리	613-39	613-39	잡	3	-	3	3	-	3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24	기정	송학리	613-3	613-3	잡	316	-	316	316	-	316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25	기정	송학리	613-4	613-4	잡	1,517	-	1,517	1,517	-	1,517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26	변경	송학리	885-24	885-24	도	169	감)58	111	169	감)58	111	국(건설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읍6로11	-	-	-	-	분할 측량 반영, 일부 소유권 변동
27	변경	송학리		885-29	도	-	증)38	38	-	증)38	38	라송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	-	-	-	
28	변경	송학리		885-30	도	-	증)20	20	-	증)20	20	라송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	-	-	-	
29	기정	송학리	885-26	885-26	도	5	-	5	5	-	5	라송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	-	-	-	소유권 변동
30	기정	송학리	886-1	886-1	도	9	-	9	9	-	9	라송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	-	-	-	소유권 변동
31	기정	송학동	321	321	전	18	-	18	18	-	18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32	기정	송학동	322-100	322-100	대	35	-	35	35	-	35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33	기정	송학동	322-120	322-120	대	334	-	334	334	-	334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	-	-	-	-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m <sup>2</sup> )			편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명 세
												증공사	문현금융로40					
34	기정	송학동	322-121	322-121	진	695	-	695	695	-	69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35	기정	송학동	322-122	322-122	대	217	-	217	217	-	217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36	기정	송학동	322-123	322-123	진	225	-	225	225	-	22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37	기정	송학동	322-124	322-124	대	282	-	282	282	-	282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38	기정	송학동	322-125	322-125	진	276	-	276	276	-	27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39	기정	송학동	322-126	322-126	대	187	-	187	187	-	187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40	기정	송학동	322-127	322-127	진	188	-	188	188	-	188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41	기정	송학동	322-128	322-128	진	199	-	199	199	-	199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42	기정	송학동	322-129	322-129	진	330	-	330	330	-	330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43	기정	송학동	322-134	322-134	대	13	-	13	13	-	1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44	기정	송학동	322-135	322-135	대	3	-	3	3	-	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45	기정	송학동	322-137	322-137	도	9	-	9	9	-	9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46	기정	송학동	322-138	322-138	진	166	-	166	166	-	16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47	기정	송학동	322-139	322-139	진	106	-	106	106	-	10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48	기정	송학동	322-14	322-14	대	121	-	121	121	-	121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49	기정	송학동	322-15	322-15	진	1,660	-	1,660	1,660	-	1,660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50	기정	송학동	322-163	322-163	도	10	-	10	10	-	10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51	기정	송학동	322-164	322-164	도	6	-	6	6	-	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52	기정	송학동	322-165	322-165	대	33	-	33	33	-	3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53	기정	송학동	322-16	322-16	진	1,370	-	1,370	1,370	-	1,370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54	기정	송학동	322-17	322-17	진	847	-	847	847	-	847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55	기정	송학동	322-180	322-180	진	324	-	324	324	-	324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56	기정	송학동	322-181	322-181	진	16	-	16	16	-	1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57	기정	송학동	322-182	322-182	대	44	-	44	44	-	44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58	기정	송학동	322-183	322-183	대	186	-	186	186	-	18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59	기정	송학동	322-184	322-184	진	242	-	242	242	-	242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60	기정	송학동	322-185	322-185	진	117	-	117	117	-	117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m <sup>2</sup> )			편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명 세
61	변경	송학동	322-186	322-186	전	390	감51	339	390	감51	339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	-	-	분할 측량 반영
62	변경	송학동		322-214	전	-	증51	51	-	증51	51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	-	-	
63	기정	송학동	322-187	322-187	전	19	-	19	19	-	19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	-	-	-
64	기정	송학동	322-188	322-188	전	19	-	19	19	-	19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	-	-	-
65	기정	송학동	322-189	322-189	전	22	-	22	22	-	22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	-	-	-
66	기정	송학동	322-190	322-190	대	2	-	2	2	-	2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67	기정	송학동	322-191	322-191	대	67	-	67	67	-	67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68	기정	송학동	322-192	322-192	전	63	-	63	63	-	6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69	기정	송학동	322-193	322-193	대	25	-	25	25	-	2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70	기정	송학동	322-194	322-194	대	83	-	83	83	-	8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71	기정	송학동	322-195	322-195	대	55	-	55	55	-	5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72	기정	송학동	322-196	322-196	대	62	-	62	62	-	62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73	기정	송학동	322-197	322-197	대	2	-	2	2	-	2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74	기정	송학동	322-198	322-198	대	137	-	137	137	-	137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75	기정	송학동	322-199	322-199	대	83	-	83	83	-	8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76	기정	송학동	322-200	322-200	대	74	-	74	74	-	74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77	기정	송학동	322-201	322-201	대	6	-	6	6	-	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78	기정	송학동	322-202	322-202	대	98	-	98	98	-	98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79	기정	송학동	322-203	322-203	대	85	-	85	85	-	8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80	기정	송학동	322-204	322-204	전	5	-	5	5	-	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81	기정	송학동	322-205	322-205	대	36	-	36	36	-	3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82	기정	송학동	322-206	322-206	대	1	-	1	1	-	1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83	기정	송학동	322-207	322-207	대	6	-	6	6	-	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84	기정	송학동	322-208	322-208	대	5	-	5	5	-	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85	기정	송학동	322-209	322-209	대	5	-	5	5	-	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86	기정	송학동	322-210	322-210	대	160	-	160	160	-	160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87	기정	송학동	322-211	322-211	전	150	-	150	150	-	150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	-	-	-
88	기정	송학동	322-212	322-212	전	67	-	67	67	-	67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	-	-	-	-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m <sup>2</sup> )			편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명 세
														인북로 32길 1				
89	기정	송학동	322-213	322-213	전	18	-	18	18	-	18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	-	-	-
90	기정	송학동	322-2	322-2	전	1,246	-	1,246	1,246	-	1,24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91	기정	송학동	322-36	322-36	전	1,309	-	1,309	1,309	-	1,309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92	기정	송학동	322-37	322-37	전	119	-	119	119	-	119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93	기정	송학동	322-38	322-38	전	142	-	142	142	-	142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94	기정	송학동	322-3	322-3	전	296	-	296	296	-	29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95	기정	송학동	322-41	322-41	대	118	-	118	118	-	118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96	기정	송학동	322-42	322-42	대	678	-	678	678	-	678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97	기정	송학동	322-43	322-43	전	72	-	72	72	-	72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98	기정	송학동	322-56	322-56	대	10	-	10	10	-	10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99	기정	송학동	322-74	322-74	대	120	-	120	120	-	120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00	기정	송학동	322-76	322-76	대	109	-	109	109	-	109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01	기정	송학동	322-77	322-77	대	105	-	105	105	-	10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02	기정	송학동	322-78	322-78	대	16	-	16	16	-	1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03	기정	송학동	322-79	322-79	대	106	-	106	106	-	10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04	기정	송학동	322-81	322-81	대	26	-	26	26	-	2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05	기정	송학동	322-82	322-82	대	90	-	90	90	-	90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06	기정	송학동	322-86	322-86	대	11	-	11	11	-	11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07	기정	송학동	322-88	322-88	대	11	-	11	11	-	11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08	기정	송학동	322-89	322-89	전	35	-	35	35	-	3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09	기정	송학동	322-92	322-92	대	45	-	45	45	-	4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10	기정	송학동	322-93	322-93	대	25	-	25	25	-	2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11	기정	송학동	322-94	322-94	전	23	-	23	23	-	23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	-	-	-
112	기정	송학동	322-95	322-95	대	35	-	35	35	-	3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13	기정	송학동	323-1	323-1	전	132	-	132	132	-	132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14	기정	송학동	323-2	323-2	전	79	-	79	79	-	79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15	기정	송학동	323-3	323-3	전	1,127	-	1,127	1,127	-	1,127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16	기정	송학동	324-1	324-1	전	813	-	813	813	-	813	주택도시보	부산광역시 남구	-	-	-	-	소유권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m <sup>2</sup> )			편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명 세	
												증공사	문현금융로40					변동
117	기정	송학동	324-2	324-2	전	33	-	33	33	-	3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18	기정	송학동	326-10	326-10	대	31	-	31	31	-	31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19	기정	송학동	326-16	326-16	대	11	-	11	11	-	11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20	기정	송학동	326-17	326-17	대	183	-	183	183	-	18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21	기정	송학동	326-18	326-18	대	1,053	-	1,053	1,053	-	1,05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22	기정	송학동	326-20	326-20	대	171	-	171	171	-	171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23	기정	송학동	326-21	326-21	대	40	-	40	40	-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24	기정	송학동	326-22	326-22	대	223	-	223	223	-	22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25	기정	송학동	326-23	326-23	대	53	-	53	53	-	5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26	변경	송학동	326-35	326-35	대	129	-	129	129	-	129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27	변경	송학동	326-33	326-33	대	19	-	19	19	-	19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28	변경	송학동	326-34	326-34	도	31	-	31	31	-	31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29	기정	송학동	326-27	326-27	대	1	-	1	1	-	1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30	기정	송학동	326-28	326-28	대	2,363	-	2,363	2,363	-	2,36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31	기정	송학동	326-29	326-29	대	191	-	191	191	-	191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32	기정	송학동	326-30	326-30	대	6,693	-	6,693	6,693	-	6,69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33	기정	송학동	326-3	326-3	대	613	-	613	613	-	61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34	변경	송학동	326-31	326-31	도	4	-	4	4	-	4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35	변경	송학동	326-32	326-32	대	2	-	2	2	-	2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36	기정	송학동	326-8	326-8	대	152	-	152	152	-	152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37	기정	송학동	326-9	326-9	대	663	-	663	663	-	66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38	기정	송학동	327-3	327-3	전	13	-	13	13	-	1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39	기정	송학동	327	327	전	110	-	110	110	-	110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40	기정	송학동	328-4	328-4	답	39	-	39	39	-	39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41	기정	송학동	328	328	답	106	-	106	106	-	10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42	기정	송학동	329-4	329-4	답	1	-	1	1	-	1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43	기정	송학동	329-7	329-7	답	2	-	2	2	-	2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m <sup>2</sup> )			편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명세	
144	기정	송학동	331-10	331-10	전	60	-	60	60	-	6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45	기정	송학동	331-11	331-11	전	246	-	246	246	-	246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46	기정	송학동	331-12	331-12	전	506	-	506	506	-	506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47	기정	송학동	331-13	331-13	전	602	-	602	602	-	602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48	기정	송학동	331-14	331-14	전	625	-	625	625	-	625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49	기정	송학동	331-15	331-15	전	337	-	337	337	-	337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50	기정	송학동	331-16	331-16	전	235	-	235	235	-	235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51	기정	송학동	331-17	331-17	묘	36	-	36	36	-	36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52	기정	송학동	331-18	331-18	전	155	-	155	155	-	155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53	기정	송학동	331-19	331-19	전	691	-	691	691	-	691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54	기정	송학동	331-20	331-20	전	475	-	475	475	-	475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55	기정	송학동	331-21	331-21	묘	137	-	137	137	-	137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56	기정	송학동	331-22	331-22	묘	46	-	46	46	-	46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57	기정	송학동	331-23	331-23	전	496	-	496	496	-	496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58	기정	송학동	331-24	331-24	전	258	-	258	258	-	258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59	기정	송학동	331-25	331-25	전	46	-	46	46	-	46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60	기정	송학동	331-26	331-26	전	350	-	350	350	-	35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61	기정	송학동	331-37	331-37	전	20	-	20	20	-	2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62	기정	송학동	331-38	331-38	전	42	-	42	42	-	42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63	기정	송학동	331-39	331-39	묘	28	-	28	28	-	28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64	기정	송학동	331-40	331-40	전	35	-	35	35	-	35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65	기정	송학동	331-41	331-41	전	16	-	16	16	-	16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66	기정	송학동	331-42	331-42	전	58	-	58	58	-	58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67	기정	송학동	331-43	331-43	묘	2	-	2	2	-	2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68	기정	송학동	331-7	331-7	전	101	-	101	101	-	101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69	기정	송학동	331-8	331-8	전	716	-	716	716	-	716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70	기정	송학동	331-9	331-9	묘	95	-	95	95	-	95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71	변경	송학동	335-123	335-123	답	287	-	264	287	-	264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	-	-	-	분할
	제척	송학동		335-138	답		감)23	-		감)23	-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	-	-	-	-	-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m <sup>2</sup> )			편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명 세
													인복로 32길 1					
172	기정	송학동	335-125	335-125	답	267	-	267	267	-	267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73	기정	송학동	335-126	335-126	답	63	-	63	63	-	6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74	기정	송학동	335-67	335-67	답	43	-	43	43	-	4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75	기정	송학동	335-136	335-136	답	37	-	37	37	-	37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76	기정	송학동	338-24	338-24	도	195	-	195	195	-	19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77	기정	송학동	375-1	375-1	전	1	-	1	1	-	1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78	기정	송학동	375-21	375-21	전	44	-	44	44	-	44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소유권 변동
179	기정	송학동	376	376	전	59	-	59	59	-	59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80	기정	송학동	609-4	609-4	답	452	-	452	452	-	452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81	기정	송학동	609-5	609-5	답	1,133	-	1,133	1,133	-	1,13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82	기정	송학동	610-10	610-10	전	178	-	178	178	-	178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83	기정	송학동	610-11	610-11	전	1,993	-	1,993	1,993	-	1,99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84	기정	송학동	610-12	610-12	전	26	-	26	26	-	2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85	기정	송학동	610-13	610-13	전	248	-	248	248	-	248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86	기정	송학동	610-14	610-14	전	160	-	160	160	-	160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87	기정	송학동	610-15	610-15	전	173	-	173	173	-	17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88	기정	송학동	610-16	610-16	전	52	-	52	52	-	52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89	기정	송학동	610-8	610-8	전	78	-	78	78	-	78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90	기정	송학동	610-9	610-9	전	706	-	706	706	-	70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	-	-	-
191	기정	송학동	878-51	878-51	도	503	-	503	503	-	503	라송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	-	-	-	소유권 변동
192	기정	송학동	878-92	878-92	도	27	-	27	27	-	27	국(건설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	-	-	-	-
193	기정	송학동	878-93	878-93	도	31	-	31	31	-	31	국(건설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	-	-	-	-
194	기정	송학동	878-94	878-94	도	4	-	4	4	-	4	라송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	-	-	-	소유권 변동
195	기정	송학동	878-95	878-95	도	12	-	12	12	-	12	라송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	-	-	-	소유권 변동

2) 물건 조서(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편입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익산시 송학동	322-24	창고	세멘부력	142	m <sup>2</sup>	박복순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7 오성유도카이A 이동 107호	-	-	-	-
			돈사	세멘부력	493	m <sup>2</sup>	강성욱	전북 익산시 부송동 1084-1 제일캐치셀81이동 02호	-	-	-	-
2	익산시 송학동	322-38	침엽수	-	26	그루	주영규	사천시 음암면 도당리 가금말길30 한아름아파트 02호	-	-	-	-
3	익산시 송학동	322-75	건물(창고)	블록조	12	m <sup>2</sup>	김순금	익산시 송학동 322-110번지	-	-	-	-
			담장	웬스	2	m						
			대문	18*20	1	EA						
			문주	03*03	2	EA						
			수도시설	1*2	2	m <sup>2</sup>						
		건물(창고)	블럭	15	m <sup>2</sup>	김효경	익산시 모현동1가284	-	-	-	-	
		담장	-	45	m							
		대문	18*20	1	EA							
		문주	-	2	EA							
		차양	스퀘어	50	m <sup>2</sup>							
간나무	-	2	그루									
4	익산시 송학동	322-81	대문	-	1	EA	이유현	전북 익산시 무왕로16길 25 108동 1508 영등동, 우미아파트	-	-	-	-
			건물(주거)	연외조	51.83	m <sup>2</sup>						
			담장	블록	11.4	m						
5	익산시 송학동	323-3	건물(창고)	-	24	m <sup>2</sup>	조성자	전라북도 익산시 배산로33 송학동 송학리제사빌 102동 206호	-	-	-	-
			간나무	-	3	그루						
			복숭아나무	-	1	그루						
			자두나무	-	1	그루						
			사과나무	-	1	그루						
			야외주차	-	5	그루						
			대추나무	-	1	그루						
			매실나무	-	1	그루						
가시오기떡	-	4	그루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편입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무화과	-	2	그루						
			올타리	-	30	m						
			소나무	-	35	그루	소유자미상	-	-	-	-	-
6	익산시 송학동	324-1	참엽수	-	97	그루	주상규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가금말길50 한아름아파트 602호	-	-	-	-
7	익산시 송학동	335-13	건물(창고)	35*28	98	㎡	김규병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12-7, 108동 1101호(계림동, 금호타운)	-	-	-	-
							장일윤	전북 익산시 영등동 147 골든캐슬아파트 102-1102	-	-	-	-
8	익산시 오산면 송학리	319-16	활엽수	-	5	그루	익산시	-	-	-	-	-
9	익산시 송학동	331-13	건물(창고)	40*30	12	㎡	국기확재장부	-	-	-	-	-
			활엽수	-	10	그루						
10	익산시 송학동	331-19	과실수	-	7	그루	국기확재장부	-	-	-	-	-
			바닐라하우스	1층바닐라 16mm 파이프	12	㎡						
11	익산시 송학동	331-25	조경수	-	12	그루	국기확재장부	-	-	-	-	-
			과실수	-	29	그루						
			조경수	-	40	그루						
12	익산시 송학동	335-66	빗물받이	스틸 그레이팅	1	EA	익산시	-	-	-	-	-
			빗물받이	스틸 그레이팅	1	EA						
13	익산시 오산면 송학리	613-30	과실수	-	4	그루	익산시	-	-	-	-	-
			빗물받이	-	10	EA						
14	익산시 오산면 송학리	613-31	자은저장고	30*20	6	㎡	익산시	-	-	-	-	-
			건물(창고)	85*58	43	㎡						

3) 토지취득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용 수용함

## 4)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사업부지내 건축물, 공작물 전면 철거 후 신축

##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변경)

○ 공공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구분	개소/노선수	면적(m <sup>2</sup> )			귀속기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	7,901.0	감)23.0	7,878.0	익산시	-
도로	5	7,901.0	감)23.0	7,878.0	익산시	B=8~18m, L=899

##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감리자로 지정하고 분야별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업무 수행

##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공급대상자	공급시기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8,077.0	감)23.0	48,054.0	100.0	-	-	-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	40,176.0	-	40,176.0	83.6	자체사용	승인후	-
기반시설용지	도로	7,901.0	감)23.0	7,878.0	16.4	익산시장	도로 조성 후 기부채납	-

## 8.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붙임2]

**【붙임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송학동 32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익산 송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시설명	사업시행지 위치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비 고
기정	중로 2-67	익산시 송학동 326-18번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212.0m, B=16m</li> <li>• 면적=3,419㎡</li> </ul>	
변경	중로 2-67	익산시 송학동 326-18번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212.0m, B=15.5~16m</li> <li>• 면적=3,396㎡</li> </ul>	분할 측량 반영
기정	중로 2-68	익산시 송학동 609-4번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219.0m, B=15~18m</li> <li>• 면적=1,938㎡</li> </ul>	
기정	소로 1-813	익산시 오산면 송학리 613-38번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207.0m, B=9~11.0m</li> <li>• 면적=388㎡</li> </ul>	
기정	소로 2-834	익산시 오산면 송학리 613-30번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211.0m, B=8.0m</li> <li>• 면적=1,675㎡</li> </ul>	
기정	소로 2-835	익산시 송학동 338-24번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50.0m, B=9m</li> <li>• 면적=481.0㎡</li> </ul>	

4. 사업시행자

- 성 명 : 라송산업(주) 대표 송성민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11,(여의도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공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 예정일 : 주택건설사업 준공 시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중(집)2-67 (기정)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면적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합 계				3,609	3,419					
1	송학동	322-100	대	35	35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	송학동	322-182	대	44	42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3	송학동	322-185	전	117	2	국(기획재 정부)	-	-	-	-
4	송학동	322-186	전	390	390	익산시	-	-	-	-
5	송학동	322-187	전	19	19	익산시	-	-	-	-
6	송학동	322-192	전	63	63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7	송학동	322-193	대	25	1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8	송학동	322-194	대	83	71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9	송학동	322-195	대	55	55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0	송학동	322-196	대	62	62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1	송학동	322-213	전	18	18	익산시	-	-	-	-
12	송학동	322-56	대	10	10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3	송학동	322-86	대	11	11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4	송학동	322-88	대	11	11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5	송학동	322-89	전	35	35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6	송학동	322-92	대	45	22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7	송학동	322-93	대	25	25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8	송학동	322-94	전	23	19	익산시	-	-	-	-
19	송학동	322-95	대	35	35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0	송학동	326-10	대	31	31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1	송학동	326-17	대	183	183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2	송학동	326-18	대	1,053	1,053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3	송학동	326-20	대	171	171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4	송학동	326-21	대	40	40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5	송학동	326-22	대	223	223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6	송학동	326-23	대	53	53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7	송학동	326-8	대	152	152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8	송학동	335-123	답	287	281	익산시	-	-	-	-
29	송학동	335-125	답	267	263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30	송학동	335-67	답	43	43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 □ 중(집)2-67 (변경)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합 계				3,586	3,396					
1	송학동	322-100	대	35	35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	송학동	322-182	대	44	42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3	송학동	322-185	전	117	2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4	송학동	322-186	전	339	339	익산시	-	-	-	-
5	송학동	322-214	전	51	51	익산시	-	-	-	-
6	송학동	322-187	전	19	19	익산시	-	-	-	-
7	송학동	322-192	전	63	63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8	송학동	322-193	대	25	1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9	송학동	322-194	대	83	71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0	송학동	322-195	대	55	55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1	송학동	322-196	대	62	62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2	송학동	322-213	전	18	18	익산시	-	-	-	-
13	송학동	322-56	대	10	10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4	송학동	322-86	대	11	11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5	송학동	322-88	대	11	11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6	송학동	322-89	전	35	35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7	송학동	322-92	대	45	22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8	송학동	322-93	대	25	25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9	송학동	322-94	전	23	19	익산시	-	-	-	-
20	송학동	322-95	대	35	35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1	송학동	326-10	대	31	31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2	송학동	326-17	대	183	183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3	송학동	326-18	대	1,053	1,053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4	송학동	326-20	대	171	171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5	송학동	326-21	대	40	40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6	송학동	326-22	대	223	223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7	송학동	326-23	대	53	53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8	송학동	326-8	대	152	152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9	송학동	335-123	답	264	258	익산시	-	-	-	-
30	송학동	335-125	답	267	263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31	송학동	335-67	답	43	43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 중(집)2-68 (기정)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합 계				2,307	1,938					
1	송학동	321	전	18	18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	송학동	322-135	대	3	3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3	송학동	322-137	도	9	9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4	송학동	322-164	도	6	6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5	송학동	322-165	대	33	33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6	송학동	322-180	전	324	324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7	송학동	322-181	전	16	16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8	송학동	322-182	대	44	2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9	송학동	322-183	대	186	186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0	송학동	322-184	전	242	242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1	송학동	322-185	전	117	115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2	송학동	322-188	전	19	19	익산시	-	-	-	-
13	송학동	322-189	전	22	22	익산시	-	-	-	-
14	송학동	322-190	대	2	2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5	송학동	322-191	대	67	67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6	송학동	322-193	대	25	24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7	송학동	322-194	대	83	12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8	송학동	322-197	대	2	2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9	송학동	322-198	대	137	137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0	송학동	322-78	대	16	16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1	송학동	322-81	대	26	26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2	송학동	322-92	대	45	23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3	송학동	322-94	전	23	4	익산시	-	-	-	-
24	송학동	375-1	전	1	1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5	송학동	375-21	전	44	44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6	송학동	376	전	59	59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7	송학동	609-4	답	452	452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8	송학동	610-12	전	26	26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9	송학동	610-13	전	248	36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30	송학동	878-95	도	12	12	국(건설 부)	-	-	-	-

□ 중(집)2-68 (변경)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합 계				2,307	1,938					
1	송학동	321	전	18	18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	송학동	322-135	대	3	3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3	송학동	322-137	도	9	9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4	송학동	322-164	도	6	6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5	송학동	322-165	대	33	33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6	송학동	322-180	전	324	324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7	송학동	322-181	전	16	16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8	송학동	322-182	대	44	2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9	송학동	322-183	대	186	186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0	송학동	322-184	전	242	242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1	송학동	322-185	전	117	115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2	송학동	322-188	전	19	19	익산시	-	-	-	-
13	송학동	322-189	전	22	22	익산시	-	-	-	-
14	송학동	322-190	대	2	2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5	송학동	322-191	대	67	67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6	송학동	322-193	대	25	24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7	송학동	322-194	대	83	12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8	송학동	322-197	대	2	2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9	송학동	322-198	대	137	137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0	송학동	322-78	대	16	16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1	송학동	322-81	대	26	26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2	송학동	322-92	대	45	23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3	송학동	322-94	전	23	4	익산시	-	-	-	-
24	송학동	375-1	전	1	1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5	송학동	375-21	전	44	44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6	송학동	376	전	59	59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7	송학동	609-4	답	452	452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8	송학동	610-12	전	26	26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9	송학동	610-13	전	248	36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30	송학동	878-95	도	12	12	라송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	-	-

## □ 소(국)1-813 (기정)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합 계				1,526	388					
1	송학리	318-7	전	14	14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	송학리	319-22	도	5	5	익산시	-	-	-	-
3	송학리	319-23	잡	20	20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4	송학리	613-30	잡	496	1	익산시	-	-	-	-
5	송학리	613-38	잡	162	63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6	송학리	885-26	도	5	5	국(건설부)	-	-	-	-
7	송학동	326-16	대	11	11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8	송학동	327-3	전	13	13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9	송학동	328-4	답	39	39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0	송학동	329-7	답	2	2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1	송학동	331-37	전	20	20	국(기획재 정부)	-	-	-	-
12	송학동	331-38	전	42	42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3	송학동	331-39	묘	28	28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4	송학동	331-40	전	35	35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5	송학동	331-41	전	16	16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6	송학동	331-42	전	58	58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7	송학동	331-43	묘	2	2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8	송학동	335-12 3	답	287	6	익산시	-	-	-	-
19	송학동	335-12 5	답	267	4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0	송학동	878-94	도	4	4	국(건설부)	-	-	-	-

## □ 소(국)1-813 (변경)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합 계				1,503	388					
1	송학리	318-7	전	14	14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	송학리	319-22	도	5	5	익산시	-	-	-	-
3	송학리	319-23	잡	20	20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4	송학리	613-30	잡	496	1	익산시	-	-	-	-
5	송학리	613-38	잡	162	63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6	송학리	885-26	도	5	5	라송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	-	-
7	송학동	326-16	대	11	11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8	송학동	327-3	전	13	13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9	송학동	328-4	답	39	39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0	송학동	329-7	답	2	2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1	송학동	331-37	전	20	20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2	송학동	331-38	전	42	42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3	송학동	331-39	묘	28	28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4	송학동	331-40	전	35	35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5	송학동	331-41	전	16	16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6	송학동	331-42	전	58	58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7	송학동	331-43	묘	2	2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8	송학동	335-12 3	답	264	6	익산시	-	-	-	-
19	송학동	335-12 5	답	267	4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0	송학동	878-94	도	4	4	라송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	-	-

□ 소(국)2-834 (기정)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비고
합 계				1,775	1,675					
1	송학리	320-2	종	14	14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	송학리	320-3	전	205	205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3	송학리	612-13	대	1	1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4	송학리	612-14	도	1	1	익산시	-	-	-	-
5	송학리	613-30	잡	496	495	익산시	-	-	-	-
6	송학리	613-31	잡	79	79	익산시	-	-	-	-
7	송학리	613-35	잡	22	22	익산시	-	-	-	-
8	송학리	613-36	잡	18	18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9	송학리	613-37	잡	61	61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0	송학리	613-38	잡	162	99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1	송학리	613-39	잡	3	3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2	송학리	886-1	도	9	9	국(건설부)	-	-	-	-
13	송학동	610-10	전	178	178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4	송학동	610-13	전	248	212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5	송학동	610-15	전	173	173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6	송학동	610-8	전	78	78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7	송학동	878-92	도	27	27	국(건설부)	-	-	-	-

□ 소(국)2-834 (변경)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합 계				1,775	1,675					
1	송학리	320-2	중	14	14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	송학리	320-3	전	205	205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3	송학리	612-13	대	1	1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4	송학리	612-14	도	1	1	익산시	-	-	-	-
5	송학리	613-30	잡	496	495	익산시	-	-	-	-
6	송학리	613-31	잡	79	79	익산시	-	-	-	-
7	송학리	613-35	잡	22	22	익산시	-	-	-	-
8	송학리	613-36	잡	18	18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9	송학리	613-37	잡	61	61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0	송학리	613-38	잡	162	99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1	송학리	613-39	잡	3	3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2	송학리	886-1	도	9	9	라송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	-	-
13	송학동	610-10	전	178	178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4	송학동	610-13	전	248	212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5	송학동	610-15	전	173	173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6	송학동	610-8	전	78	78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17	송학동	878-92	도	27	27	국(건설부)	-	-	-	-

## □ 소(국)2-835 (변경없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481	481					
1	송학동	326-35	대	129	129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	송학동	326-33	대	19	19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3	송학동	326-34	도	31	31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4	송학동	326-27	대	1	1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5	송학동	326-31	도	4	4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6	송학동	326-32	대	2	2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7	송학동	335-126	답	63	63.0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8	송학동	335-136	답	37	37.0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9	송학동	338-24	도	195	195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108호

##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지정사항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4월 19일

### ■ 고 시 사 항

- ① 사 업 명 :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사업
- ② 사업시행자 : 13개 시·군 지적소관청
  - 군산시장, 익산시장, 정읍시장, 남원시장, 김제시장, 완주군수, 진안군수, 무주군수, 장수군수, 임실군수, 순창군수, 고창군수, 부안군수
- ③ 사업기간 : '24. 4. ~ '25. 12.
- ④ 사 업 위 치 : 붙임 참조
- ⑤ 필지 및 면적 : 13개 시·군, 43개지구, 20,528필지(8,801천㎡)
  - 붙임 참조
- ⑥ 관 리 청 : 전북특별자치도(토지정보과)
- ⑦ 토 지 조 서 : 도보게재 생략
  - 관계서류는 전북특별자치도 토지정보과 및 해당 사업지구 지적소관청에 비치
- ⑧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합니다.
  - 기타 관계서류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비치

##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현황

시·군	사업지구명	위 치	필 지	면 적
13시군	43개 지구		20,528	8,800,742.8
군산시	<b>소 계</b>		<b>1,320</b>	<b>625,711</b>
	옥구상평지구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172-1번지 일원	1,151	544,659
	옥구어은지구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2번지 일원	169	81,052
익산시	<b>소 계</b>		<b>1,561</b>	<b>663,661</b>
	천서지구	익산시 춘포면 천서리 9번지 일원	297	197,346
	다망지구	익산시 함라면 다망리 32-4번지 일원	97	53,513
	와리2지구	익산시 함열읍 와리 201-1번지 일원	923	307,144
	대봉암지구	익산시 옹포면 대봉암리 408-1번지 일원	244	105,658
정읍시	<b>소 계</b>		<b>1,455</b>	<b>433,775</b>
	시기2지구	정읍시 시기동 408-1번지 일원	812	234,390
	시기4지구	정읍시 시기동 9번지 일원	643	199,385
남원시	<b>소 계</b>		<b>3,638</b>	<b>1,356,490.6</b>
	금지2지구	남원시 금지면 입암리 318-1번지 일원	1,281	432,255.7
	효기지구	남원시 이백면 효기리 36-2번지 일원	555	141,179
	수지1지구	남원시 수지면 산정리 112번지 일원	364	115,744
	산내1지구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 69-1번지 일원	771	380,838.8
	태평지구	남원시 산동면 태평리 135-2번지 일원	559	161,629
	노산지구	남원시 대산면 수덕리 836-3번지 일원	108	124,844.1
김제시	<b>소 계</b>		<b>3,062</b>	<b>1,357,068</b>
	요촌5지구	김제시 요촌동 127-1번지 일원	549	165,063
	요촌6지구	김제시 요촌동 203-1번지 일원	587	121,578
	서둔구암지구	김제시 금구면 산동리 160-21번지 일원	813	641,688
	심명규지구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346번지 일원	732	276,863
	용신지구	김제시 신흥동 285-1번지 일원	381	151,876
완주군	<b>소 계</b>		<b>1,040</b>	<b>640,113</b>
	어우지구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270번지 일원	434	215,804
	원신지구	완주군 상관면 신리 250번지 일원	606	424,309
진안군	<b>소 계</b>		<b>1,233</b>	<b>482,198</b>
	능금4지구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 344-1번지 일원	527	232,042
	송풍1지구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820-1번지 일원	706	250,156

시·군	사업지구명	위 치	필 지	면 적
무주군	<b>소 계</b>		<b>1,261</b>	<b>608,366</b>
	상굴암지구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239-1번지 일원	245	132,671
	가정지구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405-2번지 일원	463	208,862
	하평당지구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1031번지 일원	553	266,833
장수군	<b>소 계</b>		<b>1,509</b>	<b>599,400.1</b>
	장계2지구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39번지 일원	657	215,123.1
	두산지구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73-4번지 일원	280	177,994
	금덕지구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65-1번지 일원	572	206,283
임실군	<b>소 계</b>		<b>636</b>	<b>277,086</b>
	방수지구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488번지 일원	434	221,393
	방현지구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169번지 일원	202	55,693
순창군	<b>소 계</b>		<b>1,267</b>	<b>495,345.1</b>
	내동지구	순창군 금과면 내동리 505-1번지 일원	484	203,685
	대가지구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899-1번지 일원	399	166,849.1
	두승지구	순창군 풍산면 두승리 562-5번지 일원	384	124,811
고창군	<b>소 계</b>		<b>1,209</b>	<b>671,016</b>
	공음장동지구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855-4번지 일원	246	123,574
	공음북흥지구	고창군 공음면 덕암리 288-1번지 일원	80	98,006
	공음상평지구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 477-1번지 일원	323	129,297
	평월지구	고창군 신림면 자포리 158-2번지 일원	465	216,725
	용추지구	고창군 신림면 신평리 22번지 일원	95	103,414
부안군	<b>소 계</b>		<b>1,337</b>	<b>590,513</b>
	정금지구	부안군 위도면 정금지 산1번지 일원	62	149,851
	우덕지구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500-2번지 일원	259	94,270
	궁항지구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675-4번지 일원	146	77,086
	동중2지구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113번지 일원	870	269,306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 - 109호

###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40조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19.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항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기정	국도	22호	정읍 ~ 순천	고창군 심원면 공산리 일원	5,039	고창군 심원면 공산리 209-4	고창군 심원면 공산리 211-10	-	0.12
변경					2,705 (감) 2,334				

나.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 현황에 맞도록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정비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라.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시행기간 내
- 열람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공항철도과(063-280-4404)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해양수산과(063-560-2735)

## 2. 접도구역 지정(변경) 사항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22호	노선명	정읍~순천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i> <li>○ 위 치</li> <li>- 기점 : 고창군 심원면 공산리 141-1</li> <li>- 종점 : 고창군 심원면 공산리 산3-2</li> </ul>				
접도구역 지정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li> <li>○ 교통사고 위험방지</li> </ul>				
비 고					

## 3.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 변경 없음

## 4. 도로구역(변경) 및 접도구역(변경)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실음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토지이음(<http://www.eumgo.kr>) 및 전북특별자치도(도로공항철도과)에서 열람 가능

## 【 불 입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연 번	토지 소재지					지적 면적 (㎡)	도로구역 (㎡)			소유자	
	군	면	리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주 소	성 명
합 계(23필지)						16,750	5,039	2,705	감)2,334		
1	고창	심원	공산	209-4	도로	178	178	178	0	-	국(건설부)
2	"	"	"	209-5	도로	207	207	0	감)207	-	국(건설부)
3	"	"	"	209-7	도로	255	255	255	0	-	국(건교부)
4	"	"	"	209-8	도로	332	332	332	0	-	국(건설부)
5	"	"	"	209-9	도로	179	179	179	0	-	국(건설부)
6	"	"	"	210-3	제방	122	122	0	감)122	-	한국농어촌공사
7	"	"	"	210-4	도로	526	526	0	감)526	-	국(건설부)
8	"	"	"	210-6	도로	242	242	242	0	-	국(건설부)
9	"	"	"	210-7	제방	53	53	53	0	-	국(국토부)
10	"	"	"	210-8	도로	23	23	23	0	-	국(건설부)
11	"	"	"	211-1	도로	206	206	0	감)206	-	국(건설부)
12	"	"	"	211-5	제방	213	213	0	감)213	-	한국농어촌공사
13	"	"	"	211-6	도로	179	179	0	감)179	-	국(건설부)
14	"	"	"	211-9	도로	2	2	2	0	-	국(국토부)
15	"	"	"	211-10	도로	88	2	2	0	-	국(건설부)
16	"	"	"	545-1	구거	236	236	0	감)236	-	한국농어촌공사
17	"	"	"	545-6	구거	340	118	118	0	-	국(국토부)
18	"	"	"	545-7	구거	450	450	450	0	-	국(국토부)
19	"	"	"	545-8	구거	35	35	35	0	-	한국농어촌공사
20	"	"	"	677-1	도로	47	47	47	0	-	국(건설부)
21	"	"	"	677-3	도로	838	789	789	0	-	국(건설부)
22	"	"	"	704	도로	11,260	115	0	감)115	-	국(건설부)
23	"	"	"	산34	도로	739	530	0	감)530	-	국(건교부)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 - 110호

##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40조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19.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항

####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기정	지방도	734호	대산 ~ 심원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일원	13,763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845-4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산103-4	-	0.54
변경					14,665 (증) 902				

#### 나.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창 옥산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

다.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4. 4. 19.~2026. 12. 31.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 마.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시행기간 내
- 열람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공항철도과(063-280-4404)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063-290-6737)

## 2. 접도구역 지정(변경) 사항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번호	734호	노선명	대산~심원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i> <li>○ 위 치</li> <li>- 기점 :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845-4</li> <li>- 종점 :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산103-4</li> </ul>				
접도구역 지정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li> <li>○ 교통사고 위험방지</li> </ul>				
비 고					

## 3.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 가.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지734A	10	보조 간선 도로	542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845-4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산103-4	일반 도로	-	-	지방도 734호
변경	소로	1	지734A	10	보조 간선 도로	542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845-4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산103-4	일반 도로	-	-	

### 나.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1-지734A 호선	소로 1-지734A 호선	○ 일부구간 선형 변경 - 연장: 542m	○ 고창 옥산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따른 일부구간 선형 변경

## 4. 도로구역(변경) 및 접도구역(변경)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실음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토지이음(<http://www.ungok.kr>) 및 전북특별자치도(도로공항공정)에서 열람 가능

## 【 불 입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연번	토지 소재지					지적 면적 (㎡)	도로구역 (㎡)			소유자	
	군	면	리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주 소	성 명
합 계						24,060	13,763	14,665	증) 902		
1	고창	부안	선운	708	도	142	142	142	-	-	전라북도
2	"	"	"	713-2	답	549	-	29	29	고창군 부안면 북분자로 893	전형기
3	"	"	"	715	전	527	-	48	48	고창군 부안면 북분자로 893	전형기
4	"	"	"	715-1	도	780	780	780	-	-	전라북도
5	"	"	"	715-2	도	59	-	17	1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6	"	"	"	716	임	981	-	469	46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길 38-3, 102동 1504호	유화진
7	"	"	"	716-1	도	4,093	4,093	4,093	-	-	전라북도
8	"	"	"	716-2	구	98	-	8	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9	"	"	"	720-3	답	227	-	159	159	고창군 고창읍 석교리 10-8 성산현대아파트 102-1605	은예리
10	"	"	"	720-11	답	379	-	15	15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39-6	오맹환
11	"	"	"	721	잡	577	-	33	33	고창군 흥덕면 후포리 457	후포어촌계 외 1인
12	"	"	"	721-7	답	947	-	115	115	고창군 흥덕면 후포리 457	후포어촌계 외 1인
13	"	"	"	758	도	902	-	9	9	-	국(건설부)
14	"	"	"	758-1	도	39	39	39	-	-	국(건설부)
15	"	"	"	758-3	도	666	491	491	-	-	국(건설부)
16	"	"	"	765-1	도	313	298	298	-	-	국(건설부)
17	"	"	"	765-2	도	269	63	63	-	-	국(건설부)
18	"	"	"	765-5	도	133	133	133	-	-	국(건설부)
19	"	"	"	822-1	도	600	600	600	-	-	국(건설부)
20	"	"	"	832-1	도	401	401	401	-	-	국(건설부)
21	"	"	"	839-1	도	69	69	69	-	-	국(건설부)
22	"	"	"	839-3	도	354	354	354	-	-	국(건설부)
23	"	"	"	839-4	도	23	23	23	-	-	국(건설부)
24	"	"	"	845-3	도	2,021	207	207	-	-	전라북도
25	"	"	"	845-4	도	426	306	306	-	-	전라북도
26	"	"	"	846-1	도	614	109	109	-	-	국(건설부)
27	"	"	"	847-1	도	105	105	105	-	-	전라북도
28	"	"	"	847-3	도	32	32	32	-	-	전라북도
29	"	"	"	848-1	도	71	71	71	-	-	국(건설부)
30	"	"	"	산103-4	도	7,663	5,447	5,447	-	-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 - 111호

##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40조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19.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항

####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 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기정	국도	37호	거창 ~ 파주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일원	13,909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산248-3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2060	-	0.39
변경					18,844 (증 4,935)				

#### 나.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위임국도 37호 무주 두길1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

다.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4. 5. 1.~2026. 12. 31.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 마.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시행기간 내
- 열람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공항철도과(063-280-4404)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063-290-6738)

## 2. 접도구역 지정(변경) 사항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37호	노선명	거창~과주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i> <li>○ 위 치</li> <li>- 기점 :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산248-3 일원</li> <li>- 종점 :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2060 일원</li> </ul>				
접도구역 지정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li> <li>○ 교통사고 위험방지</li> </ul>				
비 고					

## 3.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 가.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5	8	보조 간선 도로	389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산248-3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2060	일반 도로	-	-	국도 37호
변경	소로	2	15	8~11	보조 간선 도로	389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산248-3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2060	일반 도로	-	-	

### 나.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15호선	소로 2-15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구간 선형 변경</li> <li>- 연장: 389m, B=8~11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 두길1지구 위험도로 개선 사업에 따른 일부구간 선형 변경</li> </ul>

## 4. 도로구역(변경) 및 접도구역(변경)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실음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토지이음(<http://www.ungok.kr>) 및 전북특별자치도(도로공항공철도)에서 열람 가능

## 【 불 입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연번	토지 소재지					지적 면적 (㎡)	도로구역 (㎡)			소유자	
	군	면	리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주 소	성 명
합 계						314,091	13,909	18,844	증)4,985		
1	무주	설천	두길	2146-1	도	698	592	592	-	-	전라북도
2	"	"	"	산248-7	도	1,274	1,274	1,274	-	-	국(국토부)
3	"	"	"	산248-3	임	16,860	5,219	5,219	-	-	국(환경부)
4	"	"	"	산248	임	280,875	-	3,289	증)3,289	-	국(환경부)
5	"	"	"	2143	전	734	-	209	증)209	두길리 1838	박이하
6	"	"	"	산313	도	2,066	530	530	-	-	국(농림부)
7	"	"	"	산234	임	2,777	2,777	2,777	-	-	전라북도
8	"	"	"	2142	전	717	-	616	증)616	두길리 1820	장이순
9	"	"	"	2142-1	도	337	337	337	-	-	전라북도
10	"	"	"	2144	임	532	-	257	증)257	두길리 1748	김운수
11	"	"	"	2144-1	임	17	17	17	-	두길리 1748	김운수
12	"	"	"	2068-1	도	86	86	86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707 럭키아파트 2동 202호	이상도
13	"	"	"	2066	전	1,610	-	20	증)20	-	국(환경부)
14	"	"	"	2068	답	820	-	211	증)211	-	국(환경부)
15	"	"	"	2397	도	1,845	610	696	증)86	-	국(국토부)
16	"	"	"	2073-1	도	453	453	453	-	대구부 대화정 204	이가부
17	"	"	"	2073-2	답	69	-	69	증)69	-	국(국토부)
18	"	"	"	2069-2	도	17	17	17	-	-	무주군
19	"	"	"	2073-3	도	605	605	605	-	-	무주군
20	"	"	"	2069	답	278	-	178	증)178	-	국(환경부)
21	"	"	"	2071-1	도	109	109	109	-	두길리 1695	최병철
22	"	"	"	2069-1	도	36	36	36	-	두길리 1695	최병철
23	"	"	"	2071-2	도	526	526	526	-	-	전라북도
24	"	"	"	산248-2	임	99	99	99	-	-	국(환경부)
25	"	"	"	2061-1	도	46	38	38	-	-	전라북도
26	"	"	"	2060	답	76	55	55	-	무주군 무주읍 단천로 111	황순일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8, 104동 805호(오룡마을)	황은옥
										대구광역시 동구 금강로21길 30, 106동 702호	황순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69, 102동 301호	황정애
27	"	"	"	2074	도	195	195	195	-	무주군 무주읍 단천로 111	황순일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8, 104동 805호(오룡마을)	황은옥
										대구광역시 동구 금강로21길 30, 106동 702호	황순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69, 102동 301호	황정애
28	"	"	"	2103	도	334	334	334	-	-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32호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4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규칙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육대상자인 영유아의 연령기준 개정(안 제8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협의 : 기업애로해소지원단(규제심사), 감사위원회(부패영향평가), 인권담당관(인권영향평가), 여성가족과(성별영향평가), 예산과(재정부담), 법무행정과(법제)

라. 입법예고 : 2024. 4. 19.(금) ~ 5. 9.(목)(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4968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 총무과(전화 : 063-280-2247, FAX : 063-280-234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총무과 총무팀(063-280-224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전북특별자치도 규칙 제 호

###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만 5세”를 “7세”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관계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이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미첨부 사유**

- 본 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미함

**3. 작성자**

- 전북특별자치도 총무과 지방행정주사 송예진(063-280-2247)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33호

##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4월 19일

### 1. 개정이유

- 가. 신청 조사 처리 과정의 기한 명시와 결정문 작성 범위 적시 및 이의신청 기간 단축로 조사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향상하고자 함
- 나. 조사 관련자의 방어권 보장 및 조사·심의 과정의 현실화를 통해 신청 조사업무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신청서 재보완 요청 기한 구체적 명시(제7조의 제2항)
- 나. 결정문 작성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다. 이의신청의 대상 정정, 이의신청 주체(피신청인) 추가, 접수 기한 축소(제14조의 제1항)
- 라. 인권위원회 근거 조항 정정 및 이의신청에 대해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얻도록 한 것을 심의로 개정(제14조의 제2항)
- 마. 별지 제7호 서식 결정통지서의 이의신청 가능 기간 수정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예산과 협의(비용추계서 첨부)
- 다. 협 의 : 법무행정과(규제심사), 인권담당관(인권영향평가), 여성가족과(성별영향평가), 감사위원회 사무국(부패영향평가), 예산과(재정부담)
- 라. 입법예고 : 2024. 4. 19.(금) ~ 5. 9.(목)(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권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 인권담당관 (전화: 063-280-3158, FAX: 063-280-205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직접 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063-280-315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붙임**

전북특별자치도 규칙 제 호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응하지”를 “15일 이내에 응하지”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전북특별자치도인권위원회 결정문 작성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인권위원회는 신청사건에 관하여 조례 제27조제1항부터 제2항과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각하 또는 기각을 하면서 결정문 작성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와 조례 제17조제2항의 권고(의견표명)을 의결한 경우에는 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고, 공표는 결정통보가 있는 때로부터 일년 후에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1항 중 “신청인 또는”을 “신청인, 피신청인 및”으로, “조사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인권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을 “14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를 “제14조”로, “자문을 얻어”를 “심의를 거쳐”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결정통지서의 “30일 이내”를 “14일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 ① (생략)</p> <p>② 신청인이 제1항 후단에 따른 재보완요구에 <u>응하지 않을</u> 경우, 센터장은 해당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p> <p>&lt;신설&gt;</p> <p>제14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이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통보 받거나 <u>신청인 또는 관련 기관이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u>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u>30일</u>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p>	<p>제7조(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15일 이내</u>에 응하지 ----- ----- -----.</p> <p>제13조의2(전북특별자치도인권위원회 결정문 작성 등) ① <u>전북특별자치도인권위원회는 신청사건에 관하여 조례 제27조제1항부터 제2항과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각하 또는 기각을 하면서 결정문 작성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와 조례 제17조제2항의 권고(의견표명)을 의결한 경우에는 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u></p> <p>② <u>전북특별자치도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고, 공표는 결정통보가 있는 때로부터 일년 후에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14조(이의신청) ① ----- ----- <u>신청인, 피신청인 및</u> ----- <u>전북특별자치도인권위원회의 결정</u>----- ----- <u>14일</u> -----</p>

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센터장은 3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하고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그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

-.

② -----

-----

----- 제14조 -----

----- 심의를 거쳐 -----

-----

-----.

[별지 제7호서식] &lt;개정 2024. 1. 12.&gt;

결 정 통 지 서		
사건번호 (접수번호)		
사건명		
결정통지 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신청인 <input type="checkbox"/> 조사대상기관장	
	성 명	주 소
결정내용	<input type="checkbox"/> 각하결정 <input type="checkbox"/> 기각결정 <input type="checkbox"/> 시정권고결정	
결정이유		
<p>「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전북특별자치도지사</b></p>		
<p>※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센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p> <p>※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 :</p>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함.

4. 작성자

○ 인권담당관 행정6급 김선아(063-280-4336)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746호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04월 19일

■ 공 고 사 항

- ① 등록번호 : 제2000-1-전라북도-141호
- ② 단체명칭 :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진안군연합회
- ③ 대 표 자
  - 성 명 : 이형재
  - 생년월일 : 1977년 04월 15일
- ④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임진로 1553-22
- ⑤ 주된사업 :
  - 농업인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영농생산기술 보급과 교류
  - 농림축산물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와 상담
  - 농업인의 여론조사와 건전한 정책건의
- ⑥ 변경내용
  - 대 표 자 : (당초) 황인준 → (변경) 이형재
- ⑦ 허가(변경)일자 : 2024. 04. 11.

※ ※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정협력팀 김은혜(280-2614)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750호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04월 19일

■ 공 고 사 항

- ① 등록번호 : 제2000-1-전라북도-132호
- ② 단체명칭 :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 ③ 대 표 자
  - 성 명 : 이훈구
  - 생년월일 : 1960년 10월 13일
- ④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천면 구재길 119-5
- ⑤ 주된사업 :
  - 농업인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영농생산기술 보급과 교류
  - 농림축산물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와 상담
  - 농업인의 여론조사와 건전한 정책건의
- ⑥ 변경내용
  - 대 표 자 : (당초) 노창득 → (변경) 이훈구
- ⑦ 허가(변경)일자 : 2024. 04. 11.

※ ※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정협력팀 김은혜(280-2614)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754호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04월 19일

■ 공 고 사 항

- ① 등록번호 : 제2000-1-전라북도-134호
- ② 단체명칭 :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주시연합회
- ③ 대 표 자
  - 성 명 : 이영일
  - 생년월일 : 1970년 03월 08일
- ④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덕진구 완주로 55 (농협주유소2층)
- ⑤ 주된사업 :
  - 농업인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영농생산기술 보급과 교류
  - 농림축산물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와 상담
  - 농업인의 여론조사와 건전한 정책건의
- ⑥ 변경내용
  - 대 표 자 : (당초) 김길섭 → (변경) 이영일
- ⑦ 허가(변경)일자 : 2024. 04. 12.

※ ※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정협력팀 김은혜(280-2614)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755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4월 19일

■ 공 고 사 항

- ① 등록번호 : 제2022-1-전라북도-9호
- ② 단체명칭 : 전북특별자치도시니어체육협의회
- ③ 대 표 자
  - 성 명 : 김 문 철
  - 생 년 월 일 : 1936. 10. 19.
- ④ 변 경 일 : 2024. 4. 12.
- ⑤ 주된사업
  - 전북 노인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 각 가맹단체와 자치단체 노인체육협의회 관리 및 지원
  - 노인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대회 개최 지원
  - 노인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방 노인체육의 육성 및 보급
  - 노인선수 및 지도자 육성
  - 노인체육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
  - 전북 노인체육정책 실현 및 관계기관의 건의·자문 등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757호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04월 19일

■ 공 고 사 항

- ① 등록번호 : 제2000-1-전라북도-136호
- ② 단체명칭 :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익산시연합회
- ③ 대 표 자
  - 성 명 : 서상원
  - 생년월일 : 1970년 09월 10일
- ④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농어민회관2호관 1층)
- ⑤ 주된사업 :
  - 농업인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영농생산기술 보급과 교류
  - 농림축산물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와 상담
  - 농업인의 여론조사와 건전한 정책건의
- ⑥ 변경내용
  - 대 표 자 : (당초) 김구태 → (변경) 서상원
- ⑦ 허가(변경)일자 : 2024. 04. 12.

※ ※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정협력팀 김은혜(280-2614)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 - 775호

## 도로공사 시행(변경) 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 선 명	지방도 702호선
도로공사의 종류	회전교차로 1개소 설치(내접원 지름 36m)		
도로공사 구간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275-5번지 일원		
도로공사 시행장소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275-5번지 일원		
도로공사 착공 예정일	2022. 10. 11.	도로공사 준공 예정일	당초 : 2024. 12. 31. 변경 : 2025. 12. 31.
도로공사 목적 및 사유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제1공구) 관련 고속도로 진출입 도로와 연결되는 지방도 702호선 접속부를 회전교차로로 개선 * (변경사유) 회전교차로 편입용지 협의매수 어려움으로 수용절차 등을위한 공사기간 연장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786호

###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동법 제4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4월 19일

■ 공 고 사 항

- ① 등록번호 : 제 2000-1-전북특별자치도-7 호
- ② 단체명칭 : 전주가정상상담센터
- ③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노송광장로 7, 6층 601호
- ④ 대표자 : 광 영 신
- ⑤ 주된사업
  - 법률상담, 화해조정 등 법률서비스 제공 및 연계
  - 가정문제 및 여성문제, 청소년문제 등에 관한 상담
  - 가정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예방사업 계획 및 추진
- ⑥ 변경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신 유 순	광 영 신	

- ⑦ 허가(변경)일자 : 2024. 4. 16.

※ 기타 문의사항은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 김미옥 주무관(280-2816)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787호

###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시정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로 시정명령(행정처분)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1. 행정처분 내역

업체명 (대표자)	건설업종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일)	처분근거
(유)아성종합건설 (양봉*)	건축공사업 (06-027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매너머1길 13	시정명령 (자료제출)	건설업 실태조사 서류 미제출 (기술능력) (24.4.16)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주)씨제이엠종합건설 (고철*)	건축공사업 (14-054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진포로 78, 403호			
선호종합건설(주) (정묘*)	건축공사업 (14-0639)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당산강변로 224 , 제지1층 101호			
(주)해린종합건설 (김진*)	건축공사업 (05-097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진포로 146, 102호			
(주)청암종합건설 (유병*)	건축공사업 (01-033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54 2층 201호	시정명령 (자료제출)	건설업 실태조사 서류 미제출 (자본금) (24.4.16)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주)창주메이크종합건설 (신성*)	건축공사업 (01-281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안7길 1, 502호 (미장동)			
(주)원린종합건설 (정상*)	건축공사업 (01-495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4길 13-16, 2호 2층			
(주)정상건설 (김승*)	건축공사업 (10-295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천장로 227-51, 2층 202호			

업체명 (대표자)	건설업종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일)	처분근거
(주)보창 (주영*)	건축공사업 (14-054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박전길 23	시정명령 (자료제출)	건설업 실태조사 서류 미제출 (자본금) (24.4.16)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유)아성종합건설 (양봉*)	건축공사업 (06-027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매너머1길 13 (중화산동2가)			
(주)미가건설 (이현*)	토목건축공사업 (02-0378)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6로 59, 2층			
주식회사해인산업 (김중*)	건축공사업 (03-060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중인1길 24, 2층			
(주)씨제이엠종합건설 (고철*)	건축공사업 (14-054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진포로 78, 403호			
선호종합건설(주) (정묘*)	건축공사업 (14-0639)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당산강변로 224 , 미래드림2차 아파트 제지1층 101호			
세한건설주식회사 (박정*)	토목건축공사업 (05-015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기지로 36, 5층 507호			
(주)해린종합건설 (김진*)	건축공사업 (05-097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진포로 146, 102호			
(주)송호종합건설 (김용*)	건축공사업 (14-066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95, 303호			
(주)전원건설 (정덕*)	토목건축공사업 (14-0227)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성산1길 8, 1층			
(주)동촌건설 (김정*)	토목건축공사업 (23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302, 4층			
(주)티에이치토건 (박만*)	건축공사업 (14-060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건현왕궁로 63, 2층			
(유)신호건설산업 (강진*)	토목건축공사업 (14-012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7로 22, 403호			
(유)남경종합건설 (정준*)	토목건축공사업 (14-023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틀못4길 31, 501호			
(유)청해건설 (이병*)	건축공사업 (14-019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원동로 167-1			

업체명 (대표자)	건설업종	영업소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일)	처분근거
(유)한을건설 (권영*)	건축공사업 (14-023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1길 17, 127	시정명령 (자료제출)	건설업 실태조사 서류 미제출 (자본금) (24.4.16)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유)테라건설 (고원*)	토목공사업 (14-047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구이로 1026			
주식회사지현건설 (황현*)	건축공사업 (14-070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 1133, 6층			

2. 공시공고기간 : 2024. 4. 19. ~ 5. 24. (40일간)

3. 공시송달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정책과에 방문 후 관련 자료를 수령하여 건설업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를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 내 실태조사(기술능력)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호(영업정지 등), 제83조제8의2호(등록말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지역정책과(☎063-280-4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802호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9회 임시회에 제출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9회 임시회에 제출할 조례안을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4월 19일

연번	조례안명	소관부서 (담당자)
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강혜선(063-280-3248)
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추진단 자치제도과 정지은(063-280-2784)
3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감찰과 고광표(063-280-3705)

※ 문의처 :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 등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 4.  
제 출 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비전구현과 특례 추진을 위한 기구 신설 및 조직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기 구

- 1) 본 청 : 3실·10국·1본부 66관·과·단 269팀 → 270팀(+1팀 소방본부)
- 2) 의 회 : 4담당관 9전문위원(변동없음)
- 3) 직 속 : 3원 15서 1관 → +1팀(농업기술원)
- 4) 사업소 : 11사업소(변동없음)
- 5) 합의제행정기관 : 2국 2과(감사위원회 1사무국)(변동없음)

##### 나. 정 원

- 1) 전북특별자치도 정원의 총수 및 정원변동 내역(안 제81조)

- 가) 정원의 총수 : 5,502명 → 5,493명, △9명
- 나) 정원변동 내역

구 분	현 행	개정안	증 감	비 고
정원의 총수	5,502명	5,493명	△9명	
집행기관의 정원	1,862명	1,853명	△9명	
본청·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456명	3,456명	-	
의회사무처의 정원	123명	123명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61명	61명	-	

#### 2)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7)

- 가) 정무직 총계 : 4명 → 4명(변동없음)
- 나) 별정직 총계 : 14명 → 14명(변동없음)
  - 1급 상당 : 1명 → 1명(변동없음)

· 4급 상당	: 7명 → 7명(변동없음)
· 5급 상당 이하	: 6명 → 6명(변동없음)
다) 일반직공무원 총계	: 1,803명 → 1,794명(△9명)
· 2급·3급	: 3명 → 3명(변동없음)
· 3급	: 11명 → 11명(변동없음)
· 3급·4급	: 2명 → 2명(변동없음)
· 4급	: 80명 → 80명(변동없음)
· 5급 이하 소계	: 1,698명 → 1,689명(△9명)
· 전문경력관 소계	: 9명 → 9명(변동없음)
라) 연구직 총계	: 199명 → 199명(변동없음)
· 연구관	: 38명 → 38명(변동없음)
· 연구사	: 161명 → 161명(변동없음)
마) 지도직 총계	: 26명 → 26명(변동없음)
· 지도관	: 7명 → 7명(변동없음)
· 지도사	: 19명 → 19명(변동없음)
바) 소방공무원 총계	: 3,456명 → 3,456명(변동없음)
· 소방정 총계	: 22명 → 22명(변동없음)
· 소방령 이하	: 3,434 → 3,434명(변동없음)

#### 다. 주요 변경내용

##### 1) 특례 추진을 위한 기구 신설 및 명칭변경

- 가) (농생명산업) 농생명지구육성팀 및 펫산업팀 신설(안 제16조)
- 나) (문화관광) 산악관광팀, 환경영향평가팀 신설(안 제10조, 안 제12조)
- 다) (고령친화) 노인복지과→고령친화정책과 명칭 변경(안 제11조)
- 라) (미래첨단) 바이오방위산업과, 바이오정책팀 신설(안 제15조)
- 마) (외국인정착) 외국인국제정책과, 외국인국제정책팀 신설(안 제17조의2)
- 바) 특례를 반영한 국, 과, 팀 등 명칭 변경

##### 2) 조직의 생산성·효율성 제고

- 가) 디지털산업과, 디지털정책팀 신설(안 제15조)
- 나) 기업인력양성팀, 통계분석팀, 도시녹지팀, 공공건축팀 신설 등
- 다) 산단관리팀, 의약관리팀, 장애인자립지원팀 신설 등

##### 3)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85조 삭제)

- 가) 새만금해양수산국(자율기구) 정식기구화

4) 소방본부 기구 설치 및 사무 조정(안 제14조)

가) 예방안전과 현장조사분석팀 → 119대응과 화재조사팀으로 변경

나) 예방안전과 안전문화홍보팀 신설

5) 직속기관 및 사업소 기능재편

가) 농업기술원 약용자원연구소 → 자원식물연구소, 허브산채시험장 → 고령  
지작물시험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22조)

나) 서울본부 → 중앙협력본부로 명칭 변경(안 제3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협의 :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인권담당관, 예산과, 여성가족과, 감사위원회  
사무국, 법무행정과

라. 입법예고 : 2024. 4. 5. ~ 2024. 4. 9.(4일간)

4.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교육소통협력국”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기업유치지원실·기획조정실·도민안전실·특별자치도추진단·자치행정국·문화체육관광국·복지여성보건국·환경녹지국·건설교통국·미래산업국·농생명축산식품국·교육소통협력국·새만금해양수산물국·소방본부”를 “기업유치지원실·기획조정실·도민안전실·자치행정국·문화체육관광국·복지여성보건국·환경산림국·건설교통국·미래첨단산업국·농생명축산산업국·특별자치교육협력국·대외국제소통국·새만금해양수산물국·소방본부”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기업유치·외자유치·새만금투자유치·산단조성관리·유치기업지원”을 “지역경제·일자리정책·소상공인·지역상권·노사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업현장지원·규제혁신·마케팅통상지원”을 “기업유치·외자유치·새만금투자유치·산단조성·산단관리·유치기업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민생경제정책·일자리취업지원·소상공인·지역상권·노사협력”을 “기업현장지원·기업인력양성·마케팅통상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금융산업·금융타운조성·사회적경제정책·사회적경제육성”을 “금융산업·금융인프라조성·사회적경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창업정책·창업촉진·기술혁신지원”을 “창업정책·창업촉진·펀드투자”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정책개발·조직관리·국가예산·균형발전·성과평가통계”를 “정책개발·조직관리·국가예산·균형발전·성과평가·통계분석”으로 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제1호 중 “총무·인사·공무원채용·공무원노사·기록관리”를 “행정·자치지원·민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관광정책·관광산업·관광자원개발·관광마케팅·마이스산업”을 “관광정책·관광산업·관광자원개발·관광마케팅·마이스산업·산악관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유산정책·문화유산보존·종무·가야백제”를 “유산정

책·유산보존·종무·유산자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복지정책·저소득지원·자활사회서비스·보육정책·보훈복지”를 “복지정책·사회서비스·생활보장·보육정책·보훈복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건정책·공공의료·의약응급의료”를 “보건정책·공공의료·응급의료·의약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노인정책·노인복지·노인시설안전”을 “고령친화정책·고령친화복지·고령친화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장애인정책·장애인권익·장애인시설안전”을 “장애인정책·장애인자립지원·장애인권익·장애인시설안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건강정책·출산지원·정신건강·식품위생”을 “건강정책·출산지원·마음건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감염병정책·감염병예방·감염병대응”을 “감염병정책·감염병예방·감염병대응·식품위생”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환경녹지국)”을“(환경산림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탄소중립정책·기후변화대응·자원순환·생태자원”을 “탄소중립·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대응·자원순환·생태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환경보전·생활환경·미세먼지대응·환경관리”를 “환경보전·생활환경·미세먼지대응·환경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산림정책·숲문화·산림보호·산림경영”을 “산림정책·산림휴양문화·산림보호·산림경영·도시녹지”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건설정책·도시계획·지역발전·혁신도시·건설수주”를 “건설정책·도시계획·지역개발·혁신도시·건설수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건축정책·주거복지·건축안전·공공디자인·도시재생”을 “건축정책·주거복지·건축안전·공공디자인·도시재생·공공건축”으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대응총괄·구조·구급”을 “대응총괄·구조·구급·화재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예방총괄·현장조사분석·소방안전조사”를 “예방총괄·안전문화홍보·소방안전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119소방종합상황실”을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제15조의 제목“(미래산업국)”을“(미래첨단산업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산업국장”을 “미래첨단산업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미래산업기획·과학기술·이차전지반도체·ICT산업기반·디지털융합”을 “미래산업기획·과학기술·이차전지반도체·탄소소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동차산업·조선산업·뿌리기계·항공해양산업”을 “자동차산업·뿌리기계·조선항공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탄소정책·탄소소재산업·방위산업·바이오헬스산업·바이오융합산업”을 “바이오정책·바이오헬스산업·바이오융합산업·방위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디지털정책·ICT산업기반·인공지능융합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 “(농생명축산식품국)”을 “(농생명축산산업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농정기획·농정협력·여성청년농업인·농지관리·농업기반”을 “농생명정책·농생명지구육성·협치농정·여성청년농업인·농지·농민소득안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촌활력·귀농귀촌·농촌융복합·농촌개발”을 “농촌사회활력·귀농귀촌·농촌경제·농촌재생·농업기반”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친환경농업·농산물유통·식량산업·스마트윈에·농자재종자·농민소득안정”을 “친환경농업·유통정책·식량산업·스마트윈에·농자재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농생명기획·식품클러스터·농식품마케팅·로컬푸드”를 “농식품기획·푸드테크·농식품마케팅·먹거리정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방역정책·질병관리·축산물위생·동물복지”를 “방역정책·질병관리·축산물위생·동물복지·펫산업”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교육소통협력국)”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소통협력국장”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교육협력·대학협력·청소년·평생교육”을 “특별자치도기획·입법실행·특례정책·사회홍보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무기획·의정협력·민간지원·국제외국인정책·국제협력”을 “자치제도·규제혁신·제도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소통기획·디지털소통·미디어소통·도민소통”을 “교육협력·대학협력·청소년·평생교육”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대외국제소통국) 대외국제소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1. 정무기획·의정협력·민간지원·고향사랑기부에 관한 사항
- 2. 외국인국제정책·외국인지원·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3. 소통기획·디지털소통·미디어소통·직소민원에 관한 사항

제18조제1호 중 “새만금기획·새만금개발지원·새만금관광홍보”를 “새만금기획·새만금개발지원·새만금수질개선·새만금유역관리”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약용자원연구소”를 “자원식물연구소”로, “허브산채시험장”을 “고랭지작물시험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전라북도119안전체험관”을 “전북특별자치도119안전체험관”으로 한다.

제4장제1절의 제목 “전라북도서울본부”를 “전북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전라북도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를 “전북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이하 “중앙협력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본부”를 “중앙협력본

부”로 한다.

제37조 중 “서울본부”를 “중앙협력본부”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본부장”을 “중앙협력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회·정당”을 “국회·정당·언론”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서울·세종지역”을 “수도권·세종지역”으로 한다.

제39조 중 “서울본부”를 “중앙협력본부”로 한다.

제4장제5절의 제목 “산림환경연구소”를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전북특별자치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산림환경연구소”)를 “전북특별자치도산림환경연구원(이하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환경연구소”를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54조 중 “산림환경연구소”를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하고, 제55조 중 “산림환경연구소”를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502명”을 “5,49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862명”을 “1,853명”으로 한다.

제7장(제85조)을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6,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감사관·대변인·인권담당관”을 “대변인·행정지원관·인권담당관”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특별자치도추진단”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으로 하며, 제3조제2항제2호다목 중 “교육소통협력국”을 “대외국제소통국”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2호마목 중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감사위원회”로 하며,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농생명축산식품국·복지여성보건국·환경녹지국”을 “농생명축산산업국·복지여성보건국·환경산림국”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3호다목 중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를 “전북여성가족재단”으로 하며, 제3조제2항제4호가목 중 “기업유치지원실·미래산업국”을 “기업유치지원실·미래첨단산업국”으로 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운영수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을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으로 한다.

(3)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을 “기업애로해소지원과장”으로 한다.

(4)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환경녹지국장,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환경산림국장,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한다.

(5) 「전북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별지별표서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중 “정보화총괄과”를 “행정정보과”로 하고 “국제협력과”를 “외국인국제정책과”로 하며 “안전정책관”을 “안전정책과”로 하고 “지역정책과”를 “건설정책과”로 하며 “문화예술과”를 “문화산업과”로 하고 “농업정책과”를 “농생명정책과”로 하며 “신재생에너지과”를 “청정에너지산업과”로 하고 “물환경관리과”를 “물통합관리과”로 하며 “환경보전과”를 “탄소중립정책과”로 하고 “기업지원과”를 “기업애로해소지원과”로 하며 “공항하천과”를 “도로공항철도과”로 하고 “도로교통과”를 “교통정책과”로 하며 “해양수산정책과”를 “해양항만과”로 하고 “투자금융과”를 “금융사회적경제과”로 하며 “방호예방과”를 “예방안전과”로 하고 “문화유산과”를 “유산관리과”로 하며 “산림녹지과”를 “산림자원과”로 한다. 별표5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관”으로 한다. 별표6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관”으로 한다. 별표7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관”으로 하고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정책과”로 하며 “환경보전과”를 “탄소중립정책과”로 하고 “안전정책관”을 “안전정책과”로 하며 “정보화총괄과”를 “행정정보과”로 하고 “신재생에너지과”를 “청정에너지산업과”로 하며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하고 “공항하천과”를 “도로공항철도과”로 하며 “정무기획과”를 “대외협력과”로 하고 “구조구급과”를 “119대응과”로 한다. 별표8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관”으로 하고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정책과”로 하며 “환경보전과”를 “탄소중립정책과”로 하고 “안전정책관”을 “안전정책과”로 하며 “정보화총괄과”를 “행정정보과”로 하고 “신재생에너지과”를 “청정에너지산업과”로 하며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하고 “도로교통과”를 “교통정책과”로 하며 “정무기획과”를 “대외협력과”로 하고 “구조구급과”를 “119대응과”로 한다.

(6) 「전북특별자치도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관”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관”으로 한다. 별지 1호서식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관”으로 한다.

(7) 「전북특별자치도청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관”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

관”으로 한다.

(8) 「전북특별자치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조정실장·기업유치지원실장·환경녹지국장·새만금해양수산국장·농생명축산식품국장·건설교통국장”을 “기획조정실장·기업유치지원실장·환경산림국장·새만금해양수산국장·농생명축산산업국장·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9) 「전북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10)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중 “노인복지과장”을 “고령친화정책과장”으로 한다.

(11)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노인복지과장”을 “고령친화정책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2호 중 “노인복지과장”을 “고령친화정책과장”으로 한다.

(12)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과”를 “장애인복지정책과”로 한다.

(13)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농생명축산식품국장·환경녹지국장·문화체육관광국장·건설교통국장”을 “기획조정실장·농생명축산산업국장·환경산림국장·문화체육관광국장·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14)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환경녹지국장·건설교통국장·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환경산림국장·건설교통국장·농생명축산산업국”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기후환경정책과장”을 “탄소중립정책과장”으로 한다.

(15)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

(16) 「전북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

(17)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

(18)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

(19) 「전북특별자치도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

(20)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한

다.

(21) 「전북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자원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제5호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하며 제7조제3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자원과장”으로 한다.

(22)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지역정책과장”을 “건설정책과장”으로 한다.

(23)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지역정책과장”을 “건설정책과장”으로 한다.

(24) 「전북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환경녹지국장,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환경산림국장,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항만하천과장”을 “해양항만과장”으로 한다.

(25)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미래산업국장, 농생명축산식품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녹지국장”을 “미래첨단산업국장,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산림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미래산업과장”을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으로 하며 제14조 중 “미래산업과”를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으로 한다.

(26) 「전북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미래산업과장”을 “디지털산업과장”으로 한다.

(27)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미래산업국장”을 “미래첨단산업국장”으로 한다.

(28) 「전북특별자치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미래산업국장”을 “미래첨단산업국장”으로 한다.

(29)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한다. 별표1 중 “농업정책과”를 “농생명정책과”로 하고 “농촌활력과”를 “농촌사회활력과”로 하며 “농촌활력과장”을 “농촌사회활력과장”으로 하고 “농산유통과”를 “스마트농산과”로 하며 “농산유통과장”을 “스마트농산과장”으로 하고 “농생명식품과”를 “농식품산업과”로 하고 “농생명식품과장”을 “농식품산업과장”으로 한다.

(30) 「전북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한다.

(31)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한다.

(32)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한다.

(33)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한다.

(34) 「전북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한다.

(35)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한다.

(36)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소통협력국장”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으로 한다.

(37)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소통협력국장”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으로 한다.

(38)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산림녹지과장, 기후환경정책과장, 관광산업과장, 지역정책과장”을 “산림자원과장, 탄소중립정책과장, 관광산업과장, 건설정책과장”으로 한다.

(39) 「전북특별자치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하고 “약용자원연구소장”을 “자원식물연구소장”으로 한다.

(4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운영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제6조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제20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제44조제5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제45조제3항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제50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한다.

(41)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한다.

(42)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전북특별자치도산림환경연구소”를 “전북특별자치도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한다.

(43)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중 “전북특별자치도산림환경연구소”를 “전북특별자치도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한다.

(44)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전북특별자치도산림환경연구소”를 “전북특별자치도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1] &lt;개정 2019. 1. 2., 2023. 12. 8.&gt;

## 특화작목연구소·종자사업소 등의 명칭 및 위치(제22조 관련)

명 칭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자원식물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임진로 2770
" 고령지작물시험장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운봉읍 행정공안길 108
과채류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천수길 92-32
" 수박시험장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대산면 장자산로 768
종자사업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하나로15길 179-25
" 잠사곤충시험장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참뽕로 312

[별표 3] &lt;개정 2019. 6. 21., 2022. 10. 21., 2023. 12. 8.&gt;

## 동물위생관련 지소 등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47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노하숲길 18-4	전주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일원
" 북부지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하나로 15길 149	군산시·익산시·김제시 일원
" 서부지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800	정읍시·고창군·부안군 일원
" 남부지소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요천로 1975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일원

[별표 4] &lt;개정 2020. 7. 1., 2023. 12. 8.&gt;

## 수산물관련 지소 등 명칭·위치(제52조 관련)

명 칭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해리면 명사십리로 817
" 민물고기연구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대아저수로 410-25
" 수산물안전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255
" 어업기술센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문정로 20

[별표 6] <개정 2019. 4. 5., 2022. 10. 21., 2023. 12. 8.>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82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7% 이내	20% 이내	35% 이내	32% 이내	5% 이상	1% 이내

2. 별정직 공무원

구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비율	58% 이내	15% 이내	22% 이내	5% 이상

※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21% 이내	79% 이상	30% 이내	70% 이상

4. 소방직 공무원

구분	소방장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율	1% 이내	3% 이내	7% 이내	11% 이내	15% 이내	31% 이내	32% 이상

[별표 7] <개정 2020.12.11., 2021.5.28., 2022.4.1., 2022.10.21., 2023.6.16., 2023.12.8.>

전북특별자치도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83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b>총계</b>		<b>5,493</b>	-				
<b>정무직 계</b>		<b>4</b>	-				
도지사		1	1				
감사위원회 위원장		1					1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1					1
<b>별정직 계</b>		<b>14</b>	-				
1급 상당		1	1				
4급 상당		7	1	6			
5급 상당 이하 소계		6	-				
<b>일반직 계</b>		<b>1,794</b>	-				
1급		-					-
2급·3급		3	2	1			
3급		11	10		1		-
3급·4급		2	2				
4급		80	59	5	5	10	1
5급 이하 소계		1,689	-				
전문경력관 소계		9	-				
<b>연구직 계</b>		<b>199</b>	-				
연구관		38	2		32	4	
연구사		161	-				
<b>지도직 계</b>		<b>26</b>	-				
지도관		7			7		
지도사		19	-				
<b>소방직 계</b>		<b>3,456</b>	-				
소방정		22	6		16		
소방령 이하 계		3,434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부지사) ①·② (생 략)</p> <p>③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2. (생 략)</p> <p>3. <u>교육소통협력국</u>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p> <p>&lt;신 설&gt;</p> <p>4. 5. (생 략)</p>	<p>제4조(부지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특별자치교육협력국</u> -----</p> <p>4. <u>대외국제소통국</u>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p> <p>5. 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p>
<p>제5조(실·본부·국의 설치) ① 전북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기업유치지원실·기획조정실·도민안전실·특별자치도 추진단·자치행정국·문화체육관광국·복지여성보건국·환경녹지국·건설교통국·미래산업국·농생명축산식품국·교육소통협력국·새만금해양수산국·소방본부</u>를 둔다.</p> <p>②·③ (생 략)</p>	<p>제5조(실·본부·국의 설치) ① ----- ----- <u>기업유치지원실·기획조정실·도민안전실·자치행정국·문화체육관광국·복지여성보건국·환경산림국·건설교통국·미래첨단산업국·농생명축산산업국·특별자치교육협력국·대외국제소통국·새만금해양수산국·소방본부</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기업유치지원실)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u>기업유치·외자유치·새만금투자유치·산단조성관리·유치기업지원</u>에 관한 사항</p> <p>2. <u>기업현장지원·규제혁신·마케팅통상지원</u>에 관한 사항</p> <p>3. <u>민생경제정책·일자리취업지원·소상공인·지역상권·노사협력</u>에 관한 사항</p> <p>4. <u>금융산업·금융타운조성·사회적경제정책·사회적경제육성</u>에 관한 사항</p> <p>5. <u>창업정책·창업촉진·기술혁신지원</u>에 관한 사항</p>	<p>제6조(기업유치지원실) ----- -----.</p> <p>1. <u>지역경제·일자리정책·소상공인·지역상권·노사협력</u>-----</p> <p>2. <u>기업유치·외자유치·새만금투자유치·산단조성·산단관리·유치기업지원</u>-----</p> <p>3. <u>기업현장지원·기업인력양성·마케팅통상지원</u>-----</p> <p>4. <u>금융산업·금융인프라조성·사회적경제</u>-----</p> <p>5. <u>창업정책·창업촉진·펀드투자</u>-----</p>
<p>제7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생 략)</p> <p>2. <u>정책개발·조직관리·국가예산·균형발전·성과</u></p>	<p>제7조(기획조정실)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정책개발·조직관리·국가예산·균형발전·성과</u></p>

평가통계에 관한 사항

3. ~ 7. (생략)

제8조의2(특별자치도 추진단) 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1. 기획조정·입법활동·홍보협력·사회협력에 관한 사항
- 2. 특례총괄·자치권 강화 특례·전환경제 특례·지역개발 특례에 관한 사항
- 3. 자치입법·행정정비·평가·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제9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1. 총무·인사·공무원채용·공무원노사·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 2. 행정·자치지원·고향사랑기부·민원·잼버리지원·잼버리시설에 관한 사항

3.·4. (생략)

제10조(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1. (생략)
- 2. 관광정책·관광산업·관광자원개발·관광마케팅·마이스산업에 관한 사항
- 3. (생략)
- 4. 문화유산정책·문화유산보존·종무·가야백제에 관한 사항

제11조(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1. 복지정책·저소득지원·자활사회서비스·보육정책·보훈복지에 관한 사항
- 2. (생략)
- 3. 보건정책·공공의료·의약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 4. 노인정책·노인복지·노인시설안전에 관한 사항

평가·통계분석----

3. ~ 7. (현행과 같음)

<삭제>

제9조(자치행정국) -----  
--.

- 1. 행정·자치지원·민원-----

<삭제>

2.·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10조(문화체육관광국) -----  
-----.

- 1. (현행과 같음)
- 2. 관광정책·관광산업·관광자원개발·관광마케팅·마이스산업·산악관광-----
- 3. (현행과 같음)

- 4. 유산정책·유산보존·종무·유산자원-----

제11조(복지여성보건국) -----  
-----.

- 1. 복지정책·사회서비스·생활보장·보육정책·보훈복지-----

2. (현행과 같음)

- 3. 보건정책·공공의료·응급의료·의약관리-----

- 4. 고령친화정책·고령친화복지·고령친화시설---

5. 장애인정책·장애인권익·장애인시설안전에 관한 사항

6. 건강정책·출산지원·정신건강·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7. 감염병정책·감염병예방·감염병대응에 관한 사항

제12조(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탄소중립정책·기후변화대응·자원순환·생태자원에 관한 사항

2. 환경보건·생활환경·미세먼지대응·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3. (생략)

4. 산림정책·숲문화·산림보호·산림경영에 관한 사항

제13조(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건설정책·도시계획·지역발전·혁신도시·건설수주에 관한 사항

2.·3. (생략)

4. 건축정책·주거복지·건축안전·공공디자인·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5. (생략)

제14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생략)

2. 대응총괄·구조·구급에 관한 사항

3. 예방총괄·현장조사분석·소방안전조사에 관한 사항

4. (생략)

5. 119소방종합상황실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정책·장애인자립지원·장애인권익·장애인시설안전-----

6. 건강정책·출산지원·마음건강-----  
---

7. 감염병정책·감염병예방·감염병대응·식품위생-----  
-----

제12조(환경산림국) 환경산림국장-----  
---

1. 탄소중립·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대응·자원순환·생태자원-----

2. 환경보건·생활환경·미세먼지대응·환경관리-----  
-----

3. (현행과 같음)

4. 산림정책·산림휴양문화·산림보호·산림경영·도시녹지-----

제13조(건설교통국) -----  
--

1. 건설정책·도시계획·지역개발·혁신도시·건설수주-----

2.·3. (현행과 같음)

4. 건축정책·주거복지·건축안전·공공디자인·도시재생·공공건축-----

5. (현행과 같음)

제14조(소방본부) -----  
-

1. (현행과 같음)

2. 대응총괄·구조·구급·화재조사---

3. 예방총괄·안전문화홍보·소방안전조사-----  
--

4. (현행과 같음)

5. 119종합상황실-----

6. (생략)

제15조(미래산업국) 미래산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1. 미래산업기획·과학기술·이차전지반도체·ICT 산업기반·디지털융합에 관한 사항
- 2. 자동차산업·조선산업·뿌리기계·항공해양산업에 관한 사항

3. (생략)

- 4. 탄소정책·탄소소재산업·방위산업·바이오헬스 산업·바이오융합산업에 관한 사항

<신설>

제15조의2

제16조(농생명축산식품국)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1. 농정기획·농정협력·여성청년농업인·농지관리·농업기반에 관한 사항
- 2. 농촌활력·귀농귀촌·농촌융복합·농촌개발에 관한 사항
- 3. 친환경농업·농산물유통·식량산업·스마트위에·농자재종자·농민소득안정에 관한 사항
- 4. 농생명기획·식품클러스터·농식품마케팅·로컬푸드에 관한 사항

5. (생략)

- 6. 방역정책·질병관리·축산물위생·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제17조(교육소통협력국) 교육소통협력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1. 교육협력·대학협력·청소년·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 2. 정무기획·의정협력·민간지원·국제외국인정책·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현행과 같음)

제15조(미래첨단산업국) 미래첨단산업국장-----  
---

- 1. 미래산업기획·과학기술·이차전지반도체·탄소소재-----
- 2. 자동차산업·뿌리기계·조선항공산업-----

3. (현행과 같음)

- 4. 바이오정책·바이오헬스산업·바이오융합산업·방위산업-----

- 5. 디지털정책·ICT산업기반·인공지능융합

<삭제>

제16조(농생명축산산업국) 농생명축산산업국장-----  
-----.

- 1. 농생명정책·농생명지구육성·협치농정·여성청년농업인·농지·농민소득안정-----
- 2. 농촌사회활력·귀농귀촌·농촌경제·농촌재생·농업기반-----
- 3. 친환경농업·유통정책·식량산업·스마트위에·농자재종자-----
- 4. 농식품기획·푸드테크·농식품마케팅·먹거리정책-----

5. (현행과 같음)

- 6. 방역정책·질병관리·축산물위생·동물복지·펫산업--

제17조(특별자치교육협력국)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

- 1. 특별자치도기획·입법심행·특례정책·사회홍보협력-----
- 2. 자치제도·규제혁신·제도평가-----

3. 소통기획·디지털소통·미디어소통·도민소통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8조(새만금해양수산물국) 새만금해양수산물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1. 새만금기획·새만금개발지원·새만금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 2. 수질개선기획·새만금유역관리·오염원대책에 관한 사항
- 3. 4. (생 략)

제22조(특화작목연구소·종자사업소 등) ① 농업기술원에 특화작목의 품종육성, 재배기술개발, 식품 생리생태 연구, 저장과 수확 후 관리 기술개발 등과 그 밖의 소득 작물에 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화작목연구소로 약용자원연구소와 과채류 연구소를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허브산채시험장과 수박시험장을 둔다.

②·③ (생 략)

제33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전라북도119안전체험관 (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생 략)

제1절 전라북도서울본부

제36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서울 및 세종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의 도내 유치, 지역생산업의 국내의 판로개척, 귀농귀촌인 유치, 국제간 교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서울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3. 교육협력·대학협력·청소년·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대외국제소통국) 대외국제소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1. 정무기획·의정협력·민간지원·고향사랑기부에 관한 사항
- 2. 외국인국제정책·외국인지원·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3. 소통기획·디지털소통·미디어소통·직소민원에 관한 사항

제18조(새만금해양수산물국) -----  
-----.

- 1. 새만금기획·새만금개발지원·새만금수질개선·새만금유역관리-----

<삭 제>

2·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22조(특화작목연구소·종자사업소 등) ① -----  
-----  
-----  
----- 자원식물연구소-----  
----- 고랭지작물시험장-----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설치) ① -----  
----- 전북특별자치도119안전체험관-----.

② (현행과 같음)

제1절 전북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

제36조(설치) ① -----  
-----  
-----  
----- 전북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이하 “중앙협력본부”----.

② 중앙협력본부-----.

제37조(본부장) 서울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  
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8조(소관사무) 서울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국회·정당 관련 업무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 2.·3. (생략)
4. 서울·세종지역 도민단체·출향인사와 업무협조
5. 사제
6. ~ 12. (생략)

제39조(하부조직 등) 서울본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사무소의 명칭·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절 산림환경연구소

제53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임업에 관한 연구  
와 우량종묘의 생산·산림피해 상담지도 및 방역·임  
업기술의 보급, 산림박물관·수목원·휴양림 운영관리,  
사방사업의 시행·사방시설의 보호와 도유림 경영 관  
리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  
산림환경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산림환경연구소는 진안군 백운면 덕현로 45-54에  
둔다.

제54조(소장) 산림환경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  
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5조(소관사무)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  
장한다.

1. ~ 10. (생략)

제81조(정원의 총수)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는 정원의 총  
수는 5,502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  
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1,862명

제37조(본부장) 중앙협력본부-----  
-----  
-----.

제38조(소관사무) 중앙협력본부-----  
-----

1. 국회·정당·언론 -----
- 2.·3. (현행과 같음)
4. 수도권·세종지역 -----
6. ~ 12. (현행과 같음)

제39조(하부조직 등) 중앙협력본부-----  
-----  
-----.

제5절 산림환경연구원

제53조(설치) ① -----  
-----  
-----  
-----  
----- 전북특별자치도산림환경연구원(이하 “산  
림환경연구원”라 한다)-----

② 산림환경연구원은 -----  
-----

제54조(소장) 산림환경연구원은 -----  
-----  
-----

제54조(소장) 산림환경연구원장은 -----  
-----

1. ~ 10. (현행과 같음)

제81조(정원의 총수) -----  
----- 5,493명-----  
-----.

1. -----  
----- 1,853명

<p>2. ~ 4.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제7장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u></p> <p><u>제85조(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제3항에 따라 자율신설기구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 조례」에 따른 조직관리위원회를 통해 성과지표 달성 여부, 행정수요 지속 여부, 기능수행의 효율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u></p> <p><u>② 성과평가를 위한 구체적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u></p>	<p>2. ~ 4.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	---

참고1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를 두어야 한다.

② 시·도 본청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시·도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도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도의 과·담당관 등의 설치) 시·도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채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추가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정책기획관실 강혜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 4.

제 출 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안설명자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24.1.18.)에 따라 특별법에 맞는 조례 명칭 및 조문용어를 일괄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개정대상 : 72개 조례, 231개 조문

연번	소관부서	조례명	조문수
	<b>합 계</b>	<b>72개 조례</b>	<b>231</b>
1	의사담당관	전라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2
2	의정홍보담당관	전라북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4
3	운영수석전문위원	전라북도의회 인사정문회 운영 조례	3
4	일자리민생경제과	전라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6
5	일자리민생경제과	전라북도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6
6	일자리민생경제과	전북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
7	일자리민생경제과	전북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8	정책기획관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3
9	정책기획관	전라북도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	1
10	예산과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
11	예산과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8
12	청년정책과	전라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6
13	청년정책과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
14	사회재난과	전라북도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조례	2
15	자치행정과	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5

16	자치행정과	전라북도 남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4
17	자치행정과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3
18	문화산업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
19	문화산업과	전북특별자치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20	체육정책과	전북특별자치도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
21	체육정책과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1
22	문화유산과	전라북도 옹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3
23	문화유산과	전라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	7
24	사회복지과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25	사회복지과	전라북도사회공헌진흥및지원조례	4
26	사회복지과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	4
27	사회복지과	전라북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28	사회복지과	전라북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6
29	여성가족과	전라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	4
30	여성가족과	전라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6
31	보건의료과	전라북도소아청소년과의료개선지원에관한조례	3
32	보건의료과	전라북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4
33	보건의료과	전라북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2
34	노인복지과	전라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5
35	장애인복지과	전라북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	7
36	장애인복지과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5
37	장애인복지과	전라북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5
38	장애인복지과	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	5
39	건강증진과	전라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5
40	건강증진과	전라북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4
41	건강증진과	전라북도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3
42	건강증진과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
43	기후환경정책과	전라북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
44	기후환경정책과	전라북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2

45	기후환경정책과	전북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	9
46	생활환경과	전북특별자치도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1
47	산림녹지과	전북특별자치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2
48	지역정책과	전라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49	도로공항공철도과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50	주택건축과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1
51	주택건축과	전라북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	6
52	주택건축과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	4
53	주택건축과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4
54	주택건축과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2
55	주택건축과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3
56	방호예방과	전라북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57	에너지수소산업과	전북특별자치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1
58	탄소바이오산업과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
59	농산유통과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5
60	농산유통과	전라북도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조례	1
61	농산유통과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1
62	농산유통과	전북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
63	동물방역과	전북특별자치도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	2
64	교육협력추진단	전북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1
65	대의협력과	전라북도과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지원에관한조례	4
66	작물식품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1
67	자원경영과	전북특별자치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68	기술보급과	전라북도반려식물활성화및산업지원에관한조례	5
69	교육지원과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70	총무과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검정·시험등에관한조례	-
71	도립국악원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1
72	도로관리사업소	전북특별자치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

## 나. 정비대상 용어 및 정비안

용어	정비안	용어	정비안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 (이하 “도”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전라북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감사관실, 인권담당관, 여성청소년과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 3. 4. ~ 3. 25.(21일간)

나) 예고결과 : 이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미첨부사유서 : 불임

4) 조례·규칙 심의 결과 : 이상없음

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불임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편 의회사무처 소관

제1조(「전라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전라북도의회 의장과 전라북도지사 및 전라북도교육감”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의회”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전라북도교육감”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2조(「전라북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전라북도의회”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제2조제2호 중 “전라북도의회”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제3조제1항 중 “전라북도의회”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제7조제1항 및 제3항 중 “전라북도의회”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3조(「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전라북도의회”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전라북도의회의장”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바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 바.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장
- 사.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 아.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제3조제1항 중 “전라북도의회”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4편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제3장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제4조(「전라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3조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17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20조 중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전라북도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2조제1호 전단 중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로 한다.제3조제1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제9조제2항 중 “도 희망법률상담실”을 “전북자치도 희망법률상담실”로 한다.제10조제1항 전단 중 “전라북도교육청”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민관협의체의 운영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제14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전북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전라북도 지역”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으로,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전북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3조제1항제2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편 기획조정실 소관

제1장 정책기획관 소관

제8조(「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제2조제1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전라북도의회”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7조제8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8조의 제목 “전라북도 지방시대 지원단”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라북도 지방시대 지원단”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으로, “전라북도 소속”을 “전북특별자치도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전북특별자치도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로 한다.

제2장 예산과 소관

제10조(「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로 한다.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제3조제1항 중 “도 본청 및 사업소”를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및 사업소”로,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제18조제1항 중 “전라북도 홈페이지와”를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와”로 한다.제19조 중 “전라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로 한다.제21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로 한다.제1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라북도세(이하 “도세”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세(이하 “도세”라 한다)”로 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도의”을 “전북자치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제6조제1항 중 “도 전체의”를 각각 “전북자치도 전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도에서”를 각각 “전북자치도에서”로 한다.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7조제2항 중 “도의”를 “전북자치도의”로 한다.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 홈페이지에”를 “전북자치도 홈페이지에”로 한다.

### 제3장 청년정책과 소관

제12조(「전라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3조 중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제4조 중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로 한다.제5조제1항제5호 중 “도”를 “전북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한다.제9조 중 “「전라북도 포상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13조(「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 제6편 도민안전실 소관

#### 제2장 사회재난과 소관

제14조(「전라북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 중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제5조제3항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편 자치행정국 소관

제2장 자치행정과 소관

제15조(「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도”를 “전북자치도”로 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를 “전북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라북도의회”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를 “전북자치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도”를 “전북자치도”로 한다.제9조 본문 중 “도 누리집”을 “전북자치도 누리집”으로 한다.

제16조(「전라북도 남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남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 남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3조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전라북도 남북귀환어부”를 “전북특별자치도남북귀환어부”로 한다.제9조 중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17조(「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 사무”를 “전북자치도 사무”로 한다.제6조제4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8조제2항 중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

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제9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제1장 문화산업과 소관

제18조(「전북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9조(「전북특별자치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로, “도가”를 “전북자치도가”로 한다.

##### 제3장 체육정책과 소관

제20조(「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1조(「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의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 제4장 문화유산과

제22조(「전라북도 응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응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 응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응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민”을 “전북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3조 중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전라북도민들”을 “전북특별자치도민들”로 한다. 제5조 후단 중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3조(「전라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

례”로 한다.제1조 중 “전라북도민”을 “전북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제2조 중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로 한다.제3조 중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제8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9조제4항제3호 중 “전라북도의회”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제16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8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제10편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 제1장 사회복지과 소관

#### 제24조(「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라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5호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1호, 제2호, 제4호 중 “도”를 “전북자치도”로 한다.제8조 중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제25조(「전라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로 한다.제3조 중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제5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라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전라북도 사회보장위원회”를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제6조제3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 제26조(「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로 한다.제3조 중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전북특별자

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제4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5조제3항 중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6조 중 “「전라북도 포상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27조(「전라북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전라북도민”을 “전북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제3조 중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8조(「전라북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3조제1항 중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제5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6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7조제3항 중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2장 여성가족과 소관

제29조(「전라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3조제1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8조 중 “「전라북도 포상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30조(「전라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민”을 “전북특별자치도

민”으로 한다.제3조제1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제4조 중 “전라북도민”을 “전북특별자치도민”으로,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3조 중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14조 중 “「전라북도 포상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 제3장 보건의료과 소관

제31조(「전라북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전라북도민”을 “전북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제2조제3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2조(「전라북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전라북도민”을 “전북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제2조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제3조제1항 중 “전라북도민”을 “전북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3조(「전라북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전라북도민”을 “전북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제3조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 제4장 노인복지과 소관

제34조(「전라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로 한다.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이하 “도”

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전라북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로 한다.제3조제1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제4조제1항 후단 중 “전라북도”를 “전북자치도”로 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에”를 “전북자치도에”로 한다.제9조 중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제5장 장애인복지과 소관

제35조(「전라북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3조 중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제4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같은 조 제3항 중 “전라북도민”을 “전북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제5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6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10조 중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12조 중 “「전라북도 포상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36조(「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2조제2호 중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로 한다.제4조제1항 중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제8조 중 “도”를 “전북자치도”로 한다.제9조 중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7조(「전라북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2조제3호 중 “도가”를 “전북

특별자치도가”로,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3조 중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전라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제7조 중 “「전라북도 포상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38조(「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3조 중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제12조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13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같은 조 제3항 중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을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으로 한다.제15조 중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제6장 건강증진과 소관

제39조(「전라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전라북도민”을 “전북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으로,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제9조 중 “「전라북도 포상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제11조제3항 중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제12조제2항 중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0조(「전라북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전라북도민”을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제4조제1항 중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1조(「전라북도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전라북도민”을 “전북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제3조제1항 중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제7조 중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2조(「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1편 환경녹지국 소관

제1장 기후환경정책과

제43조(「전라북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의”를 “전북특별자치도의”로, “전라북도 기후대응기금”을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전라북도 기후대응기금”을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를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로 한다.제6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8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15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7조 중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4조(「전라북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로 한다.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전라북도가”를 “전북특별자치도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른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5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45조(「전북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도가”를 “전북자치도가”로 한다.

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 행정기관

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다.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3조제1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제4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라북도의회”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제5조제1항 중 “도 홈페이지”를 “전북자치도 홈페이지”로 한다.제9조제3항 중 “도 홈페이지”를 “전북자치도 홈페이지”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도 홈페이지”를 “전북자치도 홈페이지”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13조 중 “「전라북도 포상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 제2장 생활환경과 소관

제46조(「전북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 제3장 산림녹지과 소관

제47조(「전북특별자치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의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제8조 중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제12편 건설교통국 소관

##### 제1장 지역정책과 소관

제48조(「전라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3조 중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한다.

##### 제2장 도로공항철도와 소관

제49조(「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의 개정)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 제4장 주택건축과 소관

제50조(「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로 한다.제35조제4항 중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전라

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별지 제6호서식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1조(「전라북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3조제1항 중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라북도 주거 및 주택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주거 및 주택 조례」”로 한다.제5조 후단 중 “「전라북도 주거 및 주택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주거 및 주택 조례」”로 한다.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라북도 주거 및 주택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주거 및 주택 조례」”로, “전라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전북특별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제12조제2항 후단 중 “「전라북도 주거 및 주택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주거 및 주택 조례」”로 한다.

제52조(「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로 한다.제4조제1항 중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5조제3항 중 “「전라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7조 중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9조 중 “전라북도의회”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53조(「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를 “전북

자치도”라 한다.제7조 중 “전라북도민”을 “전북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제9조 중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4조(「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로 한다.제3조 중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로 한다.제4조 중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55조(「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2조 중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로 한다.제9조 중 “도”를 “전북자치도”로 하고,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 제13편 소방본부 소관

##### 제2장 방호예방과

제56조(「전라북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 제14편 미래산업국 소관

##### 제3장 에너지수소산업과 소관

제57조(「전북특별자치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 제4장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제58조(「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3조 중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 제15편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 제3장 농산유통과

제59조(「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로 한다.제2조제2호 중 “전라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로 한다.제6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7조 제목 “전라북도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전북특별자치도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로 하며, 제1항 중 “전라북도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제8조제3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전라북도내”를 “전북특별자치도내”로 한다.제10조제4항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0조(「전라북도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조례”로 한다.제4조제1항 중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1조(「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2조(「전북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2항제3호 중 “전라북도의회”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도가”를 “전북자치도가”로 한다.

#### 제6장 동물방역과 소관

제63조(「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로 한다.제14조제5항 중 “「전라북도 회계관리 규칙」”을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 제16편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 제1장 교육협력추진단 소관

제64조(「전북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의 제목 “(전라북도문해교육센터 설치 등)”을 “(전북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 설치 등)”으로 한다.

#### 제2장 대외협력과 소관

제65조(「전라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2조 중 “전라북도 출신이거나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 출신이거나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6조 후단 중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 제18편 농업기술원 소관

##### 제2장 연구개발국 소관

##### 제1절 작물식품과 소관

제66조(「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의 개정)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전라북도지역협회의”를 “전북특별자치도지역협회”로 한다.

##### 제3장 농촌지원국 소관

##### 제2절 자원경영과 소관

제67조(「전북특별자치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 제3절 기술보급과 소관

제68조(「전라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전라북도내”를 “전북특별자치도내”로, “전라북도민”을 “전북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제4조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로 한다.제8조 제2항 후단 중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전라북도민”을 “전북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 제19편 인재개발원 소관

##### 제1장 교육지원과 소관

제69조(「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

지 제1호 서식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별지 제2호 서식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 제21편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제1장 총무과 소관

#### 제70조(「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을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을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 서식 중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을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을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을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을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을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한다.

#### 제21편 사업소 소관

##### 제6장 도립국악원 소관

제71조(「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전라북도립국악원장”을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장”으로 한다.

##### 제7장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제72조(「전북특별자치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을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을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을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을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을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전라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을 “전북특별자치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편 의회사무처 소관

제1조 전라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전라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u>전라북도의회 의장과 전라북도지사 및 전라북도교육감</u>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서류제출 요구”란 <u>전라북도의회 본회의나 위원회</u>(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u>전라북도의회 의장</u>(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p> <p>2. “원자료”란 <u>전라북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u>전라북도교육감</u>(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u>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u> ----- ----- .</p> <p>제2조(정의) ----- ----- .</p> <p>1. ----- <u>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u>----- ----- ----- <u>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u> ----- ----- .</p> <p>2. ----- <u>전북특별자치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u>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u>----- ----- ----- ----- ----- .</p>

제2조 전라북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전라북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범위에서 <u>전라북도의회의 의정 정보</u> 등을 도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홍보관”이란 <u>전라북도의회</u>(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 기록을 보존·전시·홍보하고 도민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조성된 복합소통공간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u>전북특별자치도의회</u>----- ----- ----- .</p> <p>제2조(정의)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전북특별자치도의회</u>----- ----- ----- ----- .</p>

<p>3. 4. (생략)</p> <p>제3조(의장의 책무) ① <u>전라북도의회</u>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p> <p>② (생략)</p> <p>제7조(의회소식지의 발행) ① 의회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하며, 의회소식지의 명칭은 <u>전라북도의회</u> 간행물편집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의정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은 <u>전라북도의회</u> 간행물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며, 의장은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p>3. 4.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장의 책무) ① <u>전북특별자치도의회</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의회소식지의 발행) ① ----- ----- <u>전북특별자치도의회</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전북특별자치도의회</u> ----- -----.</p>
--	---

제3조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u>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u>전라북도의회</u>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인사청문 대상 직위)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u>전라북도지사</u> (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u>전라북도의회의장</u>(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나. (생략)</p> <p><u>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u></p> <p>라. 마. (생략)</p>	<p><u>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 <u>전북특별자치도의회</u> ----- -----.</p> <p>제2조(인사청문 대상 직위) ① ----- ----- <u>전북특별자치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 ----- <u>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u>----- -----.</p> <p>1. (현행과 같음)</p> <p>2. ----- ----- -----</p> <p>가. 나. (현행과 같음)</p> <p><u>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u></p> <p>라. 마. (현행과 같음)</p>

<p>바. <u>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u></p> <p>사. <u>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u></p> <p>아. <u>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u> 대표이사</p> <p>자.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등)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이하 “인사청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u>전라북도의회</u>(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 ⑤ (생략)</p>	<p>바. <u>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장</u></p> <p>사. <u>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u></p> <p>아. <u>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u> -----</p> <p>자.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등) ① ----- ----- ----- -- <u>전북특별자치도의회</u>-----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	---

제4편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제3장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제4조 전라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u>전라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u></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u>전라북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u>전라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u>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활성화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는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제9조(특화거리 지정·변경 등) ①·② (생략)</p> <p>③ 도지사는 특화거리와 활성화구역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12조의 <u>전라북도 지역상권위원회</u>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p> <p>제12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u>전라북도 지역상권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u>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u></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u>전북특별자치도지사</u>----- -----.</p> <p>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 <u>전북특별자치도</u> ----- -----.</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9조(특화거리 지정·변경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전북특별자치도</u> ----- -----.</p> <p>제12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 ----- <u>전북특별자치도</u> -----</p>

<p>1. ~ 6. (생략)</p> <p>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u>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20조(준용) 이 조례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예산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u>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에 따른다.</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제17조(수당 등) ----- 「<u>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p> <p>제20조(준용) ----- 「<u>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p>
--	--

제5조 전라북도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u>전라북도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근로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p> <p>2. ~ 6. (생략)</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u>전라북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근로 청소년이 노동 및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9조(상담 및 구제지원) ① (생략)</p> <p>② 도지사는 근로 청소년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도희망법률상담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등 법률구조 서비스 이용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근로에 대한 권익 상담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한다.</p>	<p><u>전북특별자치도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u></p> <p>제2조(정의) -----</p> <p>-----.</p> <p>1. -----</p> <p>----- <u>전북특별자치도</u>(이하 “<u>전북자치도</u>”라 한다)-----</p> <p>-----.</p> <p>-----.</p> <p>2. ~ 6. (현행과 같음)</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u>전북특별자치도지사</u>-----</p> <p>-----</p> <p>-----.</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상담 및 구제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전북자치도 희망법률상담실</u>-----</p> <p>-----</p> <p>-----.</p>

<p>제10조(교육 및 안내) ① 도지사는 <u>전라북도교육청</u>(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한다.</p> <p>②·③ (생략)</p> <p>제13조(민관협의체 구성·운영) ① (생략)</p> <p>② 민관협의체의 운영은 「<u>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에 따른다.</p> <p>제14조(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전라북도</u>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10조(교육 및 안내) ① ----- <u>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u>-----</p> <p>-----.</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민관협의체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민관협의체의 운영은 「<u>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에 따른다.</p> <p>제14조(센터의 설치) ① ----- <u>전북특별자치도</u> -----</p> <p>-----.</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제6조 전북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전북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u>전라북도</u> 지역의 노동자·사용자·주민 및 <u>전라북도</u>(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p>	<p>전북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u>전북특별자치도</u> 지역----- <u>전북특별자치도</u>-----</p> <p>-----.</p>

제7조 전북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전북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p> <p>제9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 ①·② (생략)</p> <p>③ 도지사는 「<u>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u>」에 의거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가산점을 줄 수 있다.</p>	<p>전북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p> <p>제9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u>」-----</p> <p>-----.</p>



<p>4. <u>전라북도의회</u> 의원</p> <p>5. <u>전라북도</u> 소속 공무원</p> <p>6. (생략)</p> <p>④·⑤ (생략)</p> <p>제7조(분과위원회) ① ~ ⑦ (생략)</p> <p>⑧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u>전라북도</u> 소속 과장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p> <p>제8조(<u>전라북도</u> 지방시대지원단)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66조에 따라 <u>전라북도</u> 지방시대지원단을 설치한다.</p> <p>② <u>전라북도</u> 지방시대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u>전라북도</u>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p> <p>③ <u>전라북도</u> 지방시대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p>	<p>4. <u>전북특별자치도의회</u> ---</p> <p>5. <u>전북특별자치도</u> ---</p> <p>6. (현행과 같음)</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7조(분과위원회) ① ~ ⑦ (현행과 같음)</p> <p>⑧ ----- ----- <u>전북특별자치도</u> ----- -----.</p> <p>제8조(<u>전북특별자치도</u> 지방시대지원단) ① ----- ----- ----- <u>전북특별자치도</u> -----.</p> <p>② <u>전북특별자치도</u> 지방시대지원단----- ----- <u>전북특별자치도</u> 소속 ----- -----.</p> <p>③ <u>전북특별자치도</u> ----- -----.</p>
--	--

제9조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전북특별자치도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관계기관”이란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u>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u>」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p> <p>5. (생략)</p>	<p>전북특별자치도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u>」 제2조----- -----.</p> <p>5. (현행과 같음)</p>

제2장 예산과 소관

제10조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	-----



<p>용역사업 사후관리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 후 <u>전라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u>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u>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 ----- <u>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u>-----.</p> <p>제21조(수당 및 여비) ----- ----- 「<u>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p>
--	--

제11조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시·군의 조정교부금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북도 내 시·군 상호간의 재정 형평을 기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조정교부금”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원으로써 <u>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u>가 해당 시·군에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p> <p>2. “일반조정교부금”이란 조정교부금의 일정액을 관할 시·군의 인구수 및 <u>전라북도세(이하 “도세”라 한다)</u> 징수실적에 따라 지출 용도를 정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p> <p>3. (생략)</p> <p>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1. (생략)</p> <p>2. <u>도의 지방소비세액(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시·도에 배분</u></p>	<p style="text-align: center;"><u>전북특별자치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u></p> <p>제1조(목적) ----- ----- ----- <u>전북특별자치도</u> -----.</p> <p>제2조(정의) ----- -----.</p> <p>1. ----- ----- <u>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u>-----.</p> <p>2. ----- ----- <u>전북특별자치도세(이하 “도세”라 한다)</u>----- -----.</p> <p>3. (현행과 같음)</p> <p>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전북자치도의</u>----- -----</p>

되는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한다)  
을 전년도 말의 도의 인구수로 나눈 금액에 전  
년도 말의 해당 시·군의 인구수를 곱한 금액

② (생략)

③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력발전  
· 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  
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  
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제6조(조정교부금의 산정·배분방법) ① 일반조정교부  
금의 산정방법은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근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  
준으로 도 전체의 인구수에서 해당 시·군의 인구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  
액은 도 전체의 도세 징수 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  
한다)에서 해당 시·군의 도세 징수 실적 비율에 따  
라 배분하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  
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  
다.

②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

1. 2. (생략)

3. 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  
둔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4.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

5. (생략)

③ ~ ⑥ (생략)

제6조의2(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특별조정교  
부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 (생략)

-----  
--- 전북자치도의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  
-----  
-----

제6조(조정교부금의 산정·배분방법) ① -----  
-----  
-----  
--- 전북자치도 전체의 -----  
----- 전북자  
치도 전체의 -----  
-----  
-----  
-----  
-----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전북자치도에서-----  
-----

4. 전북자치도에서-----

5.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2(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  
----- 전북특별자치도 -----  
-----

1. ~ 3. (현행과 같음)

<p>② ~ ⑦ (생략)</p> <p>제7조(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 ① (생략)</p> <p>② 도지사는 <u>도의 예산</u>이 확정된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계획을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12조(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정보 공개) 도지사는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u>도 홈페이지</u>에 공개한다.</p> <p>1. ~ 5. (생략)</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p>제7조(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전북자치도의</u>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정보 공개) ----- ----- ----- <u>전북자치도 홈페이지</u> ----- -----.</p> <p>1. ~ 5. (현행과 같음)</p>
---	--

제3장 청년정책과 소관

제12조 전라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u>전라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내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u>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u>는 다자녀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p> <p>제4조(지원대상) 도지사는 <u>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u>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제5조(다자녀가정 지원) ① 도지사는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4.(생략)</p> <p>5. <u>도가</u> 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등의 지원</p> <p>② ~ ③ (생략)</p>	<p><u>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전북특별자치도</u> ----- ----- -----.</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u>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u>----- ----- -----.</p> <p>제4조(지원대상) 도지사는 <u>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u>----- -----.</p> <p>제5조(다자녀가정 지원) ① 도지사는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4.(현행과 같음)</p> <p>5. <u>전북자치도가</u>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u>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7조(실태조사) ①·② (생략)</p> <p>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u>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9조(포상) 도지사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u>전라북도 포상 조례</u>」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p>④ ----- 「<u>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7조(실태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u>」-----.</p> <p>제9조(포상) ----- 「<u>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u>」-----.</p>
---	--

제6편 도민안전실 소관

제2장 사회재난과 소관

제14조 전라북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u>전라북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u></p> <p>제4조(책무) ① <u>전라북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등(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5조(재난관리계획) ①·② (생략)</p> <p>③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u>전라북도</u>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p>	<p><u>전북특별자치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u></p> <p>제4조(책무) ① <u>전북특별자치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재난관리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전북특별자치도</u>-----</p> <p>-----.</p>

제8편 자치행정국 소관

제2장 자치행정과 소관

제15조 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u>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u></p>	<p><u>전북특별자치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u></p>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업무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업무협약”이란 도가 국내외 업무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도가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
2. 3. (생략)

제7조(도의회 보고 등) ① 도지사는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지체 없이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 또는 투자유치 협약 등 보안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생략)
2. 도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3. (생략)

제1조(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  
-----  
-----  
-----  
-----.

제2조(정의) -----  
-----.

1. -----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  
-----.
2. ----- 전북자치도-----  
-----  
-----.
3. -----  
----- 전북자치도 -----  
-----.

제3조(적용 범위) 전북자치도-----  
-----  
-----  
-----.

1. -----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2. 3. (현행과 같음)

제7조(도의회 보고 등) ① -----  
-----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  
-----.

1. (현행과 같음)
2. 전북자치도-----
3. (현행과 같음)

<p>4. <u>도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이 발생하</u> <u>는 경우</u></p> <p>②·③ (생략)</p> <p>제9조(업무제휴 및 협약의 공개) 도지사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 또는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u>도 누리집</u>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p>	<p>4. <u>전북자치도</u>-----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업무제휴 및 협약의 공개) ----- ----- ----- -- <u>전북자치도 누리집</u> ----- ----- -----.</p>
---	--

**제16조 전라북도 남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  
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u>전라북도 남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u> <u>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과 같다.</p> <p>1. 2. (생략)</p> <p>3. “남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1954년부터 1987년까지 기간 중에 <u>전</u> <u>라북도</u>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했던 어부 및 그 가족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 ~ 다. (생략)</p> <p>4. 5. (생략)</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u>전라북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자 및 유족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p> <p>제7조(남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센터 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u>전라북도 남북귀</u> <u>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센터</u>(이하 “지 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u>전북특별자치도 남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u> <u>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u>전북</u> <u>특별자치도</u>----- -----.</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4. 5. (현행과 같음)</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u>전북특별자치도지사</u>----- ----- -----.</p> <p>제7조(남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센터 의 설치·운영) ① ----- ----- <u>전북특별자치도남</u> <u>북귀환어부</u> ----- -----.</p> <p>② (현행과 같음)</p>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를 「 <u>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u> 」에 따라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 ----- 「 <u>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u> 」----- -----.
---	---

**제17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책무) ① <u>전라북도지사</u> (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만금 권역과 인접한 3개 시·군의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정책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조(책무) ① <u>전북특별자치도지사</u>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국가 사무 또는 <u>도 사무</u> 위임·이관 및 시·군 공동 추진사업 등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 <u>전북자치도 사무</u> ----- -----.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u>전라북도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u> 으로 한다.	④ ----- ----- <u>전북특별자치도</u> -----.
제8조(경비의 지원) ① (생 략)	제8조(경비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 <u>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 」에 따른다.	② ----- ----- 「 <u>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 」----- -----.

**제9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장 문화산업과 소관**

**제19조 전북특별자치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전북특별자치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공공건축물”이란 <u>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한 기관이 소유하거나 발주한 건축물</u>을 말한다.</p> <p>3.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u>----- <u>전북자치도가</u> -----.</p> <p>3. (현행과 같음)</p>
---	--

제3장 체육정책과

제21조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u>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u></p> <p>제9조(사용료의 면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선수숙소 제외)할 수 있다.</p> <p>1. 국가 또는 <u>도가</u> 주최·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익성이 있는 경우</p>	<p><u>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u></p> <p>제9조(사용료의 면제) ----- -----.</p> <p>1. ----- <u>전북특별자치도가</u> ----- -----</p>

제4장 문화유산과

제22조 전라북도 응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u>전라북도 응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치전투와 이치전투에 관한 선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치전투와 이치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발전시키고 <u>전라북도민</u>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u>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u>는 응치전투와 이치전투(이하 “응치·이치전투”라 한다)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고 <u>전라북도민들</u>이 이를 널리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경비의 보조)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p>	<p><u>전북특별자치도 응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u>전북특별자치도민</u> -----.</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u>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u>----- <u>전북특별자치도민들</u>----- -----.</p> <p>제5조(경비의 보조) ----- -----</p>

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 전라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u>전라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백제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복원과 정비·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전라북도민</u>의 역사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후백제역사문화권”이란 후백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u>전라북도</u>(이하 “도”라 한다) 내 시·군을 말한다.</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u>전라북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백제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옹골케 조명하기 위하여 후백제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연구·조사와 발굴·복원이 이루어지도록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힘써야 한다.</p> <p>제8조(위원회의 설치) 후백제역사문화권의 지정, 조사 등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u>전라북도</u> 후백제역사문화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9조(위원회 구성) ① ~ ③ (생략)</p> <p>④ (생략)</p> <p>1. 2. (생략)</p> <p>3. <u>전라북도의회</u>에서 추천하는 사람</p> <p>4. (생략)</p> <p>제16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은 「<u>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7조에 따른다.</p> <p>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u>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u></p>	<p><u>전북특별자치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u>전북특별자치도민</u>-----.</p> <p>제2조(정의) ----- ----- <u>전북특별자치도</u> (이하 “<u>전북자치도</u>”라 한다)-----.</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u>전북특별자치도지사</u>(이하 “<u>도지사</u>”라 한다)-----</p> <p>제8조(위원회의 설치) ----- ----- <u>전북특별자치도</u> -----.</p> <p>제9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전북특별자치도의회</u>-----</p> <p>4. (현행과 같음)</p> <p>제16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은 「<u>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7조에 따른다.</p> <p>제18조(수당 등) ----- ----- 「<u>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u></p>

<p><u>운영에 관한 조례</u>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u>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 .</p>
---	---

제10편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제1장 사회복지과 소관

제24조 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u>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4조(책무) ①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③ 전라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제6조(보훈관련 단체 지원) 도지사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4. (생 략)</p> <p>5. 그밖에 <u>전라북도지사</u>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p> <p>제7조(생업 및 복지지원 등) 도지사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p> <p>1. 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p> <p>2. 도립 공원 등 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p> <p>3. (생 략)</p>	<p><u>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4조(책무) ①<u>전북특별자치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전북특별자치도민</u>(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 -----.</p> <p>제6조(보훈관련 단체 지원)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전북특별자치도지사</u> ----- -----</p> <p>제7조(생업 및 복지지원 등) ----- -----.</p> <p>1. <u>전북자치도가</u>----- ----- ----- -----</p> <p>2.-----<u>전북자치도가</u>----- -----</p> <p>3. (현행과 같음)</p>

<p>4. <u>도가</u> 설립·관리하거나 별도로 지정한 의료시설의 진료비 지원</p> <p>5. (생략)</p>	<p>4. <u>전북자치도가</u> ----- -----</p> <p>5. (현행과 같음)</p>
<p>제8조(준용)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절차, 지급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u>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에 따른다.</p>	<p>제 8 조 ( 준 용 ) ----- ----- 「<u>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 -----.</p>

**제25조 전라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p><u>전라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u></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u>전라북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여건을 조성하고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사회공헌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u>전라북도 사회공헌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생략)</p> <p>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u>전라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u>」에 따른 <u>전라북도 사회보장위원회</u>에서 대신할 수 있다.</p> <p>제6조(포상)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수 사회공헌자를 포상하는 때에는 계획을 <u>전라북도 홈페이지</u>에 공고하여야 한다.</p> <p>제7조(사회공헌인증) ① (생략)</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회공헌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u>전라북도 홈페이지</u>에 게재하여야 한다.</p>	<p><u>전북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u></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u>전북특별자치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 ----- -----.</p> <p>제5조(사회공헌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 <u>전북특별자치도</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u>」에 따른 <u>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u>-----.</p> <p>제6조(포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u>에 공고하여야 한다.</p> <p>제7조(사회공헌인증)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u>에 게재하여야 한다.</p>

**제26조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	-----

<p align="center"><u>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u></p>	<p align="center"><u>전북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u></p>
<p>제3조(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군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 -----.</p>
<p>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u>전라북도</u>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 ----- <u>전북특별자치도</u>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계획을 ----- -----.</p>
<p>제5조(지원)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라 기관·단체 및 법인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은 「<u>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에 따른다.</p>	<p>제5조(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에 따른다.</p>
<p>제6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u>전라북도 포상 조례</u>」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p>제6조(포상) ----- ----- 「<u>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u>」에 따라 -----.</p>

**제27조 전라북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 align="center">현행</p>	<p align="center">개정안</p>
<p align="center"><u>전라북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 align="center"><u>전북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u>전라북도민</u>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전북특별자치도민</u>의 ----- -----.</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 -----.</p>
<p>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전라북도</u>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li> <li>2. <u>전라북도</u>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li> </ol>	<p>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대상) ①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전북특별자치도</u> -----</li> <li>2. <u>전북특별자치도</u>가 -----</li> </ol>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

**제28조 전라북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전라북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전라북도</u>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건강하고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u>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u>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u>전라북도</u>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u>전라북도</u>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7조(지원사업) ①·② (생략)</p> <p>③ 시·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u>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전북특별자치도</u> -----</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u>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 <u>전북특별자치도</u>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실태조사 등) ① ----- <u>전북특별자치도</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지원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p>

<p>④ (생략)</p> <p>제9조(사무의 위임·위탁) ①·② (생략)</p> <p>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사무의 위임·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p>
--	--

제2장 여성가족과 소관

제29조 전라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p><u>전라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u></p>	<p><u>전북특별자치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취득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지역생활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p> <p>제3조(도지사 책무) ① 전라부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취득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취득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8조(포상) 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도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부칙 제2023호 (생략)</p>	<p>제1조(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 -----.</p> <p>제3조(도지사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p> <p>② ----- 전북특별자치도 ----- -----.</p> <p>제8조(포상) -----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p> <p style="text-align: right;">부칙 제2023호 (현행과 같음)</p>

제30조 전라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u>전라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u></p>	<p><u>전북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 외에도 가족, 자기계발, 여가문화 생활 등을 조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전라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전북특별자치도민-----.</p>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조(도민의 책무) 전라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양성이 평등하고 건강한 가족친화 환경을 위하여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시행하는 일·생활 균형 시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확산 및 지원) ① (생략)

② 도지사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하여 사업성과 평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자금 지원 우대
2.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3. (생략)

제13조(적용규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포상)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도민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민-----  
----- 전북특별자치도-----  
-----.

제10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확산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3. (현행과 같음)

제13조(적용규정)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포상) -----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3장 보건의료과 소관

제31조 전라북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u>전라북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u>	<u>전북특별자치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전라북도민</u> 의 의료수요 충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전북특별자치도민</u>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조례</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u>전라북도민</u>의 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책무) <u>전라북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이하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라 한다)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p>	<p>제1조(목적) ----- ----- ----- - <u>전북특별자치도민</u>-----.</p> <p>제3조(책무) <u>전북특별자치도지사</u>----- ----- ----- -----.</p>

제4장 노인복지과 소관

제34조 전라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u>전라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u>	<u>전북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u>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공영장례”란 <u>전라북도</u>(이하 “도”라 한다)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위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연고자 등이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p> <p>2. 3. (생 략)</p> <p>4. “저소득층 사망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u>전라북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u>」에 따른 장제급여 또는 장제비를 지원받는 수급자 중 사망자를 말한다.</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u>전라북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u>전라북도</u>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p> <p>②·③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 <u>전북특별자치도</u>(이하 “<u>전북자치도</u>”라 한다)----- ----- -----.</p> <p>2. 3. (현행과 같음)</p> <p>4. ----- 「<u>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u>」----- ----- -----.</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u>전북특별자치도지사</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 ----- ----- <u>전북자치도</u>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지원대상자) 공영장래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u>도에</u>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p> <p>1. 2. (생략)</p> <p>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할 경우 그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u>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에 따른다.</p>	<p>제5조(지원대상자) ----- <u>전북자치도에</u> ----- -----.</p> <p>1. 2. (현행과 같음)</p> <p>제9조(재정지원) ----- ----- 「<u>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p>
--	--

제5장 장애인복지과 소관

제35조 전라북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p><u>전라북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u>전라북도</u> 장애인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u>전라북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u>전라북도</u>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u>전라북도민</u>(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p> <p>제5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u>전라북도</u>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p> <p>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u>전라북도</u>에 주소를 둔 가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으로 한다.</p> <p>② (생략)</p> <p>제10조(준용)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p>	<p><u>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 <u>전북특별자치도</u> ----- -----.</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u>전북특별자치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 -----.</p> <p>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 <u>전북특별자치도</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전북특별자치도민</u>----- -----.</p> <p>제5조(실태조사 등) ----- ----- <u>전북특별자치도</u> ----- -----.</p> <p>제6조(지원대상) ① ----- <u>전북특별자치도</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준용) ----- -----</p>

<p>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p> <p>제12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사업 활성화 및 가치활동 전파, 사업참여자에 대한 동기 부여 등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p>-----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p> <p>제12조(포상) -----</p> <p>-----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p> <p>-----.</p>
---	--

제36조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공연장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체육관·운동장 중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p> <p>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운영)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연장등에 일정한 수의 관람석을 법 제8조 및 영 제4조에 따른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은 전체 최적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p> <p>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도가 출자·출연한 법인이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공연장등의 시설을 이 조례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9조(준용)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사업</p>	<p>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p> <p>----- 전북특별자치도가 -----</p> <p>-----.</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p> <p>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운영)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p> <p>-----.</p> <p>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전북자치도가 -----</p> <p>-----.</p> <p>제9조(준용)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사업</p>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7조 전라북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p><u>전라북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조례</u></p>	<p><u>전북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전라북도</u>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전북특별자치도</u>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 략)</p> <p>3. “공공기관 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u>도</u>가 설립한 기관 및 「<u>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u>」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u>전북특별자치도가</u> -- 「<u>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u>」 -----</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u>전라북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u>전북특별자치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 한다)</p>
<p>제6조(사무의 위탁)</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u>전라북도 사무위탁 조례</u>」에 따른다.</p>	<p>제6조(사무의 위탁)</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탁 조례</u>」-----</p>
<p>제7조(포상)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도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u>전라북도 포상 조례</u>」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p>제7조(포상) ----- 「<u>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u>」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제38조 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	-------

<p align="center"><u>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u></p>	<p align="center"><u>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전북특별자치도</u> ----- ----- ----- ----- -----.</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u>전라북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복지정책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u>전북특별자치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 ----- ----- -----.</p>
<p>제12조(비용분담) <u>전라북도</u>는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사업과 수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시·군과 분담할 수 있다.</p>	<p>제12조(비용분담) <u>전북특별자치도</u>----- ----- ----- -----.</p>
<p>제13조(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운영)</p>	<p>제13조(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운영)</p>
<p>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u>전라북도</u>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① ----- <u>전북특별자치도</u> ----- -----.</p>
<p>1.~7. (생략)</p>	<p>1.~7. (현행과 같음)</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u>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u> 또는 도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p>	<p>③ ----- ----- <u>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u> ----- -----.</p>
<p>제15조(준용)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경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u>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를 따른다.</p>	<p>제15조(준용) ----- ----- - 「<u>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 -.</p>

**제6장 건강증진과 소관**

**제39조 전라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p align="center">현행</p>	<p align="center">개정안</p>
<p align="center"><u>전라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u></p>	<p align="center"><u>전북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운동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u>전라북도민</u>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 <u>전 북 특 별 자 치 도 민</u>의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걷기 사업”이란 <u>전라북도민</u>(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u>전라북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추진·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걷기 사업”이란 <u>전북특별자치도민</u>(이하 “도민”이라 한다)의-----<u>전북특별자치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 -----.</p>
<p>제9조(포상)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u>전라북도 포상 조례</u>」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p>제9조(포상) ----- 도지사는 ----- --- 「<u>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u>」에 -----.</p>
<p>제11조(사무의 위임·위탁)</p> <p>①·② (생략)</p> <p>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u>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11조(사무의 위임·위탁)</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u>」가 -----.</p>
<p>제12조(행정적·재정적 지원)</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관리 등에 관해서는 「<u>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에 따른다.</p>	<p>제12조(행정적·재정적 지원)</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에 -----</p>

제40조 전라북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u>전라북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전라북도민</u>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u>전라북도민</u>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p>	<p><u>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전북특별자치도민</u>----- ----- <u>전북특별자치도민</u>----- -----.</p> <p>제2조(정의) -----</p>

<p>음과 같다.</p> <p>1. “정신건강검진”이란 <u>전라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u>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발견과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p> <p>2. (생략)</p> <p>3. “검진기관”이란 <u>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u>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p> <p>제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계획을 <u>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u>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6조(지원내용)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u>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에 따른다.</p>	<p>-----</p> <p>1. ----- <u>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u>----- ----- -----.</p> <p>2. (현행과 같음)</p> <p>3. ----- <u>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u>----- -----.</p> <p>제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 ----- ----- <u>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지원내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p>
---	---

제41조 전라북도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u>전라북도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전라북도민의</u>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책무) ① <u>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u>는 도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u>전북특별자치도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전북특별자치도민의</u> ----- -----.</p> <p>제3조(책무) ① <u>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u> <u>다</u> ) ----- -----</p>

<p>②·③ (생략)</p> <p>제7조(재정지원) 비만예방 및 관리에 지원을 위한 재정 등 지원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u>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에 따른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 7 조 ( 재 정 지 원 ) ----- ----- 「<u>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에 -----</p>
---	--

제42조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3조(업무) 광역치매센터는 「치매관리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와 「<u>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u>」에 따른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의 업무를 수행한다.</p>	<p>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3조(업무) ----- ----- 「<u>전북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u>」----- -----.</p>

제11편 환경녹지국 소관

제1장 기후환경정책과

제43조 전라북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p><u>전라북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u>전라북도 기후대응기금</u>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u>전라북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u>전라북도 기후대</u></p>	<p><u>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u>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u>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u>전북특별자치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u>전북특별자</u></p>

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전라북도 일반회계 전입금
- 2. 전라북도 다른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생략)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관은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8조에 따른 전라북도 기후대응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기후대응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적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

치도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전입금
- 2. 전북특별자치도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  
----- 전북특별자치도 -----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  
----- 전북특별자치도 -----  
-----.

제15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적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

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 <u>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 」에 따른다.	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 <u>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 」에 따른다.
---	--

**제44조 전라북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전라북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u></p> <p>제4조(야생조류 충돌 예방 등) ① <u>전라북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u>전라북도</u>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5. (생 략)</p> <p>② (생 략)</p> <p>③ 도지사는 「<u>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u>」 제12조에 따른 <u>전라북도</u>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p> <p>④ (생 략)</p> <p>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u>전라북도</u>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u>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u>」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전북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u></p> <p>제4조(야생조류 충돌 예방 등) ① <u>전북특별자치도지사</u>----- <u>전북특별자치도</u>가 ----- -----.</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u>」 제12조에 따른 <u>전북특별자치도</u>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5조(실태조사) ① ----- <u>전북특별자치도</u>----- -----.</p> <p>② ----- ----- 「<u>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u>」-----.</p>

**제45조 전북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전북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전라북도를</u> 비롯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p>	<p style="text-align: center;">전북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p> <p>제1조(목적) ----- <u>전북특별자치도</u>----- -----</p>

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의 홍보 및 다회용품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1회용품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

나. 전라북도의회

다.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매년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저감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이를 전라북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생략)

-----  
-----  
-----  
-----.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

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

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다.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라. ----- 전북자치도가 -----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시행) ① -----  
----- 전북자치도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

제5조(실태조사 등) ① -----  
----- 전북자치도 홈페이지 -----  
-----.

② (현행과 같음)

<p>제9조(우수업소 이용활성화) ①·② (생략)</p> <p>③ 도지사는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u>도 홈페이지</u>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9조(우수업소 이용활성화)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전북자치도 홈페이지</u> ----- -----.</p>
<p>제10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② (생략)</p> <p>③ 도지사는 우수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제9조제3항에 따라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게재한 <u>도 홈페이지</u>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0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전북자치도 홈페이지</u> ----- -----.</p>
<p>제12조(준용) ①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u>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에 따른다.</p> <p>②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u>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u>」에 따른다.</p>	<p>제12조(준용) ① ----- ----- 「<u>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p> <p>② ----- ----- 「<u>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u>」-----.</p>
<p>제13조(포상)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우수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u>전라북도 포상 조례</u>」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p>제13조(포상) ----- ----- 「<u>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u>」----- -----.</p>

제2장 생활환경과 소관

제46조 전북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p>전북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p> <p>제2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u>전라북도</u>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전북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p> <p>제2조(책무) ① ----- ----- <u>전북특별자치도</u> ----- -----.</p> <p>② (현행과 같음)</p>

제3장 산림녹지와 소관

제47조 전북특별자치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전북특별자치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p> <p>제7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p> <p>② 도지사가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p> <p>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p>	<p>전북특별자치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p> <p>제7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p> <p>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p>

제12편 건설교통국 소관

제1장 지역정책과 소관

제48조 전라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u>전라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p> <p>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p> <p>제7조(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위임·위탁의 경우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p>	<p><u>전북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p> <p>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p> <p>제7조(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p>

제2장 도로공항공철도과 소관

제49조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장 주택건축과 소관**

**제50조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현 행	개 정 안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5조(국·공유지의 관리처분 등)	제35조(국·공유지의 관리처분 등)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공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 ----- ----- -----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1조 전라북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전라북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 ----- -----.
제3조(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 ----- -----.

② (생략)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북도 아동주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기본계획이 법 제6조 및 「전라북도 주거 및 주택 조례」 제3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기본계획으로 본다.

③ (생략)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은 「전라북도 주거 및 주택 조례」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주거 및 주택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전라북도 주거정책 심의위원회가 이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및 정보제공 등)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의 원활한 시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  
----- 전북특별자치도 -----  
-----  
-----.

1. ~ 6. (현행과 같음)

② ----- 「전북특별자치도 주거 및 주택 조례」 -----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  
-----  
----- 「전북특별자치도 주거 및 주택 조례」 -----  
-----.

제8조(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설치) ① -----  
----- 전북특별자치도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전북특별자치도 주거 및 주택 조례」 -----  
----- 전북특별자치도 주거정책심의회 -----.

제12조(홍보 및 정보제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행을 위하여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발굴, 관련 정보제공, 상담·안내 및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북도 주거 및 주택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  
-----  
----- 「전북특별자치도 주거 및 주택 조례」 -----  
-----.

**제52조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u></p> <p>제4조(사후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u>전라북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가 지속되게 하도록 2년마다 <u>전라북도 도시재생 사후관리지원계획</u>(이하 “사후관리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5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컨설팅 등) ① ~ ② (생 략)</p> <p>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u>전라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4조에 따라 설치된 <u>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u>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제7조(준용)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u>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에 따른다.</p> <p>제9조(보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사후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 <u>전라북도의회</u>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u></p> <p>제4조(사후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u>전북특별자치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 ----- <u>전북특별자치도</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컨설팅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 ----- <u>전북특별자치도</u> ----- -----.</p> <p>제7조(준용) ----- ----- 「<u>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 -----.</p> <p>제9조(보고) ----- ----- <u>전북특별자치도의회</u> ----- -----.</p>

**제53조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전라북도</u> 내 주택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u></p> <p>제 1 조 ( 목 적 ) ----- ----- <u>전북특별자치도</u> ----- -----.</p>

<p>제3조(보증료 지원) ① <u>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u>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u>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u> 내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지원신청일 기준 <u>도</u>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p> <p>3. ~ 4. (생략)</p> <p>② (생략)</p> <p>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도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u>전라북도</u> <u>민</u>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p> <p>제9조(준용) 주택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u>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에 따른다.</p>	<p>제3조(보증료 지원) ① <u>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u> -----<u>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u>-----.</p> <p>1. (현행과 같음)</p> <p>2. ----- <u>전북자치도</u> -----</p> <p>3.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교육 및 홍보) ----- ----- <u>전북특별자치도민</u> -----.</p> <p>제9조(준용) ----- ----- 「<u>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 -----.</p>
---	---

제54조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p><u>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u></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u>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u>에 있는 주거용 건물에 적용한다.</p> <p>제4조(도지사의 책무) <u>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u>는 주택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u>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u></p> <p>제3조(적용범위) ----- ----- <u>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u> -----.</p> <p>제4조(도지사의 책무) <u>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u> ----- -----.</p>

제55조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u>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u>전라북도</u>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치) <u>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u>는 <u>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u>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p> <p>제9조(수당 및 여비) <u>도</u>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u>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또는 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u>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 1 조 ( 목 적 ) ----- ----- ----- <u>전북특별자치도</u> ----- -----.</p> <p>제2조(설치) <u>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u> - <u>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u> 다 )----- ----- -----.</p> <p>제9조(수당 및 여비) <u>전북자치도</u> ----- ----- ----- -----수당과-----.</p>

제13편 소방본부 소관

제2장 방호예방과

제56조 전라북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u>전라북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민간자원”이란 소방활동에서 <u>전라북도</u> 및 관계</p>	<p><u>전북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2조(정의) ①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전북특별자치도</u></p>

인 소유 외에 사용된 사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말한다.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u>전라북도지사</u> (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사인(관계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상·재정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u>전북특별자치도지사</u> (이하 “도지사”라 한다)----- ----- -----.

**제14편 미래산업국 소관  
제3장 에너지수소산업과 소관**

**제57조 전북특별자치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현행	개정안
전북특별자치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u>전라북도</u> 지역에너지 계획에 따른 사업 4. ~ 8. (생략)	전북특별자치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세출) -----. 1.·2. (현행과 같음) 3. ----- ----- <u>전북특별자치도</u> ----- - 4. ~ 8. (현행과 같음)

**제4장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제58조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u>전라북도</u>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전라북도</u> 내 방위산업 육성	<u>전북특별자치도</u>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u>전북특별자치도</u> -----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위산업의 육성 및 국방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도지사는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 ~ 6. (생략)

제5조(방위산업 육성사업)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 1. (생략)
- 2. 정부 또는 전라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 3. ~ 6. (생략)

제6조(방위산업 육성 지원)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방위산업 관련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1. ~ 6. (생략)

제7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 5. (생략)

-----  
-----  
-----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

제4조(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

-----  
----- 전북특별자치도 -----  
-----

- 1. ~ 6. (현행과 같음)

제5조(방위산업 육성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 1. (현행과 같음)
- 2. ----- 전북특별자치도-----
- 3. ~ 6. (현행과 같음)

제6조(방위산업 육성 지원) -----

-----  
-----  
-----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1. ~ 6. (현행과 같음)

제7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

-----  
----- 전북특별자치도 -----  
-----

- 1. ~ 5. (현행과 같음)

제15편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제3장 농산유통과

제59조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u></p> <p>제2조(정의) 1. (생략)</p> <p>2. “필수농자재”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영농 자재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u>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된 품목을 말한다.</u></p> <p>② (생략)</p> <p>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필수농자재 지원대상자는 <u>전라북도에</u> 주소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에서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p> <p>제7조(전라북도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필수농자재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u>전라북도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u> 설치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당연직 위원은 <u>전라북도</u> 경제부지사, 농생명축산식품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p> <p>1. <u>전라북도내</u>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2. ~ 4. (생략)</p> <p>제10조(회의 등)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전북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u></p> <p>제2조(정의) 1. (현행과 같음)</p> <p>2. ----- ----- <u>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필수농자재 지원대상자는 <u>전북특별자치도에</u> 주소지를 두고 ----- ----- -----.</p> <p>제7조(전북특별자치도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필수농자재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u>전북특별자치도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당연직 위원은 <u>전북특별자치도</u> 경제부지사, ----- ----- -----.</p> <p>1. <u>전북특별자치도내</u>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2. ~ 4. (현행과 같음)</p> <p>제10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u>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u>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	--

제60조 전라북도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전라북도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조례</u></p> <p>제4조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주소가 있는 농어가 또는 농어업 관련 법인(이하 “농어업인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농어업재해 대비 의식을 높이고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내 주소가 있는 농어업인 등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u>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조례</u></p> <p>제4조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내 ----- ----- ----- -----.</p> <p>② ----- ----- ----- ----- 「<u>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 -----.</p>

제61조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p> <p>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p> <p>제3조(책무) ① ----- ----- <u>전북특별자치도</u> ----- ----- -----.</p> <p>② (현행과 같음)</p>

제62조 전북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	-----

<p>전북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p> <p>제6조의2(협의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 당연직 위원은 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종자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p> <p>1. 2. (생략)</p> <p>3. <u>전라북도의회</u>가 추천하는 사람</p> <p>4. (생략)</p> <p>③·④ (생략)</p> <p>제12조(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 지원)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u>도</u>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전북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p> <p>제6조의2(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전북특별자치도의회</u>-----</p> <p>4.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 지원) ① ----- ----- <u>전북자치도가</u>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

제6장 동물방역과 소관

제63조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p> <p>제3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u>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u>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1. ~ 8. (생략)</p> <p>② (생략)</p> <p>제14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① ~ ④ (생략)</p>	<p>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p> <p>제3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 ----- <u>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u> -----.</p> <p>1. ~ 8.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4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① ~ ④ (현행과</p>

<p>⑤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요경비의 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전라북도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하고 소요경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동물보호센터의 장과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p>	<p>같음)</p> <p>⑤ ----- ----- ----- -----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 ----- ----- -----.</p>
---	--

제16편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제1장 교육협력추진단 소관

제64조 전북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전북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p> <p>제6조의2(전라북도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① ~ ⑦ (생략)</p>	<p>전북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p> <p>제6조의2(전북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p>

제2장 대외협력과 소관

제65조 전북특별자치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전라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p> <p>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서 적용받는 지원대상은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중 전라북도 출신이거나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하 “파독근로자”라 한다)으로 한다.</p> <p>제3조(파독근로자 지원)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파독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전북특별자치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p> <p>제2조(지원대상) ----- ----- ----- 전북특별자치도 출신이거나 전북특별자치도 ----- -----.</p> <p>제3조(파독근로자 지원)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p>

<p>1. <u>전라북도</u> 정착에 필요한 교육 또는 상담</p> <p>2. (생략)</p> <p>3. <u>전라북도</u>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p> <p>4. (생략)</p> <p>② (생략)</p> <p>제5조(경비의 보조)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를 준용한다.</p> <p>제6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u>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u>」에 따른다.</p>	<p>1. <u>전북특별자치도</u> -----</p> <p>2. (현행과 같음)</p> <p>3. <u>전북특별자치도</u>-----</p> <p>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경비의 보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p> <p>제6조(업무의 위탁) ----- ----- 「<u>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u>」-----.</p>
--	---

제18편 농업기술원 소관

제2장 연구개발국 소관

제1절 작물식품과 소관

제66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현행	개정안
<p>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p> <p>제12조(법인체 지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및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u>전라북도지역협회의</u> 경우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p> <p>제12조(법인체 지원) ----- ----- <u>전북특별자치도지역협회</u>----- -----.</p>

제3장 농촌지원국 소관

제2절 자원경영과 소관

제67조 전북특별자치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전북특별자치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전라북도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확대와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전북특별자치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 ----- -- <u>전북특별자치도</u> ----- ----- ----- -----.</p>

제3절 기술보급과 소관

제68조 전라북도 반려식품 활성화 및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u>전라북도 반려식품 활성화 및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전라북도내</u> 반려식품 활성화 및 반려식품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품 재배를 장려하여 <u>전라북도민</u>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반려식품산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도지사의 책무) <u>전라북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u>전라북도</u>(이하 “도”라 한다)내 반려식품 활성화와 반려식품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8조(지원사업) ① (생 략)</p> <p>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u>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에 따른다.</p> <p>제9조(실태조사) ①·② (생 략)</p> <p>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u>전라북도 사무의</u></p>	<p><u>전북특별자치도 반려식품 활성화 및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전북특별자치도내</u> ----- ----- ----- <u>전북특별자치도민</u>----- ----- -----.</p> <p>제4조(도지사의 책무) <u>전북특별자치도지사</u>----- ----- <u>전북특별자치도</u>(이하 “<u>전북자치도</u>”라 한다)----- -----.</p> <p>제8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 -----.</p> <p>제9조(실태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전북특별자치도 사</u></p>

<p>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10조(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전라북도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p> <p>제10조(교육·홍보) ① ----- ----- 전북특별자치도민 ----- ----- -----</p> <p>② (현행과 같음)</p>
---	--

제21편 사업소 소관

제6장 독립국악원 소관

제71조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3조(구성) 예술단의 단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고,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라북도립국악원장이 되며, 각 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3조(구성) ----- -----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장----- -----.</p>

## 참고1

## 관계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전북특별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4조(전북자치도의 책무) ①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전북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전북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전북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전북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전북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원칙·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① 정부의 직할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부 칙 <법률 제19214호, 2023.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전라북도의 폐지) 종전의 전라북도를 폐지한다.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 법 시행 전 전라북도 지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전라북도지사 및 도의회의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전라북도지사(전라북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라북도의회 의원은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전라북도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북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북도의 조례·규칙은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례·규칙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소속의 직원 및 위원이 된다. 다만, 임기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로 위촉·임명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의 사무와 전라북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그 소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전라북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여 온 재산, 기금, 금전 급부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승계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가 승계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관에 관하여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북도가 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조례는 이 법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보되 그 조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9430호, 2023. 6. 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및 2. 생략
3. 부칙 제21조제41항: 2024년 1월 18일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④ 법률 제1921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④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를 포함한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참고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이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미첨부 사유**

- 특별법에 맞는 조례 명칭 및 조례 용어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 미발생

**3. 작성자**

-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주사보 정지은(063-280-2784)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 4.  
제 출 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안설명자 : 소방본부장

###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방호예방분과위원회와 구조구급분과위원회의 명칭을 변경된 부서로 변경하기 위해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3개 분과위원회 중 2개 분과위원회의 명칭 변경(안 제6조 제1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불임)
- 다. 실·과협의 등 : 감사위원회, 법무행정과, 인권담당관, 여성가족과, 예산과,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라. 입법예고 : 2024. 3. 4. ~ 3. 25.(20일간)  
※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 4.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불임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예방안전분과위원회
3. 119대응분과위원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1. (생 략)</p> <p>2. <u>방호예방분과위원회</u></p> <p>3. <u>구조구급분과위원회</u></p> <p>②·③ (생 략)</p>	<p>제6조(분과위원회) ①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예방안전분과위원회</u></p> <p>3. <u>119대응분과위원회</u></p> <p>②·③ (현행과 같음)</p>

**참고1****관계 법령 등**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1. 2., 2021.  
5. 28., 2022. 10. 21., 2023. 12. 8.>
1. 소방행정지원·소방기획예산·소방장비관리·안전노사·소방교육대에 관한 사항
  2. 대응총괄·구조·구급에 관한 사항
  3. 예방총괄·현장조사분석·소방안전조사에 관한 사항
  4. 소방감찰·소방청렴윤리·소방법무에 관한 사항
  5. 119소방종합상황실에 관한 사항
  6. 119특수대응단에 관한 사항

**참고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소방발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명칭만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재정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별도의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 소방본부 소방감찰과 고광표**

전주시 공고 제2024-68호

## 전주 도시관리계획(공원8호 조성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86(2015. 3. 27.)호로 변경 결정된 전주 도시관리계획(공원8호 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9일  
전 주 시 장

### 1. 결정취지

- 「민방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편익 시설 조성)에 반영 및 공원부지면적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2. 공원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8	공원	근린공원	덕진구 중동 830번지	18,935.2	-	18,935.2	건교부 고시 제2008-91호 (2008. 3. 4.)	

### 3.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 “변경”

#### 가. 공원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시설 및 녹지 면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면적 : 변경(18,988.0㎡→18,935.2㎡)</li> <li>- 시설 면적 : 변경없음(5,980.0㎡→5,9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수대 설치(신설 1개소)</li> </ul> </li> <li>- 녹지 면적 : 변경(13,008.0㎡→12,95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지 감소(52.8㎡)</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86(2008. 3. 27.)에 따른 공원부지면적 변경사항 반영</li> <li>○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공원8호)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추진사항 반영</li> </ul>

나. 총괄조서(변경)

시설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건축바닥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증감	변경후	기정	증감	변경후	
공원전체면적	18,988.0	감52.8	18,935.2	85.72	-	85.72	85.72	-	85.72	시설률 :31.6%
시설부지면적	5,980.0		5,980.0	-	-	-	-	-	-	
도로및광장	도로및광장	5,388.0		5,388.0	-	-	-	-	-	
	조경시설	-	-	-	-	-	-	-	-	
	휴양시설	273.0	-	273.0	-	-	-	-	-	
	운동시설	-	-	-	-	-	-	-	-	
	관리시설	319.0	-	319.0	85.72	-	85.72	85.72	-	85.72
	편의시설	-	-	-	-	-	-	-	-	-
녹지	13,008.0	감52.8	12,955.2	-	-	-	-	-	-	녹지율 68.4%

다. 세부시설조서(변경)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건축바닥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8,988.0	감52.8	18,935.2	85.72	-	85.72	85.72	-	85.72	
시설면적 총계			5,980.0	-	5,980.0	85.72	-	85.72	85.72	-	85.72	
도로 및 광장	소계		5,388	-	5,388	-	-	-	-	-	-	
	도로		2,048	-	2,048	-	-	-	-	-	-	
	광장		3,340	-	3,340	-	-	-	-	-	-	
	가-1	광장1	431	-	431	-	-	-	-	-	-	
	가-2	광장2	80	-	80	-	-	-	-	-	-	
	가-3	광장3	242	-	242	-	-	-	-	-	-	
	가-4	광장4	820	-	820	-	-	-	-	-	-	
	가-5	광장5	267	-	267	-	-	-	-	-	-	
	가-6	광장6	690	-	690	-	-	-	-	-	-	
가-7	광장7	415	-	415	-	-	-	-	-	-		
가-8	광장8	395	-	395	-	-	-	-	-	-		
조경 시설	소계		-	-	-	-	-	-	-	-	-	
	1	파고라	-	-	-	-	-	-	-	-	-	3개소
	2	연식파고라	-	-	-	-	-	-	-	-	-	1개소

시설 구분	번호	시설 명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비고
						건축바닥면적(㎡)			건축연면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3	플랜터	-	-	-	-	-	-	-	-	-	60m
	4	경관석	-	-	-	-	-	-	-	-	-	9개소
휴양 시설		소 계	273	-	273	-	-	-	-	-	-	
	나-1	휴게소-1	16	-	16	-	-	-	-	-	-	
	나-2	휴게소-2	101	-	101	-	-	-	-	-	-	
	나-3	휴게소-3	29	-	29	-	-	-	-	-	-	
	나-4	휴게소-4	67	-	67	-	-	-	-	-	-	
	나-5	휴게소-5	20	-	20	-	-	-	-	-	-	유수지내
	나-6	휴게소-6	20	-	20	-	-	-	-	-	-	
	나-7	휴게소-7	20	-	20	-	-	-	-	-	-	
	5	평의자	-	-	-	-	-	-	-	-	-	14개소
	6	등의자	-	-	-	-	-	-	-	-	-	8개소
7	앉음벽	-	-	-	-	-	-	-	-	-	71m	
운동 시설		소 계	-	-	-	-	-	-	-	-	-	
	8	체력단련시설	-	-	-	-	-	-	-	-	-	8개소
관리 시설		소 계	319	-	319	85.72	-	85.72	85.72	-	85.72	
	다	화장실	130	-	130	85.72	-	85.72	85.72	-	85.72	
	라	구조체	189	-	189	-	-	-	-	-	-	6개소
	9	자전거보관대	-	-	-	-	-	-	-	-	-	3개소
	10	공원안내판	-	-	-	-	-	-	-	-	-	3개소
11	시설안내판	-	-	-	-	-	-	-	-	-	1개소	
편익 시설		소 계	-	-	-	-	-	-	-	-	-	
	12	음수대	-	-	-	-	-	-	-	-	-	1개소 (신설)
녹 지			13,008.0	감52.8	12,955.2	-	-	-	-	-	-	

라. 도로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연 장 (m)	면 적 (㎡)	기 능	시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총 계				536.0	2,042.0				
기정	소로	3	1	15	20.0	30.0	일반도로	광장1	광장2	
기정	소로	3	2	4.0	78.0	312.0	일반도로	광장1	광장3	
기정	소로	3	3	15	50.0	74.0	일반도로	소로3-2	소로3-2	
기정	소로	3	4	15	8.0	15.0	일반도로	소로3-2	소로3-3	
기정	소로	3	5	4.0	35.0	146.0	일반도로	광장3	광장5	
기정	소로	3	6	4.0	153.0	613.0	일반도로	광장6	광장5	
기정	소로	3	7	3.0	20.0	64.0	일반도로	광장7	광장6	
기정	소로	3	8	4.0	35.0	138.0	일반도로	광장7	광장6	
기정	소로	3	9	4.0	137.0	650.0	일반도로	광장7	광장8	

마. 공원조성계획 결정도면(변경)

<p>기정</p>	
<p>변경</p>	

전주시 공고 제2024-1102호

## 전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문화관)사업 실시계획 작성에 따른 열람(정정) 공고

전주시 고시 제2009-42(2009. 5. 8.)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전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문화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계서류의 열람 공고한 전주시 공고 제2024-840(2024. 3. 29.)호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전 주 시 장  
2024년 4월 19일

### □ 실시계획 작성 요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전주시 완산구 교동 28-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전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문화관) 사업
  - 명 칭 : 전통문화연수원(동헌 앞) 문화공간 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 A=863m<sup>2</sup>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전주시장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정정)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변경없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구	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총 계					4,517.2	863						
1	완산	교동	28-2	대	3,754.5	148	전주시					
2	완산	교동	28-3	대	370.2	370	전주시					
3	완산	교동	28-11	대	331.2	331	전주시					
4	완산	교동	28-14	대	61.3	14	전주시					

○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의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정정)

번호	토지소재지			지장물명	구조 및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지목					주소	성명	
1	완산구 교동	28-3	대	주택1	목조 기와강판	117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양안로 000 ,000동 000호	김일	
2				창고	조적조 슬라브	4.8	㎡			
3				주택2	목조 기와강판	43.2	㎡			
4				창고	목조 기와강판	11.7	㎡			
5				점포	목조 기와강판	10.26	㎡			
6				바닥포장	보도블럭 등	60	㎡			
7				수도간		1	식			
8				V.H구조물		2	식			
9				담장	블록	10	m			
10				대문		1	식			
11				동산이전비		1	식			
12				화단		3	식			
13				보리수		1	주			
14				느티나무	분재형	1	주			
15				라일락		2	주			
16				라일락	분재형	1	주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장물명	구조 및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동	지 번	지목					주 소	성 명	
17	완산구 교동	28-3	대	모과나무		1	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양안로 000 .000동 000호	김0일	
18				감나무		1	주			
19				사과대추나무		2	주			
20				주목		1	주			
21				꽃석류나무		1	주			
22				소철		1	주			
23				수국		2	주			
24				회양목		5	주			
25				블루베리		4	주			
26				백도화	분재형	3	주			
27				백매화	분재형	1	주			
28				석류나무		1	주			
29				단풍나무	분재형	1	주			
30				감나무		1	주			
31				영산홍		9	주			
32				장미		2	주			
33				자두나무	분재형	1	주			
34				골단초		1	주			
35				목단		2	주			
36				피자두나무		1	주			
37				오가피		1	주			
38				산수유		1	주			
39				남천		6	m			
40				동백		1	주			
41				작약		2	주			
42				함초롱꽃		1	주			
43				홍도화		1	주			
44				산앵두		1	주			
45				으아리		1	주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장물명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동	지 번	지목					주 소	성 명	
46	완산구 교동	28-11	대	주택	목조 기와	84	m <sup>2</sup>	부산광역시 연제구 토현로00 000동 0호	유0회	
47				심야전기	22KW	1	식			
48				주방	조적조 스투트	10.2	m <sup>2</sup>			
49				화장실	조적조 스투트	2.5	m <sup>2</sup>			
50				근생(창고)	조적조 스투트 및 기와	29.4	m <sup>2</sup>			
51				화장실2	조적조 기와	1.5	m <sup>2</sup>			
52				담장		10	m			
53				대문		1	식			
54				바닥포장		30	m <sup>2</sup>			
55				수도간		1	식			
56				장독대		1	식			
57				화단		1	식			
58				대추나무		1	주			
59				리일락		1	주			
60				소철		1	주			
61				완산구 교동	28-11	대	목단			
62				개나리		2	주			
63	작약		1	주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

□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열람기간: 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전주시 도시계획과(063-281-2537), 한옥마을사업소(063-281-5123)
- 열람내용: 전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문화관)사업 실시계획 작성 내용
- 의견서제출: 관계서류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기간 내에 열람장소 또는 우편, 팩스(063-281-2615, 063-281-2623), 이메일(aksmftm@korea.kr, yeon0818@korea.kr)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고시 제2024 - 79호

##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정정)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104호(2024.4.19.)호로 결정(변경) 고시된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정정)합니다.

※정정 사유 : 전북특별자치도 고시번호 정정(2024-77호→2024-104호)

2024년 4월 19일

익 산 시 장

### 1.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 조서

####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황등공원	근린공원	황등면 동연리 235 일원	39,940	증)2,239	42,179	전북4 (77.01.17)	
변경			체육공원						

####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황등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원시설의 종류 변경 종류 : 근린공원 → 체육공원 면적 : 39,940㎡ → 42,179㎡ (증) 2,23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수요 충족을 위해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함</li> </ul>

### 2. 익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계도서 : “실음생략” 끝.

익산시 공고 제2024-1357호

###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모인공원) 결정(경미한 변경)(안) 주민열람공고

익산시 모인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경미한 변경)(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규정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경미한 변경)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도시전략사업과(☎063-859-7436)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익 산 시 장  
2024년 4월 19일

-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조서
  -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모인 근린공원	근린공원	익산시 신동, 모현동2가 일원	153,145	감) 2,614	150,531	내무부고시 제417호 (1958.02.21.)	

- 나.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3	모인 근린공원	○ 선형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 153,145㎡ → 150,531㎡ 감) 2,614㎡	○ 지적측량 및 현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동선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공원조성을 위해 공원선형 변경

- 2. 열람기간 및 장소
  - 가. 열람기간 : 2024. 4. 19. ~ 5. 3. (14일간)
  - 나. 장 소 : 익산시 도시전략사업과 (☎063-859-7436)
- 3. 관계도서 : “계재 생략”
- 4. 의견서 제출 : 일반 및 이해관계인은 관련서류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공고 제2024-696호

## 정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공사완료 공고

정읍시 농소동 1524번지 일원 정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정읍경찰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정 읍 시 장

2024년 4월 19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정읍시 농소동 152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정읍경찰서)사업
  - 명칭 : 정읍경찰서 건립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15,885.3㎡
  - 사업규모 : (건축면적) 2,101.04㎡ (연면적) 10,291.46㎡(지하1층 ~ 지상4층)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
  - 성명 :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장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 05. 31.(실제준공일자 : 2023. 2. 10.)
6. 기타사항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정읍경찰서)사업의 공사완료에 대한 세부 내용 및 관계도서는 정읍시청 도시과(☎063-539-5782) 및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063-280-8623)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고시 제2024-52호

###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성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성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 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3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24년 04월 19일

#### I.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성산근린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성산근린공원	근린공원	교동 262-4 일원	79,816.9	-	79,816.9	전라북도 고시 제324호 (77.12.30)	

#####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성산근린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성산근린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면적 변경</li> <li>- 기 정: 28,881.00㎡</li> <li>- 변 경: (증)1,615.29㎡</li> <li>- 변경후: 30,496.2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산 근린공원 내 유아숲 체험원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변경</li> <li>○ 측량실시에 따른 현황화 및 오기정정</li> </ul>

3. 성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 조서

시설명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면적 (㎡)			연면적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9,816.90	-	79,816.90	100.00	4,245.30	감)18.00	4,227.30	6,540.58	감)18.00	6,522.58		
공 원 시 설	소계	28,881.00	증) 1,615.29	30,496.29	38.21	4,245.30	감)18.00	4,227.30	6,540.58	감)18.00	6,522.58	시설률: 38.21% 건폐율: 5.30% 시설 변경율: 증) 2.02%
	도로 및 광장	7,443.00	증) 1,364.39	8,807.39	11.03	-	-	-	-	-	-	
	유희 시설	-	증)352.30	352.30	0.44	-	-	-	-	-	-	
	휴양 시설	60.00	증)60.92	120.92	0.15	60.00	-	60.00	60.00	-	60.00	
	운동 시설	5,590.00	감)173.22	5,416.78	6.79	251.00	-	251.00	323.00	-	323.00	
	교양 시설	13,762.00	-	13,762.00	17.24	3,630.30	-	3,630.30	5,193.58	-	5,193.58	
	편익 시설	2,026.00	감)10.90	2,036.90	2.55	304.00	감)18.00	286.00	964.00	감)18.00	946.00	
녹지	50,935.90	감) 1,615.29	49,320.61	61.79	-	-	-	-	-	-	녹지율: 61.79%	

나. 조성계획 결정(변경) 세부조서

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			건축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면적 (㎡)			연면적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9,816.90	-	79,816.90	4,245.30	감)18.00	4,227.30	6,540.58	감)18.00	6,522.58		
시설면적총계				28,881.00	증) 1,615.29	30,496.29	4,245.30	감)18.00	4,227.30	6,540.58	감)18.00	6,522.58		
공 원 시 설	도로 및 광 장	소계		7,443.00	증) 1,364.39	8,807.39	-	-	-	-	-	-		
		-	-	도로	도로	3,263.00	증) 1,457.80	4,720.80	-	-	-	-	-	
		-	-	광장	광장	4,180.00	감) 93.41	4,086.59	-	-	-	-	-	
		1-1	1-1	모임광장	모임광장	1,200.00	감) 93.41	1,196.59	-	-	-	-	-	
		1-2	1-2	진망광장	진망광장	2,500.00	-	2,500.00	-	-	-	-	-	
		3	3	추모의장	추모의장	300.00	-	300.00	-	-	-	-	-	
		6	6	충혼탑	충혼탑	-	-	-	-	-	-	-	-	

시 구 설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부 지 면 적 (m <sup>2</sup> )			건 축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바 닥 면 적 (m <sup>2</sup> )			연 면 적 (m <sup>2</sup>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공 원 시 설	소 계		-	-	증)352.30	352.30	-	-	-	-	-	-	-	-
	-	15	-	-	증)112.59	112.59	-	-	-	-	-	-	-	-
	-	15-1	-	-	-	-	-	-	-	-	-	-	-	-
	-	15-2	-	-	-	-	-	-	-	-	-	-	-	-
	-	16	-	-	증)55.81	55.81	-	-	-	-	-	-	-	-
	-	16-1	-	-	-	-	-	-	-	-	-	-	-	-
	-	17	-	-	증)52.19	52.19	-	-	-	-	-	-	-	-
	-	17-1	-	-	-	-	-	-	-	-	-	-	-	-
	-	18	-	-	증)49.21	49.21	-	-	-	-	-	-	-	-
	-	18-1	-	-	-	-	-	-	-	-	-	-	-	-
	-	19	-	-	증)82.50	82.50	-	-	-	-	-	-	-	-
	-	19-1	-	-	-	-	-	-	-	-	-	-	-	-
	-	19-2	-	-	-	-	-	-	-	-	-	-	-	-
	-	23-1	-	-	-	-	-	-	-	-	-	-	-	-
	-	23-2	-	-	-	-	-	-	-	-	-	-	-	-
	-	23-3	-	-	-	-	-	-	-	-	-	-	-	-
	-	23-4	-	-	-	-	-	-	-	-	-	-	-	-
	-	23-5	-	-	-	-	-	-	-	-	-	-	-	-
	-	23-6	-	-	-	-	-	-	-	-	-	-	-	-
	-	23-7	-	-	-	-	-	-	-	-	-	-	-	-
	-	23-8	-	-	-	-	-	-	-	-	-	-	-	-
	-	23-9	-	-	-	-	-	-	-	-	-	-	-	-
	-	23-10	-	-	-	-	-	-	-	-	-	-	-	-
-	23-11	-	-	-	-	-	-	-	-	-	-	-	-	
-	23-12	-	-	-	-	-	-	-	-	-	-	-	-	
-	23-13	-	-	-	-	-	-	-	-	-	-	-	-	

시구	시설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부 지 면 적 (㎡)			건 축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바 닥 면 적 (㎡)			연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휴양 시설	소 계				60.00	증)60.92	120.92	60.00	-	60.00	60.00	-	60.00		
	7-1	7-1	팔각장1	팔각장1	30.00	-	30.00	30.00	-	30.00	30.00	-	30.00		
	7-2	7-2	팔각장2	대피소A	30.00	-	30.00	30.00	-	30.00	30.00	-	30.00		
	-	20	-	휴게쉼터1	-	증)30.00	30.00	-	-	-	-	-	-		
	-	20-1	-	휴게시설	-	-	-	-	-	-	-	-	-		
	-	21	-	휴게쉼터2	-	증)23.67	23.67	-	-	-	-	-	-		
	-	21-1	-	그네벤치	-	-	-	-	-	-	-	-	-		
	-	22	-	휴게쉼터3	-	증)7.25	7.25	-	-	-	-	-	-		
	-	22-1	-	그네벤치	-	-	-	-	-	-	-	-	-		
	-	24	-	대피소B	-	-	-	-	-	-	-	-	-		
	-	25	-	통나무 의자	-	-	-	-	-	-	-	-	-		
	-	26	-	도담블럭 앉음벽	-	-	-	-	-	-	-	-	-		
	-	27	-	벤치	-	-	-	-	-	-	-	-	-	누락 시설 정정	
공원 시설	소 계				5,500.00	감)173.22	5,416.78	251.00	-	251.00	323.00	-	323.00		
	2	2	체력단련 시설	체력단련 시설	370.00	감)123.22	246.78	-	-	-	-	-	-		
	-	2-1	-	운동시설	-	-	-	-	-	-	-	-	-	누락 시설 정정	
	-	2-2	-	평행봉	-	-	-	-	-	-	-	-	-		
	4	4	공도장	공도장	5,170.00	-	5,170.00	251.00	-	251.00	323.00	-	323.00		
10	-	씨름장	-	50.00	감)50.00	-	-	-	-	-	-	-			
교양 시설	소 계				13,762.00	-	13,762.00	3,630.30	-	3,630.30	5,193.58	-	5,193.58		
	14	14	문화회관	문화회관	13,762.00	-	13,762.00	3,630.30	-	3,630.30	5,193.58	-	5,193.58		
편익 시설	소 계				2,026.00	증)10.90	2,036.90	304.00	감)18.00	286.00	964.00	감)18.00	946.00		
	5	5	전망탑	전망탑	270.00	-	270.00	270.00	-	270.00	980.00	-	980.00		
	8	8	주차장	주차장	1,722.00	-	1,722.00	-	-	-	-	-	-		
	9-1	9	화장실1	화장실1	16.00	증)28.90	44.90	16.00	-	16.00	16.00	-	16.00		
	9-2	-	화장실2	-	18.00	감)18.00	-	18.00	감)18.00	-	18.00	감)18.00	-		
	-	11	-	테크계단	-	-	-	-	-	-	-	-	-		
	-	12	-	자연석계단	-	-	-	-	-	-	-	-	-		
	-	13	벽성서원	조경석쌓기	-	-	-	-	-	-	-	-	-		
	-	28-1	-	중합안내판	-	-	-	-	-	-	-	-	-		
	-	28-2	-	숲체험활동 안내판	-	-	-	-	-	-	-	-	-		
	-	28-3	-	시설안내판	-	-	-	-	-	-	-	-	-		
-	29	-	세족대	-	-	-	-	-	-	-	-	-			
-	30	-	시계탑	-	-	-	-	-	-	-	-	-			
녹 지				50,935.90	감)1,615.29	49,320.61	-	-	-	-	-	-			

## 4. 가로망 결정(변경) 조서

## 가. 가로망 결정(변경) 총괄 조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합계	기정	14	1,123.0	3,263.0	-	-	-	-	-	-	14	1,123.0	3,263.0
	변경	29	1,610.0	4,720.8	-	-	-	-	-	-	29	1,610.0	4,720.8
대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중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소로	기정	14	1,123.0	3,263.0	-	-	-	-	-	-	14	1,123.0	3,263.0
	변경	29	1,610.0	4,720.8	-	-	-	-	-	-	29	1,610.0	4,720.8

## 나. 가로망 결정(변경) 세부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m)	면적(m <sup>2</sup> )	기 점	종 점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 계					1,123.0	3,263.0				
변경	소 계					1,610.0	4,720.8				
기정	소로	3	1	3	진입로	35.0	105.00	274-7전	279-2전	-	
변경	소로	3	1	3	진입로	35.0	124.00	274-7전	279-2전	-	
기정	소로	3	3	5	연결로	175.0	875.00	262-1대	262-4임	-	
변경	소로	3	3	5	연결로	175.0	930.00	262-1대	262-4임	-	
기정	소로	3	4	3	진입로	70.0	210.00	270-4임	262-4임	-	
변경	소로	3	4	3	진입로	36.0	108.00	262-4임	262-4임	-	
기정	소로	3	5	3	진입로	80.0	240.00	29도	262-1대	-	
기정	소로	3	6	3	연결로	51.0	153.00	262-1대	262-4임	-	
기정	소로	3	7	4	연결로	75.0	300.00	27-1중	262-1대	-	
기정	소로	3	8	3	연결로	25.0	75.00	262-1대	262-1대	-	
기정	소로	3	9	2	연결로	65.0	130.00	262-4임	262-4임	-	
기정	소로	3	10	3	연결로	81.0	243.00	262-1대	262-4임	-	
변경	소로	3	10	3	연결로	61.0	183.00	262-1대	262-4임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면적 (㎡)	기 점	종 점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1	2	연결로	200.0	400.00	262-4입	262-4입	-	
변경	소로	3	11	3	연결로	222.0	666.00	262-4입	262-4입	-	
기정	소로	3	12	2	연결로	85.0	170.00	262-4입	262-4입	-	
변경	소로	3	12	2	연결로	30.0	60.00	262-4입	262-4입	-	
기정	소로	3	13	2	연결로	18.0	36.00	279-2전	262-4입	-	
기정	소로	3	14	2	연결로	84.0	168.00	262-5도	262-4입	-	
기정	소로	3	15	2	연결로	79.0	158.00	262-1입	262-4입	-	
신설	소로	3	16	1.5	연결로	7.0	10.50	262-4입	262-4입	-	
신설	소로	3	17	1.75	연결로	18.0	31.50	30-6전	262-4입	-	
신설	소로	3	18	2	연결로	60.0	120.00	262-5도	262-4입	-	
신설	소로	3	19	1.85	연결로	68.0	125.80	29도	30-6전	-	
신설	소로	3	20	1.75	연결로	25.0	43.75	30-6전	30-6전	-	
신설	소로	3	21	2	연결로	1.0	2.00	30-6전	30-6전	-	
신설	소로	3	22	1.5	연결로	0.5	0.75	30-6전	30-6전	-	
신설	소로	3	23	1.5	연결로	2.5	3.75	30-6전	30-6전	-	
신설	소로	3	24	1.5	연결로	2.5	3.75	30-6전	30-6전	-	
신설	소로	3	25	2	연결로	4.5	9.00	30-6전	30-6전	-	
신설	소로	3	26	2	연결로	12.0	24.00	262-1대	262-1대	-	
신설	소로	3	27	1.9	연결로	25.0	47.50	262-1대	262-1대	-	
신설	소로	3	28	3	연결로	278.0	834.00	391-46도	391-46도	-	
신설	소로	3	29	3	연결로	19.0	57.00	391-46도	262-4입	-	
신설	소로	3	30	1.5	연결로	51.0	76.50	29도	27-1중	-	

## 다. 가로망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 3-1	소로3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변경</li> <li>- 연장 : 35.0→35.0m</li> <li>- 폭원 : 3.0→3.0m</li> <li>- 면적 : 105.0→124.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량실시에 따른 현황화 및 오기정정</li> </ul>
소로3 3-3	소로3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변경</li> <li>- 연장 : 175.0→175.0m</li> <li>- 폭원 : 5.0→5.0m</li> <li>- 면적 : 875.0→93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량실시에 따른 현황화 및 오기정정</li> </ul>
소로3 3-4	소로3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변경</li> <li>- 연장 : 70.0→36.0m</li> <li>- 폭원 : 3.0→3.0m</li> <li>- 면적 : 210.0→108.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량실시에 따른 현황화 및 오기정정</li> </ul>
소로3 3-10	소로3 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변경</li> <li>- 연장 : 81.0→61.0m</li> <li>- 폭원 : 3.0→3.0m</li> <li>- 면적 : 243.0→18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량실시에 따른 현황화 및 오기정정</li> </ul>
소로3 3-11	소로3 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변경</li> <li>- 연장 : 200.0→222.0m</li> <li>- 폭원 : 2.0→3.0m</li> <li>- 면적 : 400.0→666.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량실시에 따른 현황화 및 오기정정</li> </ul>
소로3 3-12	소로3 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변경</li> <li>- 연장 : 85.0→30.0m</li> <li>- 폭원 : 2.0→2.0m</li> <li>- 면적 : 170→6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량실시에 따른 현황화 및 오기정정</li> </ul>
-	소로3 3-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신설</li> <li>- 연장 : 0→7.0m</li> <li>- 폭원 : 0→1.5m</li> <li>- 면적 : 0→10.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계획 변경에 의한 여건반영</li> </ul>
-	소로3 3-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신설</li> <li>- 연장 : 0→18.0m</li> <li>- 폭원 : 0→1.75m</li> <li>- 면적 : 0→31.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계획 변경에 의한 여건반영</li> </ul>
-	소로3 3-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신설</li> <li>- 연장 : 0→60.0m</li> <li>- 폭원 : 0→2.0m</li> <li>- 면적 : 0→12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계획 변경에 의한 여건반영</li> </ul>
-	소로3 3-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신설</li> <li>- 연장 : 0→68.0m</li> <li>- 폭원 : 0→1.85m</li> <li>- 면적 : 0→125.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계획 변경에 의한 여건반영</li> </ul>
-	소로3 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신설</li> <li>- 연장 : 0→25.0m</li> <li>- 폭원 : 0→1.75m</li> <li>- 면적 : 0→43.7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계획 변경에 의한 여건반영</li> </ul>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3 3-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신설</li> <li>- 연장 : 0→1.0m</li> <li>- 폭원 : 0→2.0m</li> <li>- 면적 : 0→2.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계획 변경에 의한 여건반영</li> </ul>
-	소로3 3-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신설</li> <li>- 연장 : 0→0.5m</li> <li>- 폭원 : 0→1.5m</li> <li>- 면적 : 0→0.7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계획 변경에 의한 여건반영</li> </ul>
-	소로3 3-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신설</li> <li>- 연장 : 0→2.5m</li> <li>- 폭원 : 0→1.5m</li> <li>- 면적 : 0→3.7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계획 변경에 의한 여건반영</li> </ul>
-	소로3 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신설</li> <li>- 연장 : 0→2.5m</li> <li>- 폭원 : 0→1.5m</li> <li>- 면적 : 0→3.7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계획 변경에 의한 여건반영</li> </ul>
-	소로3 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신설</li> <li>- 연장 : 0→4.5m</li> <li>- 폭원 : 0→2.0m</li> <li>- 면적 : 0→9.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계획 변경에 의한 여건반영</li> </ul>
-	소로3 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신설</li> <li>- 연장 : 0→12.0m</li> <li>- 폭원 : 0→2.0m</li> <li>- 면적 : 0→24.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량실시에 따른 현황화 및 오기정정</li> </ul>
-	소로3 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신설</li> <li>- 연장 : 0→25.0m</li> <li>- 폭원 : 0→1.9m</li> <li>- 면적 : 0→47.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량실시에 따른 현황화 및 오기정정</li> </ul>
-	소로3 3-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신설</li> <li>- 연장 : 0→278.0m</li> <li>- 폭원 : 0→3.0m</li> <li>- 면적 : 0→834.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량실시에 따른 현황화 및 오기정정</li> </ul>
-	소로3 3-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신설</li> <li>- 연장 : 0→19.0m</li> <li>- 폭원 : 0→3.0m</li> <li>- 면적 : 0→57.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량실시에 따른 현황화 및 오기정정</li> </ul>
-	소로3 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신설</li> <li>- 연장 : 0→51.0m</li> <li>- 폭원 : 0→1.5.0m</li> <li>- 면적 : 0→76.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량실시에 따른 현황화 및 오기정정</li> </ul>

5. 관계도서 : “개재 생략”

## II.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가. 당초 : 김제시 교동 262-4 일원

나. 변경 : 김제시 교동 262-4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근린공원)

나. 명칭 : 유아숲 체험원 조성공사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당초 : 79,816.9㎡

나. 변경 : 79,816.9㎡ (변경없음)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김제시장 (공원조성과)

나. 주소 : 전북 김제시 중앙로 40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24. 12. 31.

6.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 7. 관계도서 : “계재 생략”

(붙임)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합계				88,405.9	79,816.9			
1	김제시 교동	19-5	대	215.1	215.1	김제시		
2	김제시 교동	26	대	371.6	371.6	김제시		
3	김제시 교동	27-1	중	1367.6	1,367.6	국(기획재정부)		
4	김제시 교동	27-3	전	423.3	423.3	김제시		
5	김제시 교동	27-4	대	483.9	483.9	김제시		
6	김제시 교동	27-9	중	321.8	321.8	국(기획재정부)		
7	김제시 교동	27-10	대	256.2	256.2	김제시		
8	김제시 교동	27-11	임	161.5	161.5	김제시		
9	김제시 교동	27-12	중	250.7	250.7	국(기획재정부)		
10	김제시 교동	27-13	전	46.9	46.9	김제시		
11	김제시 교동	27-14	전	211.8	211.8	김제시		
12	김제시 교동	27-17	전	163.6	1,63.6	김제시		
13	김제시 교동	28-2	전	656.9	656.9	김제시		
14	김제시 교동	28-3	전	23.0	23.0	개인		
15	김제시 교동	29	도	427.3	427.3	김제시		
16	김제시 교동	30-6	전	3764.4	3,764.4	김제시		
17	김제시 교동	30-10	도	90.3	14.2	김제시		
18	김제시 교동	31	전	1179.1	1,179.1	김제시		
19	김제시 교동	32	전	106.0	106.0	개인		
20	김제시 교동	33-1	전	287.8	287.8	국(기획재정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21	김제시 교동	33-3	전	251.7	251.7	김제시		
22	김제시 교동	207-1	대	735.3	735.3	김제시		
23	김제시 교동	251-1	대	202.3	192.3	김제시		
24	김제시 교동	257	대	173.1	8.0	김제시		
25	김제시 교동	258-1	대	240.8	239.8	김제시		
26	김제시 교동	258-2	대	80.6	80.6	김제시		
27	김제시 교동	258-3	대	59.3	55.7	김제시		
28	김제시 교동	259	대	203.4	203.4	김제시		
29	김제시 교동	260	대	58.9	58.9	국(기획재정부)		
30	김제시 교동	261	대	60.0	60.0	개인		
31	김제시 교동	262-1	대	8976.5	8,976.5	국(기획재정부)		
32	김제시 교동	262-4	임	23875.3	23,875.3	김제시		
33	김제시 교동	262-5	도	327.1	154.9	김제시		
34	김제시 교동	263	전	612.1	601.4	김제시		
35	김제시 교동	264-2	전	508.6	206.8	개인		
36	김제시 교동	264-3	전	137.5	137.5	김제시		
37	김제시 교동	268	전	3604.7	3,604.7	김제시		
38	김제시 교동	270-2	대	129.0	129.0	김제시		
39	김제시 교동	270-4	임	850.6	240.1	개인		
40	김제시 교동	270-9	전	989.3	862.7	홍심정		
41	김제시 교동	270-10	전	1144.8	1,144.8	김제시		
42	김제시 교동	271-1	전	82.3	82.3	김제홍심정		
43	김제시 교동	271-2	전	14.0	14.0	김제홍심정		
44	김제시 교동	274-6	도	133.6	7.8	김제시		
45	김제시 교동	274-7	전	1485.0	1,485.0	홍심정		
46	김제시 교동	279	공	4980.0	4,980.0	홍심정		
47	김제시 교동	279-1	전	763.7	763.7	홍심정		
48	김제시 교동	279-2	전	879.0	879.0	홍심정		
49	김제시 교동	280-1	대	14248.7	14,248.7	김제시		
50	김제시 교동	280-3	대	552.0	552.0	김제시 외 7인		사유지로 분류
51	김제시 교동	280-14	대	3182.0	3,182.0	김제시		
52	김제시 교동	391-5	대	25.6	25.6	국(기획재정부)		
53	김제시 교동	391-45	도	7054.1	106.7	국(건설부)		
54	김제시 교동	391-46	도	976.2	938.0	국(건설부)		

완주군 고시 제2024-46호

###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방재시설)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18-36호(2018.03.09.) 및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2호(2024.02.16.)호로 결정된 완주 군계획시설(하천:용문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완주군청 건설도시과(063-290-28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완 주 군 수  
2024년 4월 19일

#### 1.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방재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 가. 군계획시설(방재시설:하천)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신설	9	용문천	방재시설 (하천)	지방하천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산108-20번지	완주군 소양면 소양천(지방) 합류점	-	4.0	4758	124,914	신설	

##### 나. 군계획시설(방재시설:하천)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9	용문천	- 신설 : 124,914㎡ - 시설명 : 용문천 - 시설종류 : 방재시설(하천) - 기점 :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산108-20번지 - 종점 : 완주군 소양면 소양천(지방) 합류점 - 연장 : 4.0km - 폭원 : 4~58m - 면적 : 124,914㎡	완주군 지방하천 용문천의 분류 및 주요지천, 토지 및 가옥을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함

#### 2.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방재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실음생략

완주군 고시 제2024 - 49호

## 완주 군계획시설(도로:삼례 소로2-11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경미한 변경) 고시

완주 군계획시설(도로:삼례 소로2-11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완주군청 건설도시과(☎063-290-284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완 주 군 수

2024년 4월 19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683번지 일원(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완주 군계획시설(도로:삼례 소로2-11호선)사업
  - 명 칭 : 삼례 소로2-11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L=23m, B=8m, A=223㎡ → **A=227㎡**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 주 소 : 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 성 명
  - 당초 : 완주군수(도시개발과장)
  - **변경 : 완주군수(건설도시과장)**
5. 사업착수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5. 12.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불임참고(변경)
  -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분할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7.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변경없음)
8. 관계도서 : 실음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조서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삼례읍 소로2-11호선	12필지		5,481	227						
1	삼례읍리	1683	도	1,693	86	국 (건설부)					
2	삼례읍리	5-3	도	62	14	국 (건설부)					
3	삼례읍리	5-4	도	5	5	완주군					
4	삼례읍리	5-5	도	2	2	완주군					
5	삼례읍리	5-6	도	11	7	완주군					
6	삼례읍리	5-7	도	18	18	완주군					
7	삼례읍리	5-8	대	137	6	이*묵	전북 완주군 삼례읍 화산2길 3*				5-2에 서이기
8	삼례읍리	6	도	850	16	국 (건설부)					
9	삼례읍리	468-1	도	393	2	국 (농수산부)					
10	삼례읍리	468-241	임	214	32	완주군					468-20 에 서 이 기
11	삼례읍리	468-140	도	2,084	27	국 (건설부)					
12	삼례읍리	468-212	임	12	12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43호

### 공인 등록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5조~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  
2024년 4월 19일

#### 1. 공인의 등록

- 가. 공인 등록사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순창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규 구성으로 새롭게 공인 제작 후 등록
- 나. 최초 사용년월일: 2024. 4. 22.
- 다. 공인 등록내용

공 인 명(규격)	공 인 인 영
순창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의인 (3.6cm×3.6cm)	

※ 기타 문의사항은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중등교육담당 주무관(650-6183)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